

201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4차 통산문화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3. 8. 8 (목) 14:00

■ 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박문열(위원장), 김명규, 김영원, 김재열,  
김정희, 안귀숙, 이해준, 선주선, 조선미,  
최성은, 최웅천(이상 11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 목 차

### 【심의사항】 1건

	<국가지정문화재(국보 · 보물) 국외반출>	
1	보물 제1501호 ‘이덕성 초상 및 관련자료 일괄’ 중 ‘이덕성 초상’ 1점 국가지정문화재 국외반출 허가	공개

### 【검토사항】 8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1	진주정씨 우복종가 성정계첩	공개
2	선중의 호구정장	공개
3	전주류씨 수곡종가 분재기첩	공개
4	정경세 시장	공개
5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공개
6	병자일록	공개
7	대안원년명 반자	공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 보물) 지정번호, 명칭변경 예고>	
8	국보 제249호 ‘동궐도’ 등 7건 지정번호 · 명칭 변경	공개

### 【보고사항】 1건

1	국보 제79호 ‘경주 구황동 금제여래좌상’ 등 18건 23점 국가지정문화재 국외반출 현황보고	공개
---	--	----



심의사항



## 【심의사항】

### I. 국가지정문화재(국보 · 보물) 국외반출

안건번호 동산 2013-04-001

#### 1. 보물 제1501호 ‘이덕성 초상 및 관련자료 일괄’ 중 ‘이덕성 초상’ 1점 국가지정문화재 국외반출 허가

##### 가. 심의사항

부산광역시시립박물관이 일본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역사문화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해 박물관 소장 국가지정문화재의 국외반출 허가를 신청하오니 동 사항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39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부산광역시시립박물관이 일본 나가사키역사문화박물관에서 조선시대 부산(왜관)과 나가사키(대지마)의 관련 문화교류를 소개하는 특별전 ‘대마번과 조선통신사’를 추진함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국외반출 허가신청 목록, 전시계획 등 관련서류 검토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제안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신청기관 : 부산광역시시립박물관
- 대상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 1점
  - 보물 제1501호 ‘이덕성 초상 및 관련자료 일괄(李德成 肖像 및 關聯資料 一括)’ 중 이덕성 초상 1점
- ※ 보물 제1501호는 초상 1점, 전적 5건, 고문서 4종 121점임.
- 반출국가 : 일본
- 반출기간 : 2013.10.18.~12.23

- 전시기간 : 2013.10.26.~12.15.
- 전시명칭 : ‘대마번과 조선통신사, 12만점의 종가문서가 말하는 역사의 진실’
- 전시장소 : 일본 나가사키역사문화박물관

#### **라. 국외반출 대상 보존상태 등 현지조사 결과**

- 목 적 : 반출대상 유물의 현황 조사
- 조사자 : 문화재위원 조선미, 전문위원 박지선
- 조사일시 : 2013년 8월 1일(목), 14:00~15:00
- 조사자 의견
  - 상태는 양호하며 국외전시에는 큰 문제 없음.
  - 다만 전시기간이 50일간이므로 전시환경에 만전을 기해야 함.

#### **마. 조치사항 : 국가지정문화재의 국외반출 허가 여부 결정**

####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국외 반출

## 국외반출신청 문화재목록

연 번	지정번호	문화재 명칭	수량(건/점)	비고
1	보물 제1501호	'이덕성 초상 및 관련자료 일괄' 중 이덕성 초상	1점	

## 국외반출신청 문화재목록 사진 및 세부사항

허가신청 목록	
① 지 정 번 호	보물 제1501호
② 명 칭	'이덕성 초상 및 관련자료 일괄' 중 이덕성 초상
③ 수 량	1점
④ 규 격	167×99cm
⑤ 보 관 장 소	부산광역시립박물관



## 검 토 사 항



## 【검토사항】

### 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안건번호 동산 2013-03-002

#### 1. 진주정씨 우복종가 성정계첩(晉州鄭氏 愚伏宗家 聖庭契帖)

##### 가. 검토사항

‘진주정씨 우복종가 성정계첩’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부터 ‘진주정씨 우복종가 성정계첩’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1.12.15)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3.5.30/6.7)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진주정씨 우복종가 성정계첩(晉州鄭氏 愚伏宗家 聖庭契帖)
- 소 유 자(관리자) : 정춘목(한국학중앙연구원)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 수 량 : 1첩
- 규 격 : 세로 28.0cm 가로 41.5cm
- 재 질 : 견본수묵
- 형 식 : 첨장
- 제작연대 : 1610년(광해군 2)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문화재위원 (지정 가치 없음)

이 《성정계첩》은 유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유신을 문묘에 종사하는 의례로서 그 자체가 드문 의례이고, 1610년 이전과 이후에도 문묘종사가 있었으나 1610년의 의례가 유일하게 계첩으로 제작되어 전해온다는 점에서 볼 때, 내용면에서는 희소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五賢從祀時廟庭參禮圖>는 하나의 회화작품으로 볼 때 예술성이 너무 빈약하고, 시대양식 또한 뚜렷이 드러나 있지 않아 1610년 행사 당시의 진적인지 여부에도 의문점이 있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는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없음)

1398년에 세워진 문묘는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가 1601년부터 중건되었고, 오랜 논란 끝에 마침내 1610년에 五賢인 金宏弼, 鄭汝昌, 趙光祖, 李彥迪, 李滉을 문묘에 종사하게 되었다. 성리학을 숭상한 조선에서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聖庭契帖>은 이 사실을 그림과 글씨로 기록한 작품이다.

제1면 회화의 경우 연대가 17세기 초에 해당하여 기록화로서 契會圖 유형을 제외하고는 희귀한 사례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그 이전에 제작된 각종 기록화가 거의 소멸된 실정에서 그 잔영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내용면에서는 文廟를 그린 드문 사례에 속한다. 불교나 도교와 달리 유교에서는 회화를 의례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文廟와 관련한 그림도 적다. 소수박물관의 <大成至聖文王殿坐圖>, 성균관대학교박물관의 <文廟享祀配列圖> 등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더군다나 조선에서 숭앙되었던 東方五賢이나 十八賢 등과 관련된 회화작품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聖庭契帖>에 포함된 <五賢從祀時廟庭參禮圖>는 유교에서 聖賢을 기리는 과정에서 제작된 시각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회화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물, 건물을 소략하게 묘사하여 기록화로서 갖추어야 할 상세한 표현이 부족하다. 표현기법은 수묵을 위주로 과감한 생략을 하여 독특한 양식이지만, 필법면에서는 그다지 능숙하지 못하여 회화성이 뛰어난 작품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회화 자체로서는 지정가치가 부족하며, 서예를 비롯한 첨 전체의 역사적, 서예사적, 회화사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없음)

성정계첩(聖庭契帖)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기록한 기록화이다. 그러나 회화는 다른 기록화에 비해 양식적으로 소략하여 한 시대의 표상으로 보기에도 미흡하다. 또한 좌목에 적힌 38명이 당시 모두 한 본씩 소장하였으므로, 장래 동일한 계첩이 발굴될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지정 보다는 시도 지정문화재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 ○ 문화재위원 (지정 가치 있음)

성정계첩에 쓰여진 이 발문은 1610년 오현의 문묘종사 때 집사로 참여한 38인 중에 사예벼슬에 있었던 류혁 등이 첩을 완성해놓고 참여하였던 뜻을 받들어 정경세에게 발을 쓰기를 청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내용이 『우복집』 권 15에 <오현종사묘정집례계첩서>라는 제목으로 실려있다. 내용에 연월을 기록하고 성명을 나열하고 그림도 들여서 자손에게 남긴다는 점은 설명하고 있으나 그날 어떠한 경식과 절차로 집례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언급한 바가 없는 것이 역사적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보면 적이 아쉽다고 하겠다.

글씨는 필치로 보아 정경세의 필사본으로써 하자가 없다고 사료된다. 500년의 세월 속에서도 잘 보관되어 그 상태도 사뭇 양호하다. 따라서 글씨 하나로만 본다면 수년전에 정경세보다 20년쯤 선배인 남창 김현성(1542-1621)의 필사첩이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점을 비추어본다거나 그 이후 인물인 다산이나 추사 등의 글씨들이 이미 지정되어있는 점에서 형평의 문제로 가늠할 때 그 가치에 벼금가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

## 마. 의결사항

- 부결 : 시도유형문화재 지정 권고

조사보고서

## □ 문화재위원

《聖庭契帖》은 鄭經世(1563-1633)의 후손인 鄭春穆씨(경상북도 상주시 소재)가 소장해오다가 한국학 중앙연구원 장서각에 기탁한 작품이다. 1610년(광해군2) 五

賢의 文廟宗祀 때 집사로 참여한 인사들이 제작한 계첩이다. 첩의 체제는 표지, 그림, 좌목, 발문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지의 장정과 題字는 후대에 개장된 것으로 보인다.

표지에는 ‘聖庭契帖’이라고 쓰여 있는데, 성정이란 문묘의 별칭이다. 첩의 첫 면에는 문묘종사 때의 장면이 그려져 있고, 좌측면에는 ‘五賢從祀時廟庭參禮圖’라고 篆書로 쓰여 있다. 여기서 五賢이란 金宏弼(1454-1504), 鄭汝昌(1450-1504), 趙光祖(1482-1519), 李彥迪(1491-15530), 李滉(1501-1570)을 말한다.

좌목에는 해당인물의 품계, 관직, 이름, 자, 호, 과거사항, 생년, 본관 등의 순서로, 성균관 대사성 신경진 이하 모두 38명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말미에는 ‘右凡三十八人’, ‘萬曆三十八年 庚戌九月’이라 기록하여 參禮人의 수와 아울러 1610년 9월이라는 제작연월을 밝혀 두었다.

정경세(1563-1693)가 썼다고 전해오는 발문에는 “눈으로 보니 천년간에도 드문 盛舉였다. 또한 廟庭에 집사가 되어 영광스러움이 심히 기뻤다. 그 연월을 기록하고 성명을 나열해 적고, 그림을 그려 넣어 자손들에게 남겨 미담이 되게 하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는가?” 라 하여 제작취지를 적어두었다.

<오현종사시묘정참례도>는 비단 바탕에 둑화로 그려져 있다. 좌우대칭의 구도에 성균관 대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전방과 후방 공간으로 나누고, 그 너머 후원의 일부와 담장을 묘사하였다. 행사는 전방의 공간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위치에 따라 대열을 갖춘 인물과 이를 보조하는 인물들이 아주 작은 크기로 묘사되어 있다. 이 그림의 형식은 결국 인물위주로 계회장면을 표현하기 보다는 멀리서 의례장소를 부감함으로써 의례가 진행되는 건물이나 廳舍의 전경을 강조한 형식이다. 이런 형식은 16세기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7세기로 계승되지만,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대체적으로 이와같은 건물 위주 형식의 계회도는 건물을 소략한 산수나 煙雲 사이에 포치하며, 건물자체도 단순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성정계첩》에서 보이는 필치와 회화수준은 같은 형식으로 그려진 여타 계회도와 비교해 볼 때 그다지 높지 않다. 건물이나 인물의 묘사가 지나치게 소략하고 수목의 묘사도 시대양식을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평범하다. 또한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에는 건물 지붕 묘사에서 용마루와 내림마루를 굽고 진하게 굿는 양식이 유행하였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그림을 1610년 당시에 그려진 것으로 확단하기에는 의문점이 있다.

## □ 문화재전문위원

## ○ 현상

첩장으로 되어 있는데 표지는 훼손되어 원래의 것이 아니며, 애초에 녹색 비단으로 장식되어 있던 흔적이 남아 있다. 가운데에 그림과 글씨는 비단을 사용하여 제작했고, 테두리 부분은 종이로 마감했다. 종이 부분은 변색이 되었는데 뒷면으로 갈수록 연두색이 선명하여 원래는 연두색 종이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가운데와 테두리의 군데군데에 금박을 뿐만 장식했다. 제1-2면의 비단은 노화되어 약간 누렇게 변색되었고 위쪽과 아래쪽에 얼룩이 있다. 테두리 종이는 박락된 곳도 있다. 제2면부터는 가는 朱線으로 9줄의 署線을 그어 10칸을 구획하였다.

## ○ 내용 및 특징

제1면의 경우 문묘에서 행해지는 행사 장면인데 색을 사용하지 않고 수묵으로만 그렸다. 사방으로 담장이 둘러쳐져 있고 맨 아래쪽에는 출입문이 있다. 차일로 추정되는 삼각형의 기물이 있고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있는데 아래쪽에 2 열로 21명, 오른편에 4 줄로 31명이다. 작은 인물을 도식적이고 생략적으로 표현하여 참가자의 신분, 성별 그리고 구체적인 의례의 진행을 알 수는 없다. 화면 가운데의 커다란 건물은 大成殿으로 원래 5칸 건물인데 여기서는 3칸으로 그려졌다. 그 위로 지붕만 보이는 건물이 明倫堂이다. 둘에 커다란 나무를 강조하여 표현하여 눈길을 끈다. 이것은 후대에 그려진 <文廟享祀配列圖>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흥미롭다.

조선후기의 궁중기록화와 비교해 볼 때 그다지 정교하지도 화려하지도 않다. 오히려 소략한 필법으로 수묵으로만 그린 것이 독특하다. 특히 상서로운 분위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구름에 덮인 모습으로 건물의 여기저기를 생략했고, 지붕의 경우 윤곽선 없이 먹이 번지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이 독특하다.

제2면에는 “五賢從祀時廟庭參禮圖”라고 전서로 제목을 적었는데 글씨는 두 칸씩 차지하도록 크게 썼다. 제3-6면에 걸쳐서 참석자 38명의 좌목을 적고 행사가 이루어진 것이 1610년 9월임을 밝혀 놓았다. 제7면에서 제23면까지는 정경세의 발문이 적혀 있다. 그 내용은 □□愚伏先生文集□□ 15권에 실려 있는 <五賢從祀廟庭執禮契帖序>와 일치하는데, 이 계첩이 완성된 것은 이듬해인 1611년임을 알 수 있다.

## ○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1398년에 세워진 문묘는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가 1601년부터 중건되었고, 오랜 논란 끝에 마침내 1610년에 五賢인 金宏弼, 鄭汝昌, 趙光祖, 李彥迪, 李滉을 문묘에 종사하게 되었다. 성리학을 승상한 조선에서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聖庭契帖>은 이 사실을 그림과 글씨로 기록한 작품이다.

제1면 회화의 경우 연대가 17세기 초에 해당하여 기록화로서 契會圖 유형을 제외하고는 희귀한 사례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그 이전에 제작된 각종 기록화가 거의 소멸된 실정에서 그 잔영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내용면에서는 文廟를 그린 드문 사례에 속한다. 불교나 도교와 달리 유교에서는 회화를 의례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文廟와 관련한 그림도 적다. 소수박물관의 <大成至聖文王殿坐圖>, 성균관대학교박물관의 <文廟享祀配列圖> 등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더군다나 조선에서 숭앙되었던 東方五賢이나 十八賢 등과 관련된 회화작품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聖庭契帖>에 포함된 <五賢從祀時廟庭參禮圖>는 유교에서 聖賢을 기리는 과정에서 제작된 시각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회화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물, 건물을 소략하게 묘사하여 기록화로서 갖추어야 할 상세한 표현이 부족하다. 표현기법은 수묵을 위주로 과감한 생략을 하여 독특한 양식이지만, 필법면에서는 그다지 능숙하지 못하여 회화성이 뛰어난 작품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회화 자체로서는 지정가치가 부족하며, 서예를 비롯한 첨 전체의 역사적, 서예사적, 회화사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 □ 문화재전문위원

### ○ 현상

표지, 그림, 좌목(座目), 발문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제는 ‘성정계첩(聖庭契帖)’임. 표지는 낡아 원래의 표면이 박락되었으며, 현재의 제첩도 후대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 외 글씨 부분의 원바탕에는 모두 세로로 등간격 朱線이 그어져 있다. 발문 뒤에는 5면 정도 여백이 있다.

○ 내용 및 특징 : 1610년(광해군2) 오현(五賢)의 문묘 종사 때 집사로 참여한 인사들이 제작한 계첩이다. 좌목에는 성균관 대사성 신경진(辛慶晉) 이하 모두 38명이 수록되어 있다. 말미에 “右凡三十八人”, “萬曆三十八年 庚戌九月”이라 기록하여 참여인의 수와 1610년 9월의 제작 연월을 밝혀놓았다. 이 첨의 발문은 정경세(鄭經世, 1563~1633)가 썼다고 한다.

## □ 문화재위원

성정계첩에 쓰여진 이 발문은 1610년 오현의 문묘종사 때 집사로 참여한 38인 중에 사예벼슬에 있었던 류혁 등이 첨을 완성해놓고 참여하였던 뜻을

받들어 정경세에게 발을 쓰기를 청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내용이 『우복집』 권 15에 <오현종사묘정집례계첩서>라는 제목으로 실려있다. 내용에 연월을 기록하고 성명을 나열하고 그림도 들여서 자손에게 남긴다는 점은 설명하고 있으나 그날 어떠한 격식과 절차로 집례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언급한 바가 없는 것이 역사적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보면 적이 아쉽다고 하겠다.

글씨는 필치로 보아 정경세의 필사본으로써 하자가 없다고 사료된다. 500년의 세월 속에서도 잘 보관되어 그 상태도 사뭇 양호하다. 따라서 글씨 하나로만 본다면 수년전에 정경세보다 20년쯤 선배인 남창 김현성(1542-1621)의 필사첩이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점을 비추어본다거나 그 이후 인물인 다산이나 추사 등의 글씨들이 이미 지정되어있는 점에서 형평의 문제로 가늠할 때 그 가치에 벼금가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

안건번호 동산 2013-04-003

## 2. 선중의 호구정장(宣仲義 戶口呈狀)

### 가. 검토사항

‘선중의 호구정장’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부터 ‘선중의 호구정장’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1.12.15)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3.5.30)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선중의 호구정장(宣仲義 戶口呈狀)
- 소 유 자(관리자) : 보성선씨 종중(한국학중앙연구원)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 수 량 : 1매
- 규 격 : 세로 57.2×가로 82.3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필사
- 형 식 : 낱장
- 조성연대 : 1421년(세종 3) 추정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문화재위원회(지도유형문화재 권고)

조사 고문서 <宣仲義戶口呈狀> 1매는 조선시대 초기의 戸籍制度의 研究는 물

론 明朝 文書式의 연구에 크게 활용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며, 「寶城宣氏族譜」 1卷 1冊은 조사 고문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資料이다. 이들 <宣仲義戶口呈狀> 1매와 「寶城宣氏族譜」 1卷 1冊 등은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관리·보존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나, 文書 中央部의 多數處에 穿孔이 있어 判讀이 어려울 만큼의 損傷이 있어 國家文化財로 指定하기에는 未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宣仲義戶口呈狀> 1매와 「寶城宣氏族譜」 1卷 1冊 등은 학술적으로 연구·관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으므로 地方文化財의 指定을 적극 勸告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들 文化財의 保存狀態가 불량하므로 장차 紙類 文化財 保存修理 專門家나 褙貼匠 등에 의한 補修가 요구된다.

### ○ 문화재전문위원 (시도유형문화재 권고)

宣仲義戶口呈狀은 1421년 7월 25일에 전라도 보성군에 살고 있는 通政大夫檢校 戶曹參議인 宣仲義(1358~1423)은 가지고 있던 戶口를 倭亂으로 잃어버려 다시 발급해 달라고 所志를 올림에 따라 보성군은 본래의 호구를 살펴보고 가감이 없다는 사실을 知寶城郡事が 戶曹에 보고한 문서이다.

呈狀은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보내는 官文書이다. 조선 초기의 관문서는 □□ 經國大典□□이 완성되어 반포되기 전까지는 명나라 □□洪武禮制□□에 나오는 문서식 영향을 받았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문서는 明의 呈狀式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문서서식 변화를 알 수 있는 고문서연구에 매우 중요하며, 또한 조선 초기 호적제도연구 자료로서 학술적인 가치는 매우 높다. 그러나 문서 중앙에 여러 개의 구멍이 있어서 원문 판독에도 지장이 있을 정도로 보존상태도 불량하여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지방문화재로 권고함이 좋을 듯하다.

### ○ 문화재전문위원 (시도유형문화재 권고)

국가문화재 지정 가치는 보류함. 1421년(세종 3)에 작성된 호구관련 자료로 학술적인 면에서 볼 때에는 국가지정의 가치가 있으나,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국가 문화재로서 갖추어야 할 완전성을 구비하지는 못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보다는 시도지정문화재로 검토해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 마. 의결사항

### ○ 부결 : 시도유형문화재 지정 권고

## 조사보고서

### □ 문화재위원

- 書誌記述 : 調査 古文書 <宣仲義戶口呈狀>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宣仲義戶口呈狀 / 全羅道 寶城郡 發給 ; 宣仲義 受給. -- 筆寫本. -- [全羅道  
寶城郡] : [寶城郡], [世宗 3(1421) 推定].

1枚 ; 57.2×82.30cm. 楷紙. 낱장물.

內容: 世宗 3(1421)년 12월 25일에 寶城郡에 살던 宣仲義(?-?)가 집안의 戶  
口를 분실하여 再發給의 所志를 올리자 寶城郡에서 本來의 戶口와 對照한  
결과 加減의 事實이 없음을 戶曹에 報告한 文書임.

印文: 知寶城郡事印(6顆)

原文: 下記參照

保存狀態: 中央部의 多數處에 穿孔이 있어 判讀이 어려움.

關聯典籍: 寶城宣氏族譜(1卷1冊)

### ○ 現狀

조사 고문서 <宣仲義戶口呈狀> 1매는 全羅南道 寶城郡 得糧面 正興里 回龍部  
落의 寶城 宣氏宗中(宗會長 선창수)의 소유이며, 宣氏宗中의 寄託으로 현재 한국  
학중앙연구원 藏書閣에 의하여 受託文化財로 守藏·維持·管理되고 있다.

조사 고문서 <宣仲義戶口呈狀>의 保存狀態는 中央의 多數處에 穿孔이 있어 판  
독이 쉽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專門的 保存施設이 구비된 京畿道 城南市 益唐區  
하오개로 323의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에 守藏·維持·管理되고 있다.

조사 고문서 <宣仲義戶口呈狀>은 紙類文化財 保存修理 專門家나 褙貼匠 등에  
의한 補修가 요구된다.

### ○ 내용 및 특징

조사 고문서 <宣仲義戶口呈狀>은 寶城郡에서 본래 宣仲義(1358-1423)의 戶口  
와 차이가 없음을 戶曹에 보고한 文書이다. 세종 3(1421)년 12월 25일에 寶城郡에  
살고 있던 受給者 宣仲義가 집안의 호구를 遺失하여 다시 발급해 달라는 所志를  
올림에 따라 寶城郡은 본래의 戶口를 살펴보고 加減이 없다는 사실을 호조에 보  
고한 문서이다. 문서에는 ‘知寶城郡事印’의 印文 6顆가 踏印되어 있으며, 中央部의

여러 곳에는 穿孔이 있어 판독이 쉽지 않다. 다행히도 「寶城宣氏族譜」에 <參議公戶口>라는 題下의 轉寫文으로 原文書의 脫字를 확인할 수 있다. 세종 3(1421)년 7월 25일에 寶城郡에 살고 있는 通政大夫檢校戶曹參議인 宣仲義가 家藏의 戶口를 왜란으로 闖失하여 다시 成置하지 못하여, 夫妻와 同籍인 자식 등을 소지에 後錄하여 兩邊의 조상에 대한 作文을 상고하여 陳省을 成給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접수한 寶城郡에서는 本戶口와 相考하여 加減이 없다는 사실을 呈狀式으로 戶曹에 보고하였다.

조사 고문서 <宣仲義戶口呈狀>은 學術的으로 조선시대 초기의 戶籍制度의 研究는 물론 明朝 文書式의 研究에 크게 활용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 ○ 原文

全羅道知寶城郡事爲戶口事今七月[二十五日本]郡接通政大夫檢校戶曹參議宣仲義所志內持音戶口乙倭亂闖失後更良』

成置不得爲白有臥乎節夫妻同籍子[息等□]乙用良所志後錄爲白去乎兩邊祖上作文相考陳省成給向事所志是去有』

良専本戶口進來相考爲白乎矣加減無白置有良専合行具呈伏乞』

照驗施行須至呈者

右呈

戶曹

永樂十九年七月二十五日知郡事金□□』

戶口』

呈後』

戶通政大夫檢校戶曹參議宣仲義年六十四本寶城郡』

父左右衛保勝郎將元祉故』

祖承奉郎監察糾正宣儒』

曾祖進士用臣』

外祖及弟行神虎衛保勝別將朴[逸本]寶城』

戶祖妻矣父從仕郎司設署丞朴益莊本寧海府』

祖及弟引成』

曾祖郎將同正林茂』

外祖檢校軍器監宋安本玉果』

戶外祖妻矣父監門衛郎將李碩本□□』

祖中顯大夫監門衛大護軍李公』

曾祖追封正順大夫鷹揚軍上護軍李仁』

外祖通礼門祇後 崔經本溟洲」  
戶妻全氏故本中牟縣」  
父具威衛保勝別將龍守」  
祖承奉郎通禮門祇侯解官全□□」  
曾祖中顯大夫檢校大護軍良節」  
外祖令同正金良本泗州」  
戶祖妻父禮賓丞同正全挺本中牟」  
祖注簿同正全義」  
曾祖令同正孝順」  
外祖令同正姜公載本同村」  
戶外祖妻父令同正李之桂本晉州」  
祖中軍錄事神虎衛保勝中郎將[李□□]」  
曾祖閣門通事舍人李文」  
外祖具威衛精勇攝中郎將高[應海]本開城府」  
并產一男同収年三十六二男興道[年二十]九三男宗道年二十七四男弘道年」  
二十五男庸道年二十一女子年十」  
節付印」  
原」

## ○ 기 타

조사 고문서 <宣仲義戶口呈狀> 1매와 「寶城宣氏族譜」 1卷 1冊은 현재 專門的  
保存施設이 구비된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에 의하여 受託文化財로 守藏·維持·  
管理되고 있다.

## <문헌자료>

韓國學中央研究院 編, 「文化財指定申請書」, 城南 : 韓國學中央研究院, 2011.  
寶城宣氏宗中 編, 「寶城宣氏族譜」.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編, 「朝鮮의 國王과 선비」, 城南 : 韓國學中央研究院,  
2011.

## □ 문화재전문위원

## ○ 현상

문서 중앙에 원형의 구멍이 나 있어 뒷면 전체를 배접하였다. 문서 첫머리도 부

분적으로 훼손이 심하여 판독의 어려움이 있으며, 결락된 부분에는 가필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상태는 좋지 못하다.

### ○ 내용 및 특징

이 문서는 조선 세종 3년(1421) 7월 25일에 전라도 知寶城郡事 金이 戶曹에 올린 戶口呈狀이다. 내용은 寶城郡에 살고 있는 通政大夫檢校戶曹參議인 宣仲義(1358~1423)은 가지고 있던 戶口를 倭亂으로 잃어버려 다시 成置하지 못하였기에 이번에 夫妻와 同籍인 子息 등을 所志에 後錄하였으니 兩邊의 祖上에 대한 作文을 相考하여 陳省을 成給해 달라는 소지를 올렸다. 寶城郡에서는 本戶口를 가져오게 하여 相考해보니 加減이 없었다는 사실을 呈狀式으로 1421년 7월 25일 知寶城郡郡事が 戶曹에 보고한 문서이다. 호구작성은 戶主 선중의와 戶主妻子의 四祖 및 祖妻, 外祖妻 순으로 각각의 四祖에 이어 幷產(자식) 5남1녀의 이름과 나이를 기록하였다. 문서에는 ‘知寶城郡事印’ 6顆가 찍혀 있다. 부분적으로 훼손되어 중앙에 여러 개의 구멍이 있어서 판독이 쉽지 않은데 □□寶城宣氏族譜□□에 ‘參議公戶口’라는 제목으로 轉寫되어 실려 있어서 원문서의 脱字를 확인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呈狀은 문서의 명칭에서 보듯이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보내는 上行文書의 일종이다. 조선 초기의 관문서는 □□經國大典□□이 완성되어 반포되기 전까지는 명나라의 □□洪武禮制□□에 나오는 문서식 영향을 받았다.

이 문서는 □□洪武禮制□□의 呈狀式과 형식이 같다. □□經國大典□□ 「禮典」‘用文字式’에는 조선시대 관문서를 關과 牒呈과 帖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중에 呈狀式은 들어 있지 않으나 牒呈과 書頭은 같고 結尾는 「合行具呈伏乞照驗施行須至呈者右呈」가 「合行牒呈伏請照驗行須至牒呈者右牒呈」으로 바뀌어 서식 변화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된다. 宣仲義의 가족 및 친족관계는 물론 15세기 초 사회사 및 호구 작성에 관한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 <문헌자료>

- 서울시文化財委員會편,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 서울, 서울시文化財委員會, 2011.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研究』, 서울, 지식산업사, 1989.  
노명호, 『한국고대중세고문서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심영환, 「조선초기 官文書의 □□洪武禮制□□ 呈狀式 受用 事例」, 『장서각』 제21집.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 □ 문화재전문위원

## ○ 현상

문서는 배접한 상태이다. 그런데 문서의 중앙부분의 접혔던 자리 열대여섯 곳에 구멍이 나 있어서 양호한 상태는 아니며, 그로 인해서 훼손된 부분에 있었던 몇 개의 글자가 보이지 않는다. 다행히도 □□보성선씨족보(寶城宣氏族譜)□□의 참의공호구(參議公戶口)에 해당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내용 확인은 가능한 실정이다.

## ○ 내용 및 특징

1421년 보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선중의가 관아에 자기 집안의 호구를 잊어버렸으니 다시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자, 보성군에서는 선씨 집안에서 제출한 문서를 확인해보고 호구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호조에 보고한 문서이다.

보성군에서 발급한 문서이지만, 기록된 내용이 선중의 집안의 호구내용을 담고 있어서 역사적 가치가 높다. 즉 조선초기의 호적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선중의는 ‘본인의 부(父) · 조(祖) · 증조(曾祖) · 증조(外祖), 그리고 할머니의 부 · 조 · 증조 · 외조, 나아가 외할머니에 대해서 부, 조, 증조, 외조’ 등의 조상이 기록되어 있다. 동시에 자신의 부인(사망)에 대해서도 역시 처의 할머니, 처의 외할머니의 조상들이 같은 형식으로 소개되어 있다. 결국 이 문서를 통해서 해당 시기의 가계에 대한 인식이 모계에 대해 매우 철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문서는 조선초기의 호구작성 내역, 또한 역사적으로 가족을 이해하는 당시의 방식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문서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안건번호 동산 2013-04-004

### 3. 전주류씨 수곡종가 분재기첩 (全州柳氏 水谷宗家 分財記帖)

#### 가. 검토사항

‘전주류씨 수곡종가 분재기첩’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부터 ‘전주류씨 수곡종가 분재기첩’에 대한 국가지정 문화재(보물) 지정신청(’11.12.15)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3.5.30)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전주류씨 수곡종가 분재기첩(全州柳氏 水谷宗家 分財記帖)
- 소 유 자(관리자) : 류승우(한국학중앙연구원)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 수 량 : 1첩(18건)
- 규 격 : 세로 83.0×가로 51.0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필사
- 형 식 : 첨장
- 조성연대 : 1447(세종 29)~1700년(숙종 26) 추정

## 마. 의결사항

- 부결 : 시도유형문화재 지정 권고

## 라. 조사자 겸토 의견

### ○ 문화재위원(시도유형문화재 권고)

조사 고문서 <全州柳氏水谷宗家分財記帖> 1帖은 세종 29(1447)년부터 숙종 26(1700)년 사이의 (1)柳義孫兄弟和會文記(1447-1450경), (2)柳軾衿給文記(1506-1521경), (3)柳軾妻洪氏別給文記(1535), (4)土地明文(1557), (5)所志(1532), (6)許璫妻韓氏別給文記(1554), (7)柳潤善別給文記(1550), (8)柳潤善妻潘南朴氏衿給文記(1579), (9)招辭(1594), (10)安東府立案(1594), (11)金璫別給文記(1574), (12)招辭(1594), (13)柳復起別給文記(1600-1617경), (14)柳復起妻鄭氏衿給文記(1620), (15)柳友潛別給文記(1621), (16)土地明文(1641), (17)柳元鉉兄弟和會明文(1700), (18)柳櫟傳重文記(1684) 등 18건의 分財記를 裝冊한 古文書帖으로 學術的으로 全州柳氏 水谷宗家의 傳來 財產狀況 연구와 分財記 研究에 크게 활용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며, 關聯典籍인 「全州柳氏族譜」의 初刊本(1卷1冊)과 重刊本(5卷4冊) 등은 조사 고문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료들이다. 이들 <全州柳氏水谷宗家分財記帖> 1帖과 「全州柳氏族譜」의 初刊本(1卷1冊)과 重刊本(5卷4冊) 등은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관리·보존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나, 文書의 毀損과 損傷 등으로 인한 保存狀態 및 製作時期 등으로 판단할 때 國家文化財로 指定하기에는 未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全州柳氏水谷宗家分財記帖> 1帖과 「全州柳氏族譜」의 初刊本(1卷1冊)과 重刊本(5卷4冊) 등은 학술적으로 연구·관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으므로 地方文化財의 指定을 적극 劍告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들 文化財의 保存狀態가 불량하므로 장차 紙類文化財 保存修理 專門家나 褙貼匠 등에 의한 補修가 요구된다.

### ○ 문화재전문위원(시도유형문화재 권고)

이 문재기첩은 세종 29(1447)년경부터 숙종 26(1700)년에 이르는 문서들로서, 자손들에게 전답과 노비를 상속해준 문재기를 비롯하여, 토지명문과 입안을 받기 위한 증빙자료인 조사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15~16세기의 재산상속제도 및 사회·경제사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 그러나 낱장의 문서들을 성첩하기 위하여 자름으로서 원형이 변형되었고, 문서 일부는 缺張도 있어 완전성이 결여되었다. 손상이 심하여 일부 결락되었고, 보존상태도 매우 불량하여 지방문화재

로의 지정을 권고함이 좋을 듯하다.

### ○ 문화재전문위원(시도유형문화재 권고)

국가문화재 지정 가치는 보류함. 15세기, 16세기의 자료가 다수를 차지하며 조선전기 한 가계의 재산상속현황을 알 수 있어서 학술적인 면에서 볼 때에는 국가 지정의 가치가 있다. 그런데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국가 문화재로서의 완전성을 구비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시도지정문화재로 검토해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 조사보고서

## □ 문화재위원

### ○ 書誌記述

調査 古文書 <全州柳氏 水谷宗家 分財記帖>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全州柳氏水谷宗家分財記帖 / 全州柳氏 水谷宗家 編. -- 筆寫本. -- [筆寫地不明] : [全州柳氏 水谷宗家], [世宗 29(1447)-肅宗 26(1700) 推定].

1帖(18件) ; 83.0×51.0cm. 楷紙. 帖裝.

內容: 세종 29(1447)년부터 숙종 26(1700)년 사이에 작성된 (1)柳義孫兄弟和會文記(1447-1459경), (2)柳軾衿給文記(1506-1521경), (3)柳軾妻洪氏別給文記(1535), (4)土地明文(1557), (5)所志(1532), (6)許璫妻韓氏別給文記(1554), (7)柳潤善別給文記(1550), (8)柳潤善妻潘南朴氏衿給文記(1579), (9)招辭(1594), (10)安東府立案(1594), (11)金璕別給文記(1574), (12)招辭(1594), (13)柳復起別給文記(1600-1617경), (14)柳復起妻鄭氏衿給文記(1620), (15)柳友潛別給文記(1621), (16)土地明文(1641), (17)柳元鉉兄弟和會明文(1700), (18)柳櫟傳重文記(1684) 등 18점의 分財記를 裝冊한 古文書帖이다.

保存狀態: 내용의 18건은 대체적으로 보존상태가 不良하며, 현재 藏書閣에 의하여 기초적인 보존처리가 진행 중이다.

關聯典籍: 「全州柳氏族譜」. 初刊本(1卷1冊), 重刊本(5卷4冊)

### ○ 現狀

조사 고문서 <全州柳氏水谷宗家分財記帖> 1帖 18件은 慶尙南道 昌原市 馬山合浦區 中央洞 2街 경동메드빌 111棟 501號 柳承佑의 소유이며, 소유자의 기탁으로 현재 京畿道 城南市 盆唐區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에 의하여 受託文化財로 守藏·維持·管理되고 있다.

조사 고문서 <全州柳氏水谷宗家分財記帖>의 보존상태는 전반적으로 매우 不良하며, 현재 專門的 保存施設이 구비된 京畿道 城南市 盆唐區 하오개로 323의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에 守藏·維持·管理되고 있다.

조사 고문서 <全州柳氏水谷宗家分財記帖>은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에 의해 기초적인 保存處理 作業이 진행 중이나, 장차 紙類文化財 保存修理 專門家나 褙貼匠 등에 의한 專門的인 補修가 요구된다.

## ○ 내용 및 특징

조사 고문서 <全州柳氏 水谷宗家 分財記帖>의 18件의 각 古文書別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류의손형제화회문기(柳義孫兄弟和會文記)> 세종 29(1447)-세조 5(1459) 경 추정

柳濱(?-1509)의 네 아들인 柳敬孫(1395-1459) · 柳義孫(1398-1450) · 柳信孫(?-?) · 柳末孫(?-?) 등이 집안에 전하는 奴婢를 合議하여 나눈 和會分財記이다. 현존하는 분재기 중에서 2번째로 오래된 자료이며, 和會分財記로는 가장 오래된 자료이다. ‘柳敬孫兄弟和會文記’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나, 당시 長子인 柳敬孫이 이미 사망하여 柳敬孫의 장자인 柳蓋沂가 분재에 참여하고 있으며 문서의 所藏處도 柳義孫의 後孫家라는 점에서 ‘柳義孫兄弟和會文記’라 일컬어지고 있다. 分財에 참여에 참여한 柳義孫의 형제로는 四子인 柳末孫에 불과하며, 長子인 柳敬孫과 三子인 信孫은 이미 사망하였고 次子인 柳義孫은 생존하였으나 부인인 坡坪尹氏가 대신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文書는 頭部의 脫落으로 모두가 脱漏되어 作成時期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柳義孫(1398-1450)의 관직이 禮曹判書로 기록된 점을 감안한다면 그가 禮曹判書로 제수된 세종 29(1447)년 이후부터 그의 형 柳敬孫(1395-1459)이 사망한 세조 5(1459)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서의 집필은 柳末孫의 아들 柳季漳(?-?)이나 柳季潼(?-?)에 의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380구 가량의 奴婢 가운데 奉祀條로 6구가 지정되고 4형제가 각각 80-90구 정도로 평균 분집한 다음 長孫 柳蓋沂(?-?)에게 10구가 지급되었으며, 그 이하 柳之盛(1422-1478) · 柳季潘(1430-1495) · 尹愈妻(?-?) · 柳叔漣(?-?) · 壽妣(?-?) · 從今(?-?) · 柳壽童(?-?) · 柳季潼(?-?) 등 8인에게 1구씩 지급되었다. 이들 중 柳蓋沂 ·

柳之盛 · 柳季潘 · 柳叔漣 · 柳季潼 등은 柳濱의 孫子로 확인되나, 尹愈妻 · 壽妣 · 從今 · 柳壽童 등의 人的關係 사항은 不明하다. 和會 당시 당사자인 柳義孫의 형제는 물론 그의 子息에게까지 일정한 뜻으로 分財되고 있어 일반적인 和會文記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문서의 保存狀態는 頭部의 脫落를 비롯하여 매우 不良하며, 현재 藏書閣에 의하여 기초적인 보존처리가 진행 중이다.

#### (2) <류식깃급문기(柳軾衿給文記)> 중종 1(1506)-중종 16(1521)경 추정

柳軾(?-?)이 자녀들에게 財產을 分給한 문서로 全州 柳氏의 分財記 중에서 2번 째로 오래된 것이다. 前半부의 누락 정도는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이고 현재 末張만 남아 있어, 당시의 재산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문서의 背面에 署押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分財記의 일부를 뒤집어 裏面을 사용한 듯하다. 分財記 중에는 ‘作介畠, ‘私田’ · ‘私畠’, ‘記上田’ 등 경제사적 관점에서 매우 유용한 용어들도 나타나고 있다. 作介畠은 奴婢가 상정 소유의 토지를 경작해 소정의 田稅를 납부하는 논을 지칭하고 ‘私田’ · ‘私畠’은 상전의 作介畠을 경작하는 대가로 納稅義務가 없는 田畠을 지칭하며, ‘記上’은 노비가 자식 없이 죽었을 때 그 재산을 상전에게 기록하여 바치는 것을 지칭하고 ‘記上田’은 이때 바친 밭을 지칭하는 것이다. ‘長子奉正大夫守成均館司成’은 柳潤德(?-?)인 듯하며, ‘子承仕郎’은 柳潤福(?-?) 또는 柳潤弼(?-?)로 추정된다. ‘女婿進勇校尉前行虎賁衛將仕郎’은 不明하다.

문서의 保存狀態는 末張만 殘存할 정도로 매우 不良하며, 현재 藏書閣에 의하여 기초적인 보존처리가 진행 중이다.

#### (3) <류식처홍씨별급문기(柳軾妻洪氏別給文記)> 중종 30(1535) 추정

柳軾(?-?)의 후처 南陽洪氏가 아들 柳潤弼(?-?)에게 노비 2구를 別給하는 문서이다. 柳潤弼은 柳軾의 三子이나 洪氏에게는 長子였으며, 洪氏는 자신의 長子인 柳潤弼이 자녀가 많고 곤궁하게 지내는 것을 가련히 여겨 父親 柳軾과 洪氏 자신이 소유하던 奴婢 중에서 각각 1구씩을 別給하였다. 이 문서에 따르면 柳軾의 臨終時에 柳潤弼의 형제들에게 奴婢와 田畠 등이 균등하게 分給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류식깃급문기 柳軾衿給文記>이나 문서의 마열이 심하여 分財量을 확인할 길이 없다. 이 문서가 柳潤善의 後孫家인 水谷宗宅에 보관된 경위는 不明하다.

문서의 保存狀態는 不良하며, 현재 藏書閣에 의하여 기초적인 보존처리가 진행 중이다.

#### (4) <토지명문(土地明文)> 명종 12(1557) 추정

柳潤善(1500-1557)의 처 潘南朴氏가 柳潤春(?-?)으로부터 답 3두락을 細木綿 20필을 주고 구입한 문서이다. 柳潤春은 柳潤善의 사촌 아우이며 朴氏는 柳潤善의

後妻로 榮州의 명문인 潘南朴氏 朴承張(?-?)의 딸이다. 柳潤善은 朴氏와의 혼인을 매개로 榮州로 移居하였는데, 이 문서의 작성시기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본 문서는 財主 柳潤春의 자필이며 증인은 朴彭壽(?-?)와 柳億良(?-?)이다. 朴彭壽는 朴承章(?-?)의 아들로서 潘南朴氏와는 남매간이며, 柳億良의 인적사항은 자세하지 않다. 배접하는 과정에서 사방을 칼로 자른 흔적이 선명하며, 현재의 문서는 원래 문서에 비해 크게 축소된 상태이다.

문서의 保存狀態는 매우 不良하며, 현재 藏書閣에 의하여 기초적인 보존처리가 진행 중이다.

#### (5) <소지(所志)>. 중종 27(1532) 추정

柳潤善(1500-1557)이 榮州郡守에게立案의 발급을 요청하는 문서이다. 粘連文記를 상고한 다음立案을 발급해 달라는 所志의 투식으로 미루어 田畠과 奴婢의 매득과 관련된 사항일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다.

문서의 保存狀態는 不良하며, 현재 藏書閣에 의하여 기초적인 보존처리가 진행 중이다.

#### (6) <허당처한씨별급문기(許璫妻韓氏別給文記)> 명종 9(1554) 추정

許璫(?-?)의 처인 清州韓氏가 사위 柳潤善(1500-1557)에게 딸의 奉祀條로 노비 4구를 별급하는 문서이다. 韩氏는 이들 노비를 柳潤善의 후실인 潘南朴氏의 重子에게 전계하여 딸 許氏의 제사를 지속시키기를 당부하고 있다. 柳潤善의 전처 楊川許氏는 슬하에 자식이 없었으며, 柳潤善은 許氏가 사망하자 潘南朴氏와 재혼하여 榮州로 이거하였다. 許璫은 成宗朝 초에 정승을 지낸 許琮(1434-1494)·許琛(1444-1505)과 사촌간이며, 許穆(1595-1682)의 증조부 許磁(1496-1551)의 五寸叔이다. 증인 盧稷(1545-1618)의 인적사항은 미상이며, 집필 海州 吳壽億(?-?)은 許璫의 外孫婿이다.

문서의 保存狀態는 不良하며, 현재 藏書閣에 의하여 기초적인 보존처리가 진행 중이다.

#### (7) <류윤선별급문기(柳潤善別給文記)> 명종 5(1550) 추정

柳潤善(1500-1557)이 며느리 義城金氏에게 田 13두락과 奴婢 5구를 별급하는 문서이다. 신부는 장자 柳城(1533-1560)의 아내 義城金氏로서 安東 川前里 金璣(1500-1580)의 장녀이다. 증인 文繼宗(?-?)의 인적사항은 미상이다. 필집은 眞城李希顏(1511-1563)으로 安東 臥龍 周村에 거주하였다. 그는 金璣의 매부로 신부의 고모부이다.

문서의 保存狀態는 不良하며, 현재 藏書閣에 의하여 기초적인 보존처리가 진행 중이다.

#### (8) <류윤선처반남박씨깃급문기(柳潤善妻潘南朴氏衿給文記)> 선조

## 12(1579) 추정.

柳潤善(1500-1557)의 후처 潘南朴氏가 장자 柳城(1533-1560)과 차자 柳堰(?-?)에게 奴婢와 田畠을 분급하는 문서이다. 奉祀條를 제외하면 균분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 證人은 財主의 동생 朴彭壽(?-?)와 조카인 朴伏龍(?-?)이며, 筆執은 장손 柳復起(1555-1617)이다. 족보에 ‘柳堰’은 ‘柳垣(1540-1568)’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어느 시기에 改名한 듯하다.

문서의 保存狀態는 不良하며, 현재 藏書閣에 의하여 기초적인 보존처리가 진행 중이다.

### (9) <초사(招辭)> 선조 27(1594) 추정

私奴인 崔福(?-?)이 관부에 柳復起(1555-1617)에게 노비 1구를 방매한 사실을 다짐하는 문서이다. 立案을 받급받기 위해서는 財主 · 證人 · 筆執의 초사가 구비되어야 하는데, 본 문서는 財主의 초사에 해당한다. 崔福은 還穀을 상환하기 위해 婦 貴春을 正租 10石에 放賣하였다.

문서의 保存狀態는 不良하며, 현재 藏書閣에 의하여 기초적인 보존처리가 진행 중이다.

### (10) <안동부입안(安東府立案)> 선조 27(1594) 추정

柳復起(1555-1617)가 사노인 崔福(?-?)으로부터 婦 貴春을 買得한 사실을 安東府에서 公證한 문서이다.

문서의 保存狀態는 不良하며, 현재 藏書閣에 의하여 기초적인 보존처리가 진행 중이다.

### (11) <김진별급문기(金璉別給文記)>. 선조 7(1574) 추정

金璉(1500-1580)이 외손 柳復起(1555-1617)의 부인 盈德鄭氏에게 皮穀 100石과 노비 1구를 별급하는 문서이다. 柳復起는 早失父母하여 외조 金璉의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받았다. 이 문서는 義城金氏와 全州柳氏의 인간적 유대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문서의 保存狀態는 不良하며, 현재 藏書閣에 의하여 기초적인 보존처리가 진행 중이다.

### (12) <초사(招辭)>. 선조 27(1594) 추정

사노인 崔福(?-?)이 婦 貴春을 柳復起(1555-1617)에게 放賣한데 대한 사실이 거짓이 아님을 官府에 입증하는 筆執 · 證保의 초사이다. 筆執은 金壽福이며, 證保는 사노인 鄭內隱福과 崔從石이다. 이 문서는 <(9) 초사(招辭). 선조 27(1594) 추정>과 <(10) 안동부입안(安東府立案). 선조 27(1594) 추정>의 관련문기로서 순서상 <(9) 초사(招辭). 선조 27(1594) 추정>의 다음에 위치해야 한다.

문서의 保存狀態는 매우 不良하며, 현재 藏書閣에 의하여 기초적인 보존처리가

진행 중이다.

(13) <류복기별급문기(柳復起別給文記)>. 선조 33(1600)-광해군 9(1617) 추정  
柳復起(1555-1617)가 손자 柳櫟(1600-1685)에게 노비 1구를 별급하는 문서이다.  
발급자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나 문서 <(14) 류복기처정씨깃급문기(柳復起妻鄭氏  
衿給文記)>. 광해군 12(1620) 추정>과 대비하여 내용을 검토한 결과 柳復起의 별급  
문기로 확인되었다. 중간 중간 마모로 인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작성연도는 柳復起(1555-1617)와 柳友潛(1575-1635) 등이 공존한 시기를 고려할  
때 1600-1617년으로 추정된다. 원래 이문서는 1장으로 작성되었으나 현재는 반절  
된 상태로 배접되어 있다. 이 문서는 柳復起의 별급문기와 柳友潛의 추기로 구성  
되었으며, 종손의 優待意識이 강하게 반영된 내용이 특징적이다. 균분상속에서 長  
子優待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성격을 갖는 문서이다.

문서의 保存狀態는 매우 不良하며, 현재 藏書閣에 의하여 기초적인 보존처리가  
진행 중이다.

(14) <류복기처정씨깃급문기(柳復起妻鄭氏衿給文記)>. 광해군 12(1620) 추정  
柳復起(1555-1617)의 부인 盈德鄭氏가 아들 柳友潛(1575-1635) · 柳得潛(?-?) ·  
柳知潛(1583-1653) · 柳守潛(?-?) · 柳宜潛(?-?) · 柳希潛(1596-1671) 등과 사위 鄭  
榮邦(1577-1650) · 李明遠(1583-?) · 金遠(?-?) 등에게 재산을 분급한 문서이다. 17  
세기 초반 全州柳氏의 재산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음매부분을  
제외하면 거의 보존되어 문서의 전문을 판독할 수 있다. 分財記 서문의 취지대로  
균분의 원칙이 잘 지켜졌으며, 노비의 경우는 亡女婿 金遠을 제외하면 철저하게  
11-12구씩 지급되었다. 3인의 증인 중에서 金涌(1557-1620)과 金淪(?-?) 등은 金  
璉(1500-1580)의 손자로서 柳復起와는 外從間이며, 鄭以愼(?-?)은 財主 盈德鄭氏  
의 아우이다. 筆執은 長女婿 鄭榮邦이다.

문서의 保存狀態는 不良하며, 현재 藏書閣에 의하여 기초적인 보존처리가 진행  
중이다.

(15) <류우잠별급문기(柳友潛別給文記)>. 광해군 13(1621) 추정  
柳友潛(1575-1635)이 장자 柳櫟(1600-1685)의 처 趙氏에게 노비 1구를 별급하  
는 문서이다. 趙氏가 아들을 생산하자 여기에 대한 사례로 별급한 것이다. 趙氏는  
英陽一帶에 강력한 기반을 지닌 漢陽趙氏 趙佺(1576-1632)의 딸이다. 이 문서는  
柳友潛의 자필로서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이때 태어난 아들은夭折한 것으로  
생각된다. 族譜上에 柳櫟(1600-1685)의 장자로 기록된 柳挺輝(1623-?)는 인조  
1(1623)년에 출생했기 때문이다.

문서의 保存狀態는 良好하며, 현재 藏書閣에 의하여 기초적인 보존처리가 진행  
중이다.

### (16) <토지명문(土地明文)>. 인조 19(1641) 추정

柳友潛(1575-1635)의 아우 柳得潛(?-?) · 柳知潛(1583-1653) · 柳守潛(?-?) · 柳宜潛(?-?) · 柳希潛(1596-1671) 등이 장손 柳振輝(?-?)의 처 安東權氏에게 田 10두락을 지급하는 문서이다. 宗家의 번창과 從孫의 출생에 대한 염려와 관심이 반영된 문서이다. 權氏는 이로부터 9년이 지난 효종 1(1650)년에 장자 柳宗時(1650-1700) 와 효종 5(1654)년에 차자 柳奉時(1654-1709)를 출산하였다. 全州柳氏 安東派의 현 달한 인물 중에는 柳宗時와 柳奉時의 후손들이 매우 많다. 權氏는 학봉 金誠一(1538-1593)의 문인인 權暉(1552-1630)의 손녀이다. 이 문서는 제목 중간의 日字 부분과 明文의 ‘文’자가 損傷되었으나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은 없다. 筆執은 柳希潛이다.

문서의 保存狀態는 비교적 良好하며, 현재 藏書閣에 의하여 기초적인 보존처리가 진행 중이다.

### (17) <류원현형제화회명문(柳元鉉兄弟和會明文)>. 숙종 26(1700) 추정

柳元鉉(?-?)과 柳昌鉉(?-?) 형제가 합의하여 外家의 傳來 노비를 나누어 가진 문서이다. 3구 가운데 柳元鉉이 2구를, 柳昌鉉이 1구를 소유하였다. 柳宗時(1650-1700)는 前妻 昌寧成氏와 後妻 全義李氏 사이에서 柳元鉉 · 柳昌鉉 · 柳夏鉉(?-?) · 柳廷鉉(?-?) 등의 네 아들을 두었다. 이 중 柳元鉉과 柳昌鉉은 전처의 소생으로 문기상의 외가는 昌寧成氏를 말한다. 따라서 같은 형제이나 全義李氏 소생의 柳夏鉉과 柳廷鉉은 여기에 대한 상속권이 없다.

문서의 保存狀態는 비교적 良好하며, 현재 藏書閣에 의하여 기초적인 보존처리가 진행 중이다.

### (18) <류숙전중문기(柳肅傳重文記)>. 숙종 10(1684) 추정

柳肅(1600-1684)이 장손 柳宗時(1650-1700)에게 傳重하는 문서로 당시 장자 柳振輝(1623-1675)가 이미 사망하여 장손 柳宗時에게 傳重한 것이다. 畚 16두락, 田 1석락 49부 4속의 傳來 奉祀條는 물론 田 94부 7속의 先代祭位條와 畚 21부 1속의 柳袗(1582-1635)의 安東權氏祭位條에 더하여 노비 5구를 지급하고 있다. 筆執은 柳挺輝(?-?)의 아들 柳聖時(?-?)이다.

문서의 保存狀態는 良好하며, 현재 藏書閣에 의하여 기초적인 보존처리가 진행 중이다.

이상의 조사 고문서 <全州柳氏水谷宗家分財記帖> 1帖은 세종 29(1447)년부터 숙종 26(1700)년 사이에 작성된 (1)柳義孫兄弟和會文記(1447-1450경), (2)柳軾衿給文記(1506-1521경), (3)柳軾妻洪氏別給文記(1535), (4)土地明文(1557), (5)所志(1532), (6)許璫妻韓氏別給文記(1554), (7)柳潤善別給文記(1550), (8)柳潤善妻潘南朴氏衿給文

記(1579), (9)招辭(1594), (10)安東府立案(1594), (11)金璫別給文記(1574), (12)招辭(1594), (13)柳復起別給文記(1600-1617경), (14)柳復起妻鄭氏衿給文記(1620), (15)柳友潛別給文記(1621), (16)土地明文(1641), (17)柳元鉉兄弟和會明文(1700), (18)柳櫟傳重文記(1684) 등 18건의 分財記를 裝冊한 古文書帖으로 學術的으로 全州柳氏 水谷宗家의 재산상황과 分財記研究에 크게 활용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 기 타

조사 고문서 <全州柳氏水谷宗家分財記帖> 1첩 및 關聯典籍인 「全州柳氏族譜」의 初刊本(1卷1冊)과 重刊本(5卷4冊)은 현재 專門的 保存施設이 구비된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에 의하여 受託文化財로 守藏·維持·管理되고 있다.

## <문헌자료>

- 韓國學中央研究院 編, 「文化財指定申請書」, 城南 : 韓國學中央研究院, 2011.  
全州柳氏宗中 編, 「全州柳氏族譜」, 初刊本, 1卷 1冊.  
全州柳氏宗中 編, 「全州柳氏族譜」, 重刊本, 5卷 4冊.  
鄭求福 外編, 「朝鮮電氣古文書集成 -15世紀篇」, 서울 : 國史編纂委員會, 1997.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編, 「古文書集成 44: 安東 全州柳氏篇I (水谷宗宅)」, 城南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9.  
李樹健 編, 「慶北地方古文書集成」, 慶山 : 嶺南大學校出版部, 1981.  
朴盛鍾 編, 「朝鮮初期 古文書 吏讀文 譯註」, 서울 : 서울大學校出版部, 2006.

## □ 문화재전문위원

### ○ 현 상

낱장의 문서들을 한데 모아 첹으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문서를 자름으로서 원형이 변형되었고, 문서 일부는 낙장이 되었다. 손상이 심하여 일부 결락된 문서가 있으며, 보존상태는 매우 불량하다.

### ○ 내용 및 특징

전주유씨는 고려시대 전주의 土姓으로 고려말 조선초에 현달하여 서울에 세거한 가문이다. 전주유씨가 영남에 살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柳潤善이 반남박씨 朴承張의 사위가 되어 영주에 입향하면서 부터이다. 이후 유윤선의 아들 柳城이 다시 의성김씨 金璫의 사위가 되어 김진에게 田莊 가운데 水谷(무실) 일대의 토지를 분급받았다. 이후 전주유씨는 이곳 수곡을 거점으로 하여 안동으로 옮겨오면서 전주유씨는 완전히 영남지방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전주유씨 안동파는 水谷 뿐만

아니라 朴谷에도 世居地를 두고 있으며 이밖에 高川, 三山, 大坪, 中坪 등지에 퍼져 살고 있는데 이들 세거지들은 주로 임동면 예안면 일대에 분포되어 있다.

이 分財記帖은 수곡종택에 傳存된 문서들이다. 분재기 뿐만 아니라 관련문서도 함께 成帖하였다. 이 문서들은 1447년경부터 1700년까지 발급된 분재기 12건, 토지명문 2건, 소지 1건, 초사 2건, 입안 1건 등 5종 18건이다.

### 1) 柳義孫兄弟和會文記

작성연대: 1447(세종 29)~1450(세조 5)년경.

柳濱의 네 아들인 敬孫 · 義孫 · 信孫 · 末孫이 집안에 전하는 노비를 서로 합의하여 나눈 和會分財記이다.

이 문서는 원래 낱장 1장으로 이어진 문서인데 6등분하여 나누어 배접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서 일부가 낙장되었다. 첫 부분도 손상이 심하여 모두가 결락되어 작성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류의손(1398~1450)의 관직이 예조판서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가 예조판서로 임명된 1447년(세종 29) 이후 사망하는 1450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2) 柳軾衿給文記

작성연대: 1506(중종 1)~1521(중종 16)년경.

柳軾이 자녀들에게 전답과 노비를 분급한 문서이다. 앞부분이 결락되어 맨 마지막 장만 남아 있어서 어느 정도 분급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 3) 柳軾妻洪氏別給文記

작성연대: 1535년(중종 30).

柳軾의 후처 남양홍씨가 아들 潤弼에게 노비 2구를 별급하는 문서. 윤필은 류식의 셋째 아들이지만 홍씨에게는 장자가 된다.

### 4) 土地明文

작성연대: 1557년(명종 12).

柳潤善(1500~1557)의 처 반남박씨가 柳潤春으로부터 답 3두락을 細木綿 20필을 주고 사들인 문서이다. 문서를 사방을 잘라 크기는 축소되었다.

### 5) 所志

작성연대: 1532년(중종 27).

柳潤善이 영주군수에게立案의 발급을 요청하는 소지이다. 점련문기를 상고한 다음 입안을 발급해 달라는 소지의 투식으로 미루어 점련문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다.

### 6) 許璫妻韓氏別給文記

작성연대: 1554년(명종 9)

許璫의 처 청주한씨가 사위 柳潤善에게 딸의 봉사조로 노비 4구를 별급하하고서

딸[허씨]의 제사를 지속시키기를 당부하고 있다. 류윤선은 허씨가 사망하자 반남 박씨와 재혼하여 영주로 이거하였다.

### 7) 柳潤善別給文記

작성연대: 1550년(명종 5).

류윤선이 며느리 의성김씨에게 田 13두락과 노비 5구를 별급하는 문서이다. 류성(柳城 1533~1560)의 처는 의성김씨로서 김진의 장녀이다. 김진은 학봉 김성일의 아버지이다.

### 8) 柳潤善妻潘南朴氏衿給文記

작성연대: 1579년(선조 12).

류윤선의 후처 반남박씨가 장자 柳城(1533~1560)과 차자 柳堰에게 노비 · 전답을 분급하는 문서이다. 족보에는 류언이 柳垣으로 기록되어 있다. 어느 시기에 改名한 것으로 보인다.

### 9) 招辭

작성연대: 1594년(선조 27)경.

私奴 崔福이 柳復起에게 노비 1구를 放賣한 사실을 진술하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재주의 초사에 해당한다. 최복은 환곡을 상환하기 위해 婦 貴春을 正租 10石을 받고 방매하였다.

### 10) 安東府立案

작성연대: 1594(선조 27).

柳復起가 사노인 崔福으로부터 貴春을 매득한 사실을 안동부에서 公證해준 문서이다.

### 11) 金璫別給文記

작성연대: 1574(선조 7).

金璫(1500~1580)이 외손 柳復起의 부인 盈德鄭氏에게 皮穀 100石과 노비 1구를 별급하는 문서이다.

### 12) 招辭

작성연대: 1594(선조 27)경.

私奴 崔福이 婦 貴春을 류복기에게 방매한데 대하여 그러한 사실이 거짓이 아님을 관부에 입증하는 필집 · 證保의 초사. 필집은 金壽福이며, 증보는 사노인 鄭內隱福과 崔從石이다. 이 문서는 초사(No.9)와 안동부입안((No.10)의 관련문기로서 순서상 招辭(No.9) 다음에 위치해야 한다. No.9, No.10, No.11은 점련문서인데 분리되었다.

### 13) 柳復起別給文記

작성연대: 1600(선조 33)~1617(광해 9)경.

류복기가 손자 柳櫨에게 노비 1구를 별급하는 문서이다. 훠손으로 인한 중간 중간에 마모로 인해 탈자가 있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작성연도는 柳復起(1555~1617) · 류숙(1600~1685)이 공존한 시기를 고려하여 1600~1617년으로 추정하였다. 원래 이문서는 1장으로 작성되었으나 반으로 잘라서 배접되어 있다.

#### 14) 柳復起妻鄭氏衿給文記

작성연대: 1620년(광해군 12).

류복기의 부인 영덕정씨가 아들 友潛 · 得潛 · 知潛 · 守潛 · 宜潛 · 希潛과 사위 鄭榮邦(1577~1650) · 李明遠(1583~?) · 金遠에게 재산을 분급한 문서이다. 17세기 초반 전주류씨의 재산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1장이 6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 15) 柳友潛別給文記

작성연대: 1621년(광해군 13).

류우잠이 장자 柳櫨의 妻趙氏에게 노비 1구를 별급하는 문서. 조씨가 아들을 생산하자 宗嗣의 배려로 별급한 것이다.

#### 16) 土地明文

작성연대: 1641년(인조19).

류우잠의 아우 得潛 · 知潛 · 守潛 · 宜潛 · 希潛이 종손 振輝의 처 안동권씨에게 田 10두락을 지급하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첫 줄 중간의 날자 부분과 明文의 ‘文’자가 결락되었다.

#### 17) 柳元鉉兄弟和會明文

작성연대: 1700(숙종 26).

柳元鉉 · 柳昌鉉 형제가 합의하여 외가전래 노비를 서로 합의하여 3구를 나누어 가진 문서이다. 3구 가운데 원현이 2구, 창현이 1구를 소유했다.

#### 18) 柳櫨傳重文記

작성연대: 1684(숙종 10).

류숙(1600~1684)이 장손 柳宗時(1650~1700)에게 전중하는 문서이다. 당시는 장자 柳振輝(1623~1675)가 사망했기 때문에 長孫 종시에게 전중한 것이다. 전래 봉사조 [畠 16두락, 田 1석락 49부 4속]는 물론 先代祭位條[田 94부 7속]와 류진(안동권씨)의 제위조[畠 21부 1속]에 더하여 노비 5구를 지급하고 있다.

### <문헌자료>

韓國學中央研究院 編, 文化財指定申請書. 城南, 韓國學中央研究院, 2011.

李樹健 編, 「慶北地方古文書集成」. 慶山, 嶺南大學校出版部, 1981.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研究』, 서울, 지식산업사, 1989.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古文書集成 四十四 -安東 全州柳氏篇 I (水谷宗宅)-』, 성남, 1999.

## □ 문화재전문위원

### ○ 현상

낱장 고문서를 첨의 형태로 만든 문서인데 세로가 83cm에 이르는 대형 첨본이다. 이렇게 큰 첨이 형성된 것은 본래의 문서가 분재기라는 낱장 고문서로 되어 있었는데, 뒤에 해당 문건의 분실을 우려하여 누구에 의해서 이처럼 첨의 형태로 제작해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뒷부분의 문서들은 온전한데, 맨 앞의 류의손형제화회문기(柳義孫兄弟和會文記)의 경우에는 1/4 정도가 훼손된 상태이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보존처리 중이어서 해당 작업이 완료되면 좀 더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 내용 및 특징

경북 안동시 임동면 수곡리의 세칭 전주류씨(全州柳氏) 수곡(水谷) 종택에 전해 오던 문서이다. 이 문서는 1447년경부터 1700년까지 250여 년 동안 만들어진 18점의 문서들이 하나로 성첩되어 보전된 것이다. 첫 번째 문서는 류의손형제화회문기(柳義孫兄弟和會文記)로 1447년경에 작성되었는데 류빈(柳濱)의 아들 류의손(둘째)의 4형제(敬孫, 信孫, 末孫)가 서로 협의하여 재산을 나눈 내용을 적은 것이다. 분재 대상은 노비가 총 380구 가량 되는데 그 중에서 네 형제가 80~90구 정도를 나누어 갖고 6구 정도는 봉사조로 지정하였다.

다음 문서는 1506년~1521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유식깃급문기(柳軾衿給文記)로 유식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눈 내역을 기록한 것이다. 문서의 훼손된 부분이 많아서 재산규모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 세 번째로는 류식처홍씨별급문기(柳軾妻洪氏別給文記)이다. 이후로는 토지명문(土地明文)(1557년), 소지(所志)(1532년), 허당처한씨별급문기(許璫妻韓氏別給文記)(1554년), 유윤선별급문기(柳潤善別給文記)(1550년), 유윤선처 반남박씨깃급문기(柳潤善妻 潘南朴氏衿給文記)(1579년), 초사(招辭)(1594년), 안동부입안安東府立案(1594년), 김진별급문기(金璉別給文記)(1574년), 초사(招辭)(1594년), 유복기별급문기(柳復起別給文記)(1600~1617년), 유복기처 정씨깃급문기(柳復起妻 鄭氏衿給文記)(1620년), 유우잠별급문기柳友潛別給文記(1621년), 토지명문(土地明文)(1641년), 유원현화회명문(柳元鉉兄弟)(1700년), 유숙전전중문기(柳肅傳重文記)(1684년) 등의 문서가 이어지고 있다. 대개 임란 이전의 자료이며 이후 것은 6점에 불과하여 역사적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내용상으로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앞부분의 핵심 문서 2건이 많이 훼손된 상태여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선 시도지정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4. 정경세 시장(鄭經世 謚狀)

##### 가. 검토사항

‘정경세 시장’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부터 ‘정경세 시장’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1.12.15)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3.5.30)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정경세 시장(鄭經世 謚狀)
- 소유자(관리자) : 정춘목(한국학중앙연구원)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 수 량 : 1첩
- 규 격 : 세로 60.0×가로 20.0cm
- 재 질 : 장지(壯紙)
- 판 종 : 필사
- 형 식 : 절첩장
- 조성연대 : 1663년(현종 4) 추정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문화재위원회 (시도유형문화재 권고)

조사 고문서 <鄭經世謚狀> 1첩은 현종 4(1663)년경에 尤庵 宋時烈이 찬술한

愚伏 鄭經世의 謂狀 原本이다. 문서의 말미에 謂狀을 올린 다음 奉常寺에서부터 禮曹와 吏曹 및 議政府를 거쳐 國王에 의해 謂號가 결정되기까지의 牒呈, 關文, 啓目 등의 公文書原本도 첨부되어 있어 謂號가 결정되는 전 과정을 공문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관리·보존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文書의 製作時期 등으로 판단할 때 國家文化財로指定하기에는 未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鄭經世謂狀> 1첩은 학술적으로 연구·관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으므로 地方文化財의 指定을 적극 劸告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문서의 적지 않은 부분이 汚染되어 있으므로 장차 紙類文化財 保存修理 專門家나 褙貼匠 등에 의한 補修가 요구된다.

### ○ 문화재전문위원 (시도유형문화재 권고)

鄭經世 謂狀은 송시열이 찬한 謂狀이다. 시장 작성한 후 예조에 신청한 현종 원년(1659)에서부터 국왕에 의해 시호가 결정되는 현종 4년(1663)까지의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조, 奉常寺, 예조, 이조, 의정부를 거쳐 국왕에 이르러 최종 결정되는 전 과정을 牒呈, 關文, 啓目 등의 공문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학술적인 가치가 있고, 조선시대 중시행정 절차 및 과정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 기지정된 문서들과 견주어 보면 시기적으로 늦으므로 지방문화재로 지정을 권고함이 좋을 듯하다.

### ○ 문화재전문위원 (시도유형문화재 권고)

국가문화재 지정 가치는 없음. 조선시대 시호의 발급절차를 알 수 있는 문서이고, 시장은 송시열의 친필로 추정되는 점에서 다소의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 그런데 기준에 지정된 다른 문서와 비교할 때 시기가 다소 늦기 때문에, 국가문화재보다는 시도지정문화재로 검토해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 마. 의결사항

### ○ 부결 : 시도유형문화재 지정 권고

조사보고서

## □ 문화재위원

### ○ 書誌記述

調査 古文書 <鄭經世謚狀>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鄭經世謚狀 / 宋時烈(1607-1689) 撰. -- 筆寫本. -- [筆寫地不明] : [宋時烈], [顯宗 4(1663) 推定].

1帖 ; 60.0×20.0cm. 壯紙. 帖裝.

表題: 愚伏先生謚狀

印文: ‘奉常」寺印’(4顆), ‘禮曹」之印’(3顆), ‘吏曹」之印’(3顆), ‘議政」府印’(1顆)

內容: 宋時烈(1607-1689)이 찬한 愚伏 鄭經世(1563-1633)의 謚狀으로, 原本의 末尾에는 謚狀을 올린 다음 奉常寺에서부터 禮曹와 吏曹 및 議政府를 거쳐 國王에 의해 謚號가 최종 결정되기까지의 牒呈, 關文, 啓目 등의 公文書 原本이 첨부되어 있음.

原本筆書體: 尤庵 宋時烈의 親筆인 듯함.

保存狀態: 현재 良好한 편이나, 汚染된 부분이 적지 않아 장차 紙類文化財 保存修理 專門家나 褙貼匠 등에 의한 補修가 요구됨.

### ○ 現狀

조사 고문서 <鄭經世謚狀> 1첩은 慶尚北道 尚州市 外西面 愚山里 193 鄭椿穆의 소유이며, 소유자가 韓國學中央研究院에 기탁하여 현재 京畿道 城南市 益唐區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에 의하여 受託文化財로 守藏·維持·管理되고 있다.

조사 고문서 <鄭經世謚狀> 1첩의 保存狀態는 良好하며, 현재 專門的 保存施設이 구비된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에 守藏·維持·管理되고 있다.

### ○ 내용 및 특징

조사 고문서 <鄭經世謚狀>은 현종 4(1663)년경에 尤庵 宋時烈(1607-1689)이 찬술한 愚伏 鄭經世(1563-1633)의 謚狀 原本이다.

조사 고문서 <鄭經世謚狀>의 말미에는 謚狀을 올린 다음 奉常寺에서부터 禮曹와 吏曹 및 議政府를 거쳐 國王에 의해 謚號가 결정되기까지의 牒呈, 關文, 啓目 등의 公文書 原本도 첨부되어 있다. 조사 고문서에 따르면, 奉常寺에 謚狀이 上達된 것은 현종 즉위(1659)년 12월이고, 奉常寺에서 禮曹에 牒呈한 것은 현종 1(1660)년 정월이다. 이때 謚號만으로 文肅, 文憲, 文莊이 進達되었다. 이후 동

(1660)년 2월에 禮曹에서 吏曹로 關文을 보내고, 다시 吏曹에서 議政府로 牒呈을 보내는 절차를 거쳐 國王의 최종 인가는 현종 4(1663)년 정월 1월 25일에 내려졌다. 이때 謂號는 首望인 ‘文肅’으로 결정되었는데, 謂註는 ‘勤學好文’, ‘剛德克就’이었다.<sup>1)</sup> 이후 현종 6(1665)년 8월에 禮官이 파견되어 宣謚의 행사가 이루어졌으나, 숙종 19(1693)년에 嶺南儒生들의 건의에 의해 당초의 末望이었던 ‘文莊’으로 改謚되었다.<sup>2)</sup>

조사 고문서는 謂號가 결정되는 전 과정을 公文書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學術의 가치가 매우 높다.

## ○ 원문

### 愚伏先生謚狀

有明朝正憲大夫吏曹判書兼知 經筵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  
學 世子左賓客 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知 經筵春秋館成均館  
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 世子貳師愚伏鄭先生謚狀  
先生諱經世字景任姓鄭氏號愚伏晉州人九世祖澤通判尙州留一子于州子孫仍家焉高祖  
蕃曾祖繼咸祖銀成考汝寔皆不仕然以儒雅著稱妣陝川李氏江陽君瑤之後學生公軻之女  
先生以嘉靖癸亥九月十四日生幼穎悟絕人八歲讀小學文理已通屬文語皆驚人先達稱之以句句  
如花既而又知俗學之外有用力處柳文忠公知州事先生執贊請益文忠一見嗟異遂告之以爲學  
之方先生服膺不怠十六參鄉解兩試二十中進士第二名又四年登第選入槐院薦爲翰林  
上嘗問委巷之義諸講官無對者先生引檀弓以解之  
上色獎之退仍問鄭某誰人子也己丑參弘文錄 賜暇湖堂 盖極選也本館以望不備久不充南床位  
上特以先生爲正字一時榮之魁文臣庭試復 賜異數冬逆獄起先生以嘗在史苑薦逆臣姪子置  
對尋 宿還家庚寅丁外艱柴毀幾不勝壬辰倭虜入寇先生與同志募鄉兵設伏斬捕猝遇  
大賊中矢墜崖李夫人及弟興世皆被害 朝廷獎以倡義討賊陞拜禮曹佐郎上疏懇辭  
仍走兩湖召募兵糧一以復讐討賊爲急癸巳 上下本道使之敦諭赴 朝又力辭服除自禮兵  
郎拜修撰承 召入謝遷正言尋還修撰時當大亂之餘國憂方殷先生入對曰古者大有爲  
之君所以爲本根之計者不過曰學而已既知此心之由學而明則當知此心亦由不學而闇明則  
光輝洞燭於事物闇則是非懵然而莫白然徒事講明而無持敬之功則將無以爲涵養本原  
之地矣  
上警聽焉因講周易進曰此書誠爲聖學之正宗然其義精微未易通曉春秋明討賊之大義當  
此撥亂之日最宜講究  
上問程傳本義異同對曰伏羲先天之學至邵子發揮然後易之本原闡明無餘朱子本義實所以明  
乎此者也若程傳則不專於此而惟以發明義理爲務此其同異之辨也  
上又問陰陽升降善惡吉凶之應對曰陽尊陰卑者分之常也陰升陽降者氣之交也然常者爲否  
爲未濟交者爲泰爲旣濟人君亦須居上而親下然後上下交而治道成矣又曰積陽多則其漸可  
至於君子積陰多則去人而之鬼矣君子小人之分皆由於是蓋陽生物陰殺物雖其造化待對

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顯改 4(1663)年 1月 29(戊戌)日條.

以李袖爲掌令 吳尙爲正言 愈暘爲禮曹參議 金宇亨爲副修撰 李廷夔爲吏曹參議 贈故領議政吳允謙謚忠貞 判書鄭經世謚文肅 參判宋麟壽謚文忠 特除醫官尹後益爲僉知 先是 洪處尹按海西 查覈宮庄 據法上聞 上不悅 對群臣 或發未安之教 銓曹注擬屢斬除命 時處尹方在僉知 特作闕以授後益.

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19(1693)年 9月 5(丙午)日條.

以姜世龜爲承旨 沈季良爲司諫 趙九畹爲正言 金夢陽爲黃海道觀察使 贈贊成閔馨男謚莊貞 吏曹判書鄭經世改謚文莊 領議政盧守愼改謚文簡.

之體不能相無而其類有淑慝之分焉故聖人作易於其不能相無者既以健順仁義之屬明之」  
而至其消長之際淑慝之分則未嘗不致其扶抑之意而吉凶之端亦以類應也後」  
上又問揲蓍之法先生令內侍折枝以來信手揲拏若不經意而其進退多寡之數一皆先命而響合」  
上甚驚異之先生曰此非奧妙難知者因推衍其所以然之故」  
上極加獎賞晉錫便蕃李公恒福每自 講筵退曰眞侍講才也乙未兼司書知製 教時」  
宣廟倦勤 命光海攝政先生與同僚上劄力爭遼為典籍仍陞直講未幾還拜修撰校理兼」  
文學上劄請立志自強」  
上嘉納焉又乞暇省墓」  
上愛其疏意想到令政院寫進一通還朝請頻 御經筵入銓郎遴選衡平俄受 命巡按嶺徼」  
既還」  
上以經筵講易未訖遼吏曹還授玉堂已而還吏曹為正郎兼校書承文校理丁酉兼體察使從」  
事乞解本職專意討賊 不許遷檢詳舍人校理兼弼善時倭虜有再動之勢上劄請修」  
都城為死守計還舍人改掌令復巡按嶺西復 命差奮義軍將授司藝旋拜校理又往」  
嶺西督運還拜司諫尋陞通政為同副承旨間出使 天將軍門嶺南缺方伯」  
上面授之曰卿之才局可合此任時南服新剗先生內撫瘡痍外應軍旅威愛并著時議方攻柳文忠侵」  
及先生先生連章辭遼後連授青松府使左承旨禮曹參議皆不赴惟暫到寧海府卽還與同志」  
設醫藥以濟鄉閭之病者取明道先生語名其院曰存愛壬寅為校正廳堂上被參先是鄭仁弘」  
團結鄉兵賊退猶不釋頗有不戢之聞先生偶以言諸李公貴李引之以論仁弘仁弘大嗛之至是」  
為憲長効以不近語先生自是無意於世卜築於愚伏山中左右圖書研精覃思間或相羊於水石」  
間其發諸吟詠率多沖澹蕭散之趣丁未除大丘府使治稱悃愞無華戊申」  
宣廟賓天光海嗣位因求言上萬言疏大要恤民之實在於寬其力厚其生而二者之本又在於節儉又言宮」  
闈不嚴仕路混濁至」  
先王末年而極矣正始之日所宜惕念而改圖也又言卽祚之初大臣注擬銓相而其人不與焉則命之加擬」  
又不與則又命加擬必得其人姓名然後始肯落筆殿下於慎始之日已用如此滑手段日後之憂」  
何可勝言殿下博觀前史於公私之辨治亂之故察之熟矣豈不知姻姪私昵之為累於聖德乎」  
得非新登大位遽遭危疑之變遂欲廣置親信以為急難之用乎則又大誤矣天地之所以廣大無外人主之所以」  
尊而無對以無私也目今朝廷百官孰非殿下之四體三軍萬姓孰非殿下之赤子乎一視同仁以得其心則孰不為殿」  
下捐軀乎不此之圖而顧欲托於數三親信之人則殿下之有不亦狹乎其勢不亦孤乎又曰天下萬」  
化無一不本於人主之心虞書所謂精一執中孔子所謂誠正克復思孟所謂明善誠身其示人用力」  
之方不翅丁寧殿下今日其可自逸乎其可不敬德乎疏入光海大怒命焚之譏以語逼」  
先朝將鞠之大臣李恒福等救解之只削職未幾西敍己酉充使朝 京先是使臣并以玄盤領從」  
事先生以為盤領勅於後代玄郎齋服非所用於朝賀大禮呈文禮部請易以朝服以遵大明」  
集禮又請兵部得增年例貿硝之數光海大悅命加資拜成均館大司成累辭送西已而出」  
為羅州牧使陞拜全羅監司先是 朝廷以五賢臣從祀文廟仁弘上章醜詆晦齋退溪先」  
生惡之憤疾之言累形於文字仁弘怒甚嗾其徒駁之壬子金直哉獄起先生被引就對光海」  
見其所搜家書語及君上處必上平謂左右曰安有敬謹如是而黨逆者乎先生長男忼甫」  
成童并被逮光海親問汝父教汝以何事對曰只教以忠孝二字光海尤奇之無何得釋初」  
宣廟奏請光海為世子也以臨海為長而廢疾矣後」  
上接待天將時先生請勿許臨海隨駕至是光海殺臨海謂先生有炳幾逆折之功命陞嘉義上疏」  
固辭不許除同知中樞府術人李懿信上疏請遷都先生承命獻議曰國之所以祈天永命人之」  
所以保享遐齡在於修德養性而已豈地理所能與哉事遂寢時朝廷益亂先生力求外除江陵府使」  
愛其俗朴而人願教之以禮為先民勸趨之乙卯又為人所引被逮光海已燭其無實而故不釋以要」  
其贖錢門人將行魏劭故事鄭文穆公亦曰無傷也又有勸子弟訟冤者先生皆痛止之曰君子愛」  
人以德況死生有命豈容人力耶益取聖賢書朝夕研窮樂而忘憂丙辰冬始削職解放癸亥」  
仁祖大王反正首授弘文館副提學先生承 召入謝」  
上勞慰甚至入對請寢舉義人別科之議又請罷內需司以示王者無私之義」

上或從或否俄因灾異上劄曰德崇業進常在於眞積力久之後化成治定非可以歲月遽期則」  
殿下之所以修德立志者能保其無怠乎偏黨之舊習常存而同寅之效未著征繕之宏模未定而進  
討之期茫然則」  
殿下之所以求賢定計者能保其不懈乎至於郊畿之近而奸民玩法禁闈之嚴而女僕通行雖裁抑」  
僥倖而時有啓寵之漸雖從諫如流而或 下嚴峻之批是則無論他日而」  
殿下之秉心已不能純一於時月之頃矣先賢所謂不世之大功易立而至微之本心難保中原之戎虜易逐」  
而一己之私欲難除者甚可畏也今日者誠」  
殿下大有爲之會而不可失之時伏願 堅苦刻厲執德不已勿以己私而妨公道勿以宴安而萌怠忽毋」  
急近效持循不已則自然」  
聖德日新治化日隆矣」  
上批曰自予忝位無一人言予過者今看劄辭不覺敬服故事玉堂長官無輪次侍講之例 筵臣啓言鄭」  
某乃讀書養德之人請頻 賦引接」  
上從之又別賜食物一日講論語至先儒以宰予晝寢爲自棄」  
上問晝寢豈遽至於自棄對曰先儒言懈意一生便是自暴自棄」  
上曰宰予以聖門高弟何乃如此對曰或問程先生自謹嚴諸門人自不謹嚴干程先生何事以此觀之」  
學者須用己力不然則雖聖人與居亦末如之何矣」  
上皆嘉納焉仍問南中人物先生曰張顯光柳袞皆可收用已而兼元子師傅時三司方議廢庶人禋」  
跳出之罪先生議不合大司憲李公貴直斥先生於」  
上前先生乞遜甚力 不許賜盤領表裏兼藝文館提學光海時許筠李爾瞻等媚上尊號光海嫌」  
於獨當故并以上於」  
宣廟而復稱以祖至是廷臣方議刊去尊號先生請并去祖字其意以爲」  
宣廟雖遭外寇而旋即收復與旣亡再造而稱祖之君不同矣況稱祖以功稱宗以德初無高下之殊尤不」  
當有所取捨以取妄作之譏也事竟不行先是」  
上將親祭私廟禮官難於祝號先生以爲」  
主上以」  
宣廟親孫入承大統旣不考」  
宣廟則雖稱考於私親無兩考之嫌當稱考而不加顯稱子而不加孝李公元翼李公廷龜議與克」  
合遂用之旣又上劄陳八條曰立大志曰懋聖學曰重宗統曰盡孝敬曰納諫諍曰公視聽曰嚴宮禁」  
曰鎮民心其論宗統略曰爲人後者爲之子故稱所後爲父母服齊斬三年稱本生爲伯叔而服不杖期」  
誠以受重之義甚大而物無二本家無二尊故也至於帝王之承統則受 宗廟社稷之重爲億兆」  
臣民之主其事體之隆重尤萬萬於士夫家矣故前代帝王以旁支入繼而尊奉私親者率皆見非」  
於當時取譏於後世至宋英宗賴司馬范呂諸賢能據經守正遂以皇伯父稱濮王乃爲得禮」  
之懿我」  
宣廟追崇德興時亦倣而行之此可謂百王之明法也至於今日則與此微有不同蓋」  
殿下」  
宣廟之孫昭穆不可易祖爾不可亂故只得稱祖而不敢稱考旣已稱祖於」  
宣廟而自稱爲孫則雖稱考於所生自稱爲子未有嫌逼之礙也因引司馬光呂公著所論漢宣事爲證」  
旦曰今雖論議已定安知異日必無希恩固寵巧飾欺罔如程子之所憂者乎區區愚慮不得不」  
預爲」  
明主言之 朝廷方議號牌及宣惠廳便否先生獻議略曰常謂宣惠廳節目繁瑣奸蠹易容不可」  
以行之久遠且以臣之所知尙州一邑論之則大同一結所收通計米豆及其人布刷馬價諸色率一歲」  
不過木二疋有餘而今宣惠廳所收當取三疋則較之常年所收殆加三分之一外方之民聞 朝廷講究」  
利民之政日望其惠而乃得三分加一之賦必將譁然而駭矣臣意不如姑徐熟講而行之號牌一事乃」  
是必可行之良法但念塗炭之民未及休息而遽聞此令之下則或不無鳥驚魚駭之慮然善爲開」  
諭處之得宜則恐亦不至於必不可行矣至於兵農之當分論者無不知之而必須贍其衣食給其妻孥」  
然後可令專於蹻躍擊刺之事我國之力有不能辦若量力所及而選兵則兵少不足於用此其所以」

難也既不能此則惟給保一事乃爲前代通行之規而然亦或存或亡不能隨闕填充壬辰亂後尤爲蕩」  
然而教鍊之法則終始未有所聞我國武略之不競職由於此今欲着實行之則必須先行號牌之法」  
多得閑丁以充闕伍然後可以議此矣以嫁女請暇還鄉」

上令本道給婚需辭 不許」

上將講大學吳公允謙 啓言宜待鄭某之歸 從之既還 朝有白虹之變先生上劄曰天道不悟變」  
不虛生意者深宮蟻漢之中幽獨得肆之地無乃敬畏之念乍弛宴安之心漸滋或有人所不知」  
而天已降監者乎古人之言曰一念之善慶星卿雲一念之惡烈風雷雨由此推之則一念之不善一念」  
之白虹也一事之不善一事之白虹也雖無謫見於天者已爲可畏況有之乎伏願」

殿下反躬深省自裏至表自微至顯務使德性常用而物欲不行則天地陽和之氣寧不以類而應而又何」  
陰盛之足憂乎 御批內省多疚天譴宜矣劄辭當體念內司別提梁德允犯死罪」

上只命決杖先生又論其不可曰夫刑之輕重視罪之淺深如權衡稱物得其平而止而其柄在有司雖人君不」  
得容私意於其間使輕者重而重者輕也禮曰君者立於無過之地者也惟如此然後可以正人也不審」

殿下何有於一隸而不肯自立於無過之地使應物之地有累於私意而正家及國之道不能出於至公乎甲子」  
元日又因虹變上劄曰隋以淫滌倏干太陽一之可畏況於再三乎況於三始履端之辰乎此殆不測之禍伏於」  
冥冥之中而人莫之知故天以是大警動于」

聖衷也竊念今日民生新離塗炭憔悴已極譬如大病之人元氣漸盡膈上一息延延僅存正使安之」  
以枕席養之以甘脆欲望其有同平人則非可以歲月致也況又攬動之以搖其情困苦之以竭其氣則」  
其能免於溘然而斃乎水火餘生遭逢」

聖代澤未及究先竭其力量仁深故歸怨速乾文之不寧安知不由於此乎昔在丙辰元月屢有此變一月之內」  
**蓋**不翅八九天之所以告戒者可謂諄復而昏迷不省竟至於爲天所棄由此觀之則天命之不僭益昭然」  
矣今」

殿下既有寅畏之心矣又有懇惻之言矣然又必有不忍人之政見諸行事然後寅畏之心實有所施惻惻之」  
言不爲口惠而方可以答上天仁愛之心矣李适反先生白令三司諸官宿衛 禁中日論入江都非計」  
大駕南巡先生承 命檢察嶺南上狀請毋貸奔北之將又令把守漢江末幾賊平」

大駕還都自嶺南復 命因乞達 不許延平府院君李貴來見先生以爲王子珙曾出賊招不可不早圖」  
先生答謂」

聖世安忍使骨肉危懼兩司竟請議處先生獨執不可大被李貴詬斥遂上章乞免略曰李貴之欲防禁」  
仁城出於」

宗社之慮自古疑之一字必爲讒口所乘而事變無窮常出於意慮之外萬一他日事有難處或不能終」  
始保全則今日諸臣所以委曲宛轉長慮處變之意反歸虛地其有傷於」

聖德豈不大哉臣子之事君但當自盡其心不當違心詭隨以苟同於人而取媚於時也」

上以貴爲甚過且曰玉堂長官欲納君父於無過之地其志不亦善乎責上劄攻之甚急至有爲後日樹功之語先生」  
遂出郊外乞行遣 批曰卿之忠讞予嘉之久矣貴雖有言予豈聽信乎 朝廷亦必非貴而是卿矣先」  
生又劄曰夫仁城之死生何與於廷臣而咸欲其無死者是乃赤心愛」

殿下耳豈有一毫私意於彼哉雖以李貴之憂國如狂亦必以保全爲言者其心亦若此耳何不以己度人謂人」  
如己乃以樹功勒加耶古人之言曰富貴易得名節難保臣若抗顏再入爲人所笑則舉平生而盡棄之」  
豈不悲哉」

上慰諭益至且 命入侍者再先生皆不赴乞退愈力擢拜大司憲連章懇辭曰嘗聞朱子之言曰士大夫」  
之辭受出處非獨一身之事而已其所處之得失關風俗之盛衰尤不可以不慎也臣嘗以是觀於廢朝」  
而驗之矣其所不欲退者雖被物議不許辭避其爲臣者亦貪戀寵眷晏然不去一夫先之十夫效」  
之見聞所慣漸成習俗終至於廉恥掃地利欲滔天而國無所賴目今 朝著清明摺紳相讓**蓋**無」  
一人忘恥而冒進而」

殿下乃欲使臣充一夫之數以啓無恥之習嗚呼」

殿下之待微臣無乃薄乎孔子曰三軍可奪帥也匹夫不可奪志也臣於此職終不敢就」

上不得已許達卽南歸鄉里連拜副提學都承旨 嚴旨趣召遂還 朝」

上引見勞問先生啓曰出納惟允政院之職宋之李沆君命有不可則卽便封還曰臣沆以爲不可千載之」

下可見其君臣矣今臣亦不敢不以汎爲法焉」  
上改容焉先生在 經筵凡二年感激 知遇竭誠殫心從容開導者必以陳善格非爲本」  
上亦思其啓沃之功雖以他遷時使入侍 經筵與之討論遂 特加一資而曰某曾講論語盡心論難先生」  
乞改正且曰臣於此願有獻焉孔子曰道千乘之國敬事而信節用而愛人使民以時聖人治國之道要不」  
出此而中間一敬字爲五者之本竊念」  
聖明於此微有着力未到處蓋施爲號令之間一毫不謹則便不得爲敬非必肆然自用然後爲不敬也」  
伏願 純心積功推致其極使一國臣民涵濡於」  
聖澤者皆知」  
殿下典學之功有以致之則經幄末臣亦有榮矣」  
上嘉獎焉李義吉上疏請尊奉私廟言甚悖妄先生論斥之又因雷雨之變 啓曰慈父之怒其子乃欲起」  
敬起孝不爲有過之人也子能盡孝則父必不怒以此推之則天意固有在矣伏願」  
殿下益篤其敬慎之又慎臨政處事之際發號施令之間不敢有一毫放過使祗畏之心無少懈弛以爲修省」  
之本十一月三告乞祿 不許兼右副賓客昭顯世子將行冠禮先生作圖式以進禮畢」  
上命進資憲教曰卿教誨元子出於至誠予嘉歎久矣長男檢閱松夭上疏乞歸葬」  
上愍勞不許拜大司憲知中樞又以修墓乞暇還鄉連拜大司憲參贊刑曹判書皆辭還 朝又拜大司憲」  
乞禁諸宮家牟利土大夫關節又請收內奴給復之 命丙寅」  
上遭仁獻王后喪欲行三年喪先生以爲」  
主上以繼別之宗入承大統其可以伸情於所生乎宜使綾原主喪而凡喪具之嫌逼於 國葬者皆不可用率」  
同僚論執甚力」  
上只降服杖期而餘皆不從遂以言不行引避遙爲同樞又上喪禮六條兼陳舍己從人逆心求道之說」  
御批觀卿劄辭足見專門禮學予未嘗學問今遭禮訟正猶面墻慚悔無及已而拜大司憲副提學皆辭」  
兼知義禁同知 經筵 詔使姜曰廣王夢尹來先生以贊禮儀度中禮觀者歎服又拜大司憲上數千」  
言懇懃以誠之一字爲要尋授護軍又屢拜大司憲副提學又以次子喪乞歸葬 命給葬需行到」  
清州聞有虜警還赴 朝受嶺南號召之 命傳檄召募將次第前赴俄而和約成有 旨罷兵」  
復 命于 行在仍扈 駕還都劄陳時務曰自古人君遇非常之變者必立非常之志然後能興衰」  
撥亂以卒建非常之業志苟不立因循頹惰不能自強則終亦必亡而已古人云多難興邦殷憂啓聖此正」  
殿下生於憂患之秋也誠能日夜淬勵奮發曰島栖之恥其可雪乎脅盟之辱其忍忘乎犬羊之與和其可恃」  
而爲安乎寤寢一念惟在於湔羞雪憤而不以一毫宴安玩愒之心參錯於其間縱不能提兵深入掃穴犁庭」  
他日賊來亦有以待之不至如前日之束手無策矣衛文公野處漕邑卒致革車三百駛牝三千而狃不敢再」  
窺越王句踐生聚教訓卒成沼吳之功以雪其恥此是甚麼精神甚麼筋骨觀其大布大帛嘗膽軾」  
蛙則二君堅固刻厲之心蓋未嘗一息弛也往日之事言之亦無及然猶有可諉者」  
殿下之所以屈己忍辱者豈不以小屈思所以大伸暫辱思所以久榮乎苟不於此時孜孜矻矻不遑寢食以爲自」  
強之策則君臣上下不免於淪胥以亡雖幸而不亡其屈辱之甚將有十倍於今日者而天下後世皆將以」  
殿下爲偷安苟活之主而已豈不痛哉伏願」  
殿下堅立此志如寄足於百尺竿頭如托身於風濤漏船毋狃於目前之小安而忘日後之憂毋狃於文爲之細」  
節而忽遠大之慮又曰 主已辱矣 宗社將墜矣正使大小臣隣奔走竭力汲汲遑遑如救焚拯溺」  
之爲尚恐無救於亡而奈何一時氣象舒緩泄沓略與平日無異至使敵人之來覘者發燕雀處堂之譏」  
嗚呼痛哉意者天之將喪我邦而奪之魄乎何其靡哲不愚耶臣聞天下萬事無一不本於人主之心竊憚」  
殿下所以修德立政者一年怠於一年雖新經大亂備嘗艱苦而猶不能慄慄危懼如成湯懲毖後患如周成秉心」  
塞淵如衛文施爲命令之間率循故常殊未有喫苦茹痛奮發更始之意天下大本之所在不立如此則臣工」  
之惰窳庶事之隳廢日趨於危亡之域者其故可知也竊料」  
殿下未必不以羈縻爲一毫可恃而幸賊之或不來耳若然則豈不爲千慮之一失乎王恢燕人之習胡事」  
者其言曰凶奴和親不過數歲卽復倍約其他晉宋前車之轍尤較然可戒也子朱子之言曰沮國家」  
恢復之大計壞邊陲備禦之常規者皆講和之說也蓋謂人心有恃而緩於自治也宋太祖發內帑之」  
錢以爲軍餉而曰以此易胡人之首其時契丹之猖獗國事之危急萬萬不如今日而乃能輕舍私藏以徇」  
軍用而近日施措乃有愧焉深恐」

殿下偷安姑息之念日滋月長於隱微之中終無以自強則雖謂之因此亡國亦非過論嗚呼往日之事尙忍言  
哉以百年禮義之國堂堂千乘之  
君而下與戎虜要盟正使此虜終始帖然已爲難雪之恥況其溪壑難盈釁隙易生一夕安寢而秦兵又至  
者安保其必無傳曰有恥而後能知憤知憤而後能自強自強而後行其政令保其國家伏願  
殿下毋忘會稽之恥勿弛嘗膽之憤立之以刻苦之心持之以悠久之誠則當不患刷恥之無日矣以今日人謀事力  
決無重恢之望所望者惟天道助順而輔德願自今每發號作事必先自思曰是可以合天心否乎合則行之  
否則寢之事事如此日日如此則高高在上日監在茲者寧不默佑於冥冥之中乎又請恢言路停廟樂興慶  
遷葬亦且遲待數年罷內需及沿海魚鹽設屯以補軍餉專以安民鍊兵奮勵刷恥爲意  
上以手札批曰屢陳至論欲以格非補闕當服膺勿失以副卿之至誠俄移大司憲副提學乞暇歸鄉里卽以  
大司憲 召道拜右參贊尋還副提學戊辰以大司憲參鞫柳孝立逆獄獄畢加正憲除參贊兼知義禁  
還拜副提學先生以入談道德出領刑罪非其所宜辭知義禁且言近來 命令之發多不和平想深居  
燕閑之地所存所養不能深厚而然宜頻接儒臣 朝廷將以被擄走回人與虜先生箚陳其不可曰爲民父母  
既不能保庇於兵至之日及其舍命來歸又從而縛送之天理人情之所不忍爲今宜先斬李灤以正其中間  
擅諾之罪改撰答書務令明白痛切安知因此不少變其鴟音耶臣昨見邊臣馳 啓賊駐九連城有  
冰合東搶之語宜連綴此等狀 啓付奏于賀至之行而仍請申勅山海寧遠等處使伺其東出直  
擣巢穴則乃爲  
王師大捷之機而彼又形格勢禁不得肆意侵掠矣又曰  
殿下反正之初勵精圖治中外拭目而式至于今治效蔑如若使當初勵精之志果出於誠實則徵驗之見於  
外者豈至於此乎惟其發於言者或非心之所存而施於事者又不能盡如其言故表裏不同前後相違  
真實無妄之道不能與天合德如此而望孚於人猶不可得況能孚於天乎人君之職莫大於安民而  
殿下六年憂勤尙無安堵之效已有土崩之勢及今不爲之所則後悔無及  
殿下於一部中庸誠之名義固已曉然無疑矣程夫子之言曰未讀時是此等人讀了後又只是此等人便  
是不曾讀惟  
殿下惕念焉時  
上方講書傳承 命製渾天儀以進己巳春邊臣馳 啓毛將有東搶意 朝廷將遣重臣爲解棼計  
先生上箚陳其不可復因災異陳箚曰董仲舒之言曰天心仁愛人君自非太無道之世天盡欲扶持而  
全安之胡氏亦曰克勤天戒則雖有其象而無其應伏願  
殿下深體上天仁愛之心益盡平日兢畏之道使剛健之德日積於中清明之政日行於外則一時陰沴之氣  
自當雲消霧釋於太陽之下不然災咎必來而傷敗乃至天之所以仁愛者亦安可屢冀也尋乞暇歸  
鄉四月還朝  
上曰賴卿輔導時或懲窒卿去未久予心茅塞承春宮令寫進九思九容五月移拜大司憲忽有痿痺之症  
上遣醫看病累辭 許逆旋拜右參贊禮曹判書乞暇浴漱於榮川遷遜還家上疏乞致仕優  
批不許拜吏曹判書再上疏辭  
上屢下溫旨召還又兼文衡力辭不得 命先生遂勉供仕公心正色專務調和士論收拾人才場屋文體  
務令平實怪辭險語一皆黜之庚午兼知 經筵春秋板島將劉興治殺其主將陳繼盛  
上議興師討之先生上言其不可曰當初群議皆以爲此賊必舉軍投虜背叛 天朝惟有仗義興師爲  
天朝討叛逆引對之際大計立定旣而聞之則非徒渠不投虜反以應虜構誣繼盛  
上聞 朝廷彼其擅行戕殺肆爲誣罔之罪固不容誅而與虜連謀之狀時未著明徐待 朝廷指揮而處  
之未晚已而累箚祈免  
上皆溫諭不許 穆陵遷葬承 命改撰誌文又請權停賀至之禮時有戚里媒進宮僕之說李公命  
俊疏論之備局回 啓大忤  
上旨三司政院爭之皆不能得先生進言曰此事細微若其街巷傳聞之誤則  
聖明平氣而答之曰無是事矣萬一有之則  
聖明惕念而答之曰當卽改矣若是則聖人胸次都無一事光明洒落寬廣和平而上下之間情義流通  
矣張思叔一匹夫也而詬詈僕夫程先生責之曰何不動心忍性今以 千乘之君酬應大臣而可用如此聲  
色乎伏願

殿下虛心於觀理應物之際用力於難制易發之地使忿戾之氣雲消霧捲則回思頃日之事必有不勝」  
其悔者矣」

上意遂解舉朝相慶時有城門謗書之事先生遂無當世之念請暇大歸解職閑居有 召命皆不赴」  
辛未聞」

上用勳宰議決意 追崇遂上封事力陳其不可且曰」

殿下同於己者則若將加諸膝異於己者則若將墜諸淵率是以行則將見阿諛者日進而讟言無由而至」  
矣豈不危哉臣嘗見」

聖教若曰漢唐以下人主賢於予者亦皆爲之予何獨不然諸葛武侯所謂妄自菲薄引喻失義以塞忠諫」  
之路者不幸而近之矣 不報六月聞虜騎入寇力疾赴難行到報恩疾甚不得進上疏陳情自是病勢彌」  
留八月東宮下札復遣宮官以問藥餌食物陸續賜送」

上亦遣醫十一月授左參贊上狀辭 不許壬申先生引年乞致仕 批曰此非先朝舊臣辭退之時 贈予至意」  
調理上來又上疏乞解本職及兼帶 許之俄授知樞六月」

仁穆王后昇遐先生以病未赴臨上疏陳情拜大司憲又上狀辭疾漸革癸酉六月丁丑易簣于正寢臨歿」  
謂家人曰男子不絕於婦人之手又曰送我必以禮訃聞」

上震悼輶朝弔賻如儀 贈議政府左贊成 特令東宮舉哀八月甲申葬于咸昌縣檢湖之上卯向之」  
原先生嘗夢新居臨十里荷花及是果符真境嗚呼豈其識耶東宮別賜賻遣宮官致祭仍」

看窓葬令曰鄭賓客平生嗜禮宮官往毋失禮葬之日遠近來會者四百餘人乙亥士子等配享于道」  
南書院有文集若干卷所抄朱子大全名曰朱文酌海者行于世有思問錄喪禮參考皆未及就夫人」  
全義李氏部將海之女無嗣後夫人真寶李氏學生潔之女參判塙之曾孫退溪先生之從孫仁柔」  
淑哲內治甚整生二男二女男長檢閱忙有雋才次櫟志行不凡亦早夭女適生員盧碩命大司憲宋」  
浚吉側出男曰櫟萬戶檢閱生一男一女男曰道應以學行今爲丹城縣監女適奉事趙漢叟盧碩命」  
一男曰思永二女適士人全翼考李松來宋浚吉一男曰光栻洗馬二女適學生羅明佐校理閔維」  
重櫟有一男曰道徵時烈未及灑掃於先生之門然嘗聞沙溪金先生之言曰愚伏自是質直人其禮」  
學之精近世所無當今可與論學者惟此一人云爾則其稟賦與學問因可槩見矣既又從大憲」  
宋公遊知其有深衣之托而信其推尊稱美之言可徵於今與後也 盖嘗聞先生長身廣額目光炯然」  
天資豪爽俊偉清嚴好禮立心以忠厚寬仁爲主進學以精思實踐爲本私淑於退陶遡本於考亭」  
想象欵慕以爲準則充養旣厚英華自發望之崇深若不可犯及至接人則胸衿洞豁和氣藹然聞」  
風覲德者不覺心醉而誠服其事親養盡其孝喪盡其哀常痛其離怨未報共戴一天凡係日本」  
物件絕不以近諸家每日晨起拜廟雖疏懶不繼而粢盛必備有叔父年老奉養如親父女弟貧窮撫」  
愛如手足家庭之內禮教興行肅穆若朝廷焉其在郡縣以明禮崇化移風易俗爲務其惠鮮困窮」  
培育人才出於赤心故士民皆事之以師而愛之如父兄中遭道消屏居修業不復有意於當世」  
聖主更化風雲契合委以論思之任殆將十年先生旣以輔養」

君德爲己任每進對之際宿齊預戒精心積誠凡時政得失生民休戚義利公私之辨天人王霸之分援據古」  
今出入經史隨事進規竭盡無餘其言溫厚和平委曲懇惻時人擬之范淳夫云」

仁祖亦虛己傾聽待以師禮惟恐一日不在側也」

章陵之議實是千古變禮而先生獨守所見沛然自信雖上拂 主意下與時忤謗謗四至而終無所悔也」

平居儼然端坐獨觀昭曠之原謙挹自將絕無矜伐之意艱深機械常以爲戒恩讎枝刻絕於言議」  
禍福之至怡然處順無毫髮動於心者常戒子弟曰學者立心之本當以盡者爲法不當以不盡者爲」  
準古人所謂仁不如堯孝不如舜學不如孔子皆自棄者眞是警省語外物悠悠不足爲吾輕重世之」  
挾一技求自衒者豈非淺之爲丈夫也又曰人須有無所知無所能之心然後終可到於無所不知無所不」  
能也常以世無人才爲歎曰上之所以育才者固無其道而下之所以自處者亦局於卑近幸而決科則自謂」  
能事畢矣旣仕則不復致意於學故立朝則無仁義之陳於君臨民則無教導之及於人何怪乎世道之」  
不古也平生酷好朱文常曰千古以來豈有如此文章餘以文名家者殆類彷矣末年病忘日用事物以至」  
子弟名字或不能記而語及朱文則心神爽然輒舉數三行極論其歸趣而後已於戴記亦然也見人」  
或有創立新說異同於先儒者必正色嚴責曰朱先生行而後言后學惟當篤信精究而已至於假竊」  
形似簸弄筆舌豈不爲吾道之罪人耶雅性沖澹一切世味紛華服玩財業泊如也人有餽遺卽散親」

黨曰不如是則我心如有所累矣爲宰相四十年無宅於京無田於野惟有山水之癖一遇會心處輒  
 樂而忘歸雖在仕務倥偬之意未嘗不在於故山泉石也其爲冢宰受命於病衰之後精力實有  
 不逮而一事不敢苟然有一表弟一妹婿求仕甚切先生終不爲之地曰兩人皆不堪百執事者豈敢以私情  
 而輕朝廷名器耶友人李公塏每歎其至公無私先生文章出於六經根乎性理絕不使僻書異言尤長  
 於疏筭渾厚典雅明白懇到有足以感動人主論者謂近世稱大家數者未有能及之云爲詩精切琢鍊  
 能說出人所不能形容處然必待境而成不屑屑爲也筆法端重嚴密雖尋常簡札皆有法度先生  
 性喜謙冲不以師道自居然學士大夫與東南之士講學論禮率皆取正聞其教而知所向者不知其幾  
 人也嗚呼先生之學之才既不愧於古人當時際會又不可謂不隆而時運不幸喪亂頻仍丁卯以後見於  
 章奏者懇叩反覆愈往愈切庶幾拯濟艱危灑雪羞恥至於數十年之久而其言鑿鑿如燭照龜卜  
 而無有不驗者倘於今日或備清閑之燕幸有以當  
 上心焉則安知其不有補於重恢再造之業也若以丁卯所謂不如宋祖之萬萬者而又知今日不如丁卯之萬萬  
 痛疾奮躍以收瞑眩之效則先生之志之行無有間於先後早晚之異而搢紳之士相與慕用其言論  
 風旨必以陳善納誨爲忠而以尸官苟祿爲恥使君德日躋於上生民日遂於下隱然眞有興衰撥亂之  
 勢則先生雖沒而其精爽之不亡者爲無憾於九原也嗚呼歟矣是豈易與俗人言哉余先人有蒙難  
 立憤之操先生若已有之亟稱於人固知先生以好義樂善之心有發潛闡幽之意矣今於易名之狀不可  
 終辭而益有疇昔之感略據大憲公狀第錄如右云

資憲大夫吏曹判書兼五衛都摠府都摠管成均館祭酒世子侍講院贊善宋時烈謹狀  
 己亥十二月 日  
 照訖付奉常寺[奉常]寺印]  
 堂上[手決] 鄰廳[手決]

奉常寺爲謚號事 贈左贊成鄭經世行狀導良弘文館同議望牒呈後錄爲遺合行牒呈伏請[奉常]寺印]  
 照驗施行須至牒呈者[奉常]寺印]

右	牒	呈	
禮	曹		判官李[手決] 直長柳[手決]
			奉事[ ]
順治十七年正月	日	正鄭[手決] 僉正[ ]	主簿韓[手決] 副奉事金[手決]
謚號			主簿柳[手決] 參奉
後[奉常]寺印]			
文肅 勸學好問曰文			
剛德克就曰肅			
文憲 文上同			
行善可紀曰憲			
文莊 文上同			
履正志和曰莊			

禮曹爲謚號事粘連牒呈內辭緣相考施行向事合行移關請[禮曹]之印]  
 照驗施行須至關者[禮曹]之印]

右 關  
 吏 曹

順治十七年二月[禮曹]之印]

謚號  
 正郎[ ] 佐郎[ ]  
 閱 參判[手決] 參議[ ] 正郎[ ] 佐郎[ ]  
 正郎[ ] 佐郎[手決]

吏曹爲謚號事粘連牒呈內辭緣相考施行爲只爲合行牒呈伏請[吏曹]之印]

照驗施行須至牒呈者[吏曹]之印]

右牒呈

議政府

正郎[ ] 佐郎李[手決]

順治十七年二月 日 判書[ ] 參判[ ] 參議李[手決] 正郎[ ] 佐郎[ ]

謚狀[吏曹]之印] 正郎[ ] 佐郎[ ]

議政府

啓目粘連牒呈是白有亦依牒呈施行何如

領議政臣鄭[手決]

康熙二年正月二十二日[議政]府印]

左議政臣元[手決]

[宋時烈手決]

康熙二年正月二十五日

啓依允

行都承旨臣權[手決]

## ○ 기 타

조사 고문서 <鄭經世謚狀> 1첩의 保存狀態는 良好하며, 현재 專門的 保存施設이 구비된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에 守藏·維持·管理되고 있다. 그러나 汚染된 부분이 적지 않아 장차 紙類文化財 保存修理 專門家나 褙貼匠 등에 의한 補修가 요구된다.

## <문헌자료>

韓國學中央研究院 篇, 「文化財指定申請書」, 城南 : 韓國學中央研究院, 2011.

宋時烈 著, 「宋子大全」, 卷205, 謚狀, <愚伏鄭公謚狀>條.

鄭經世 著, 「愚伏先生別集」, 卷11, 附錄. <有明朝鮮正憲大夫 吏曹判書兼知經筵春秋館 成均館事 弘文館大提學 藝文館大提學 世子左賓客 贈崇政大夫 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 知經筵春秋館 成均館事 弘文館大提學 藝文館大提學 世子貳師愚伏鄭先生謚狀[宋時烈]>條.

## □ 문화재전문위원

## ○ 현상

절첩으로 된 표지에는 ‘愚伏先生謚狀’이라 묵서되어 있고, 본문은 오염되어 부분적으로 얼룩져 있으나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 ○ 서지사항

鄭經世謚狀 / 宋時烈(1607-1689) 撰.

筆寫本. [宋時烈], [효종 10(1659)~顯宗 4(1663) 推定].

1帖 ; 60.0×20.0cm. 有界, 壮紙. 折帖裝.

表題: 愚伏先生謚狀

## ○ 내용 및 특징

鄭經世(1563-1633)는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 자는 景任, 호는 愚伏, 본관은 晉州. 성리학자로서 특히 禮學에 조예가 깊었고 관직은 이조판서와 대제학을 지냈다. 顯宗 4(1663)년에 내려진 시호는 ‘文肅’인데 숙종 19(1693)년에 嶺南儒生들의 건의에 의해 ‘文莊’으로 改謚되었다.

이 謚狀은 顯宗 4(1663)년에 정경세에게 ‘文肅’의 시호가 결정되기까지 시장을 포함한 각 기관을 거친 공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謚狀을 올린 다음 奉常寺에서 禮曹로 보낸 牒呈, 예조에서 吏曹로 보낸 關, 이조에서 의정부로 보낸 牒呈, 의정부에서 국왕에게 상달한 啓目 등 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성 시기도 다르며, 지질도 謚狀 부분과 공문서 부분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매 면에는 상하변과 계선 표시가 있고 擡頭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데 上邊 위에 2자를 대두하였다.

시장 작성 이후 예조에 시호를 신청한 1659년에서 시호가 결정되던 1663년까지의 절차 및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은 정경세의 행적을 宋時烈(1607-1689)이 짓고 글씨도 쓴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 끝에는 1659년 12월 예조에서 시장을 照訖한 뒤 奉常寺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照訖奉常寺’가 묵서되어 있고 당시 실무를 주관했던 예조 堂上과 郎廳의 수결과 ‘禮曹之印’이 있다.

2) 牒呈은 1660년 (현종 1) 정월 봉상시에서 시호 명칭 3望을 예조로 통보하는 공문이다. 後錄에 홍문관과 함께 의정한 세 가지 후보 명칭 즉 文肅, 文憲, 文莊 3망에 대한 해당 시호의 謚註가 雙行으로 附記되어 있다. 하단에는 謚望 의정에 참여한 봉상시의 관원은 직명과 성을 기록하여 正 이하 判官, 主簿, 直長, 副奉事 순으로 수결하였고 ‘奉常寺之印’이라 새겨진 官印을 세 곳에 찍혀 있는데 연호 위에는 ‘謚號’라 묵서되어 용도를 명시하였다.

3) 關은 1660년(현종 1) 2월에 정경세의 시호와 관련하여 예조에서 吏曹로 보낸 공문이다. 봉상시와 홍문관 등 시호관련 부서와 제반 절차를 거친 뒤 관련 문건을 첨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봉상시에서 올라온 점령 첨정의 내용을 상고하여 시행하라”는 문구지만 문서작성 형식은 봉상시 첨정과

유사하여 ‘禮曹之印’이 세 곳에 있고 연호 위에는 ‘謚號’라 묵서되어 있다.

4) 牒牘은 1660년(현종 1) 2월 예조로부터 정경세 시호 관련 문건을 이관받은 이조에서 의정부에 보고하는 공문인데 관련 문건은 첨부되지 않았다. 이 첨정 역시 점련된 첨정에 의거하여 절차에 따라 행정처리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점에서 기존의 문서와 내용상 차이가 없다. ‘吏曹之印’도 위치가 같은 세 곳에 있으며 연호 위에는 ‘謚狀’이라 묵서되어 있다.

5) 啓目은 1663년(현종 4)정월 23일 의정부에서 정경세의 시호 관련 문건을 갖추어 최종적으로 왕의 재가를 받기 위해 올린 문서이다. 문서에는 없지만 ‘文肅’이란 데에 낙점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대 위에 ‘議政府印’이 찍혀있고 그 아래 의정부 관원인 영의정, 좌의정, 좌참찬, 사인 등의 姓氏 및 수결이 있다. 직명과 성씨 사이에 小字로 ‘臣’이라 쓴 것은 국왕 문서임을 나타낸 표기이다. 왕의 재가가 내려지면 인준의 의미로 ‘啓’라고 찍은 다음 이를 처리한 연월일과 의정부의 계에 따라 윤허한다는 의미의 “啓依允”의 3자를 연호 첫 자와 나란히 묵서하였다. 담당승지인 도승지의 수결이 있어 국왕의 최종 인가가 난 것은 1663년(현종 4) 정월 25일이었다. 이때 시호는 首望인 ‘文肅’으로 결정되었는데, 謚註는 ‘勤學好文曰文’, ‘剛德克就曰肅’이었다.

시호관련 문서는 대부분 낱장 형태로서 온전치 못함이 다른 인물들의 사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서는 謚狀을 기준으로 하여 끝에 시호가 결정되기까지 각 기관을 거친 공문서를 동일한 형태로 粘連한 일괄문서라는 점에서 가치는 매우 높다. 조선시대 증시행정 절차 및 과정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

鄭經世謚狀은 『愚伏先生別集』 卷11 附錄과 『宋子大全』 권250, 謚狀, 「愚伏鄭公謚狀」이란 제목으로全文이 실려 있다.

### <문헌자료>

- 韓國學中央研究院編, 『文化財指定申請書』, 城南, 韓國學中央研究院, 2011.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研究』, 서울, 지식산업사, 1989.  
김학수, 「鄭經世의 愚伏先生謚狀」, 『고문서연구』 20, 한국고문서학회, 2002.  
김학수,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시대의 贈謚 행정」, 『고문서연구』 23, 한국고문서학회, 2003.

## □ 문화재전문위원

- 현상

경북 상주시 외서면 우산리(愚山里) 우복종택 산수헌(山水軒)에서 대대로 보존되어오던 문서이다. 절첩(折帖) 형식의 문서로 두꺼운 장지로 되어 있으며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더욱이 시장이 송시열의 글씨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세로 60.0cm의 크기로 통상적인 절첩보다는 큰 편에 속하는 문서이다.

### ○ 내용 및 특징

우복 정경세(鄭經世, 1563-1633)에 대해 시호를 추증하기 위해서 1659년(현종 4)에 송시열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시장이다. 아울러 여기에 당시 추증 과정에서 만들어진 관련 공문서들이 첨부되어 있다. 문서의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조선시대 시호 행정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이다. 작성된 문서의 종류와 내역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장(謚狀)으로 1659년경 송시열이 이조판서 시절 작성한 것으로 시호 대상자인 정경세에 대한 행적을 적었다. 그리고 본문 다음에는 이 문서가 예조에서 확인한 뒤 봉상시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어서 첨정(牒呈)이 있는데, 이는 봉상시에서 시호의 명칭에 대해서 기 선정된 세 가지, 즉 3망(望)을 예조로 통보하는 공문이다. 여기서의 세 가지 후보 명칭은 문숙(文肅), 문현(文憲), 문장(文莊)이었다(3망은 홍문관에서 정해준 것으로 추정됨). 다음으로는 예조에서 이조로 보낸 공문인 관(關)이 있다. 그리고 이조에서 의정부로 보고하는 공문인 첨정(牒呈)이 있다. 다음으로는 계목(啓目)이 있는데 이는 의정부에서 당시 국왕인 현종에게 최종적으로 올린 문서이다. 이에 대해 임금이 최종으로 열람을 하였다. 문서에서는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시 임금은 문숙(文肅)이란 데에 낙점을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문서에는 예조→봉상시→예조→이조→의정부→국왕에 이르는 시호의 선정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어서 역사적 가치가 높다. 아울러 이를 통해서 조선시대 많은 사람들이 받았던 시호라는 것이 이처럼 복잡한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통상 시호와 관련된 고문서는 시호서경(謚號署經), 시호망단자(謚號望單子) 등 단편적인 낱장의 문서로만 확인이 가능한 반면, 이 문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 5.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 가. 검토사항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1.11.22)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3.6.7)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천태종 성룡사(구인사 성보박물관)
- 소 재 지 :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2-1(구인사 성보박물관)
- 수 량 : 1책
- 규 격 : 세로 27.2(19.5) × 가로 17.3(13.8)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선장본
- 조성연대 : 1486년(성종 17) 추정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문화재위원회 (지정 가치 있음)

조사本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는 普照國師 知訥(1158-1210)이 고려 熙宗

5(1209)년에 唐朝 宗密(780~841)의 「法集別行錄」에서 요점을 초록한 <法集別行錄節要>에 자신의 私見인 <私記>를 붙여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라 題名한 佛書으로 성종 17(1486)년에 全羅道 光州 無等山의 圭峯菴에서 刊行된 木版本이다.

調査本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는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序>,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跋>, <刊記>, <施主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印刷狀態가 비교적 鮮明한 것으로 보아 刻板된 直後에 印出된 版본이 아닌가 한다.

調査本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는 佛敎學 研究는 물론 朝鮮時代 初期의 木板印刷文化 연구에도 귀중한 文獻資料로 활용될 수 있을 傳本이 희귀한 貴重本이다.

調査本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는 현재까지 公開된 全羅道 光州 無等山 圭峯菴의 刊本 중에서 이미 國家文化財(寶物)로 지정된 版本들에 비하여 <序>와 <跋> 등의 缺落이 없는 無缺點의 版本인 점에서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評價된다.

현재 調査本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과 同一한 版本으로 明知大學校博物館 所藏의 寶物 第1148號와 한솔종이博物館 所藏의 寶物 第1222號 등의 2種이 國家文化財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明知大學校博物館 所藏의 寶物 第1148號는 序文과 跋文이 모두 缺落되었고, 한솔종이박물관 博物館 所藏의 寶物 第1222號는 跋文은 있으나 序文은 결락되었다. 그러나 調査本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는 현재까지 공개된 全羅道 光州 無等山 圭峯菴의 刊本 중에서 이미 國가문화재(보물)로 지정된 版本들에 비하여 <序>와 <跋> 등의 缺落이 없는 無缺點의 版本이다. 따라서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評價된다.

## ○ 문화재전문위원(지정 가치 있음)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는 普照國師 知訥(1158~1210)이 불문에서 수행하는 후학들에게 觀行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당나라 宗密(780~841)의 『法集別行錄』에서 중요한 것을 간추려 ‘節要’라 하고 이에 자신의 견해인 ‘私記’를 삽입하여 찬술한 불서로서 조선 성종 17년(1486) 여름 전라도 광주 무등산의 규봉암에서 간행된 목판본이다.

서문과 발문 등이 갖추어진 완전본이며, 인쇄상태가 선명하니 새기자 바로 찍은 것으로 보여진다. 권말의 大傑 발문에는 이 책의 간행동기 및 간행제원의 명단이 수록되어 간행경위를 알 수 있고, 보조국사 지눌의 禪思想이 결집되어 있으므로 불교학 및 조선 전기 불서간행연구에 귀중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동일본으로 지정된 보물 제1148호(명지대학교 1993.1)에는 서·발문이 모두 결락되어 있고, 보물 제1222호(한솔제지 1995.7)에는 발문은 있으나 서문이 결락되어

있는데 이 성용사본은 서·발문 등이 완전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되어야 한다.

### ○ 관계전문가 (지정 가치 있음)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는 普照國師 知訥(1158-1210)이 고려 熙宗 5(1209)년에 唐 宗密(780-841)의 『法集別行錄』에서 요점을 간추려 정리한 <法集別行錄節要>에 자신의 견해인 <私記>를 붙여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로撰成하였다.

이번 조사본은 성종 17(1486)년에 全羅道 光州 無等山의 圭峯菴에서 刊行된 木版本이다.

조사본의 編成體裁는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序>,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跋>, <刊記>, <施主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쇄상태가 비교적 선명한 것으로 보아 刻板된 直後에 印出된 版本으로 보인다.

이 版本은 佛敎學 뿐만 아니라 조선 초기의 木板印刷文化 연구에도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전래본이 매우 적은 貴重本이다.

현재까지 알려진同一한 版本의 傳來本으로는 명지대학교박물관 소장의 <寶物 第1148號>와 한솔종이박물관 소장의 <寶物 第1222號> 등의 2종이 있으며 모두 國家文化財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조사본은 현재까지 알려진 전라도 광주 무등산 圭峯菴의 刊本 중에서 이미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版本들에 缺落된 <序>와 <跋> 등이 있는 우수한 版本이다. 따라서 國家文化財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관리·보존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예고

조사보고서

## □ 문화재위원

### ○ 書誌記述

調査本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 宗密(780-841) 原著 ; 知訥(1158-1210) 抄錄·私記. -- 木版本. -- [全羅道 光州] : [無等山 圭峯庵], [成宗 17(1486)板刻 推定].

不分卷1冊(61張) : 四周單邊, 半郭 19.5×13.8cm, 無界, 10行21字, 註雙行, 白口, 混上下內向黑魚尾·上下內向1·2葉花紋魚尾 ; 27.2×17.3cm. 椅紙. 線裝(改裝).

序題: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卷頭題: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卷末題: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版心題: 私記

內容目次: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序,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跋, 刊記, 施主秩.

卷頭序: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序 / 八溪比丘蘿月堂 孤翁述 / 聞夫妙道冲虛不可以言語文字求也既非文與言 / 語又何從而悟之是以吾 佛大覺眼不耐見衆生 / 妾受輪轉故生於王者之室捐乎萬乘之榮沈影雪 / 山苦行然後始於鹿苑終至跋提開妙道於三乘乘 / 乘歸實闡一心於悲願願度生故一佛之教密相 / 之隱顯律禪之異同無不備矣自迦葉已下西天四 / 七唐土二三雖不立文字亦不能忘言而授受之際 / 示靈知之心此不能不振一佛之教也自是以來 / 依悟修證者不可勝數但昧者不知耳予近讀此錄乃 / 成佛之捷徑修行之妙種故以承聖言再明深淺如 / 今學輩迷於禪教修心者以經論爲別宗講說者以 / 禪門爲別法聞談因果修證便推屬經論之家不知 / 修證正是禪門之本業聞說卽心卽佛便推屬胸襟 / 之禪不知心佛正是經論之本意乃吾訥師若不以 / 權實經論對配深淺禪宗焉得以教照心以心解教 / 耶禪門雖一傳法相違若南侁北秀保唐宣什等息 / 妾修心石頭牛頭下至徑山等無有一法洪州舉體 / 全真是敍各有所悟通少局多也唯荷澤圭峰知訥 / 等悟解昭然遂使迷者開有無之虛實示心性之靈 / 知故寶藏論云知有有壞知無無敗其知之知有無 / 不計如是開示靈知之心卽真性能如是則後之學/者當取信於此法無取信於餘宗然從上諸祖密教 / 律禪之四宗共傳一佛之旨不可闕也何則教中謂 / 一佛乘無二無三安有四宗之別也譬如四序成一 / 歲之功而春夏秋冬之別也其所不別一歲之功密 / 宗春也教宗夏也律宗秋也禪宗冬也會而歸之密 / 宗乃宣一佛大悲拔濟之心教宗乃闡一佛大智開 / 示之心律宗乃持一佛大行莊嚴之心禪宗乃傳一 / 佛大覺靈知之心也且靈知內不涉思惟計較之情 / 外不可學問修證之功窮劫迨今皆自然了了常知 / 故擬心領荷早涉途程脫體承當飜成鈍置此別中 / 之開示也今之纂要意在斯焉彼按圖索馬者烏足 / 以知之嗚呼從凡趣聖離此無門須將明鏡一一攷 / 之

卷末刊記: 成化二十二年丙午(성종 17, 1486)夏全羅道光州無等山圭峯/庵開板

卷末跋文: 竊聞達磨來梁顯揚禪法曹溪已後宗習相垂講者 / 偏彰漸義禪者偏播頓宗禪講相嫌故我國普照國 / 師欲解他縛以如來三種教義印禪宗三種法門集 / 目別行以貽後學其弟子惠謙正宣等募工雕板自 / 是以來歲久字剝學者病焉大傑幸得人身獲聞法 / 要願以此法欲廣將來爲法忘於軀命愍人切於神 / 情故廻茲重鏤於諸梓上助無爲之妙化方冀茲緣 / 流施將日月而無窮斯福遐敷與乾坤而永大伏願 / 主上萬歲 世子千秋 文武和平 / 聖日與佛日常明 金輪與法輪雙運風調雨順歲稔 / 時康萬國歡欣四邊寧靜十方抱識同爲極樂之化 / 生法界含靈共作此因之成佛云成化二十二年丙 / 午(성종 17, 1486)夏孟日大傑謹跋

卷末施主秩: 書大施主李順基兩主 / 乃圭 信敬 正了 鄭童 成衆伊丞伊 長智 / 實相 石牛 性擔  
安心 尹明兩主 金淡 / 杉戒 處良 信默 金得兩主 莫德 / 信牛 學乳 性沈 學道 趙哲山兩主 金守  
/ 祖衍 惠中 浩月 蔡仁守 妙德 / 惠成 智牛 海澄 添思閭 朴得万 張亡達 / 默修 戒義 性悟 作  
板善牛 鄭玉江 丹之 / 上瓊 智紹 智正 斗明 尹玉同 紉伊 / 惠正 空印 玄雄 信悟 鄭守安 文个 /

達空 玄惠 學裕 刻義敬 周同彥 仏德 水山

出處: 佛腹藏遺物인 듯한 흔적이 있음

印文: '○/○○(三寶紋印)', '金永/源印', '石海'(卷頭)

狀態: 末張이 褙接되어 있고 部分的으로 漏濕의 痕迹이 있으며 前後의 原表紙 밖으로 表紙를 뒷면 형태로 改裝되었으나, 保存狀態는 比較的 良好함

所有者: 大韓佛教 天台宗 星龍寺(서울特別市 西大門區 滄川洞 116-5)

管理者: 大韓佛教 天台宗 救仁寺 聖寶博物館(忠清北道 丹陽郡 永春面 栢子里 132-1)

既指定: 보물 제1148호(明知大學校博物館 所藏), 보물 제1222호(한솔종이博物館 所藏)

## ○ 現狀

調查本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는 普照國師 知訥(1158-1210)이 고려 熙宗 5(1209)년에 唐朝 宗密(780-841)의 「法集別行錄」에서 要點을 초록한 <法集別行錄節要>에 자신의 <私記>를 붙여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라 題名한 佛書로, 성종 17(1486)년에 全羅道 光州 無等山의 圭峯庵에서 刊行된 木版本이다.

調查本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는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滄川洞 116-5의 大韓佛教天台宗 星龍寺의 所有로, 현재 소유자가 忠清北道 丹陽郡 永春面 栢子里 132-1의 大韓佛教 天台宗 救仁寺에 寄託하여 전문적인 保存施設이 갖추어진 救仁寺 聖寶博物館에 의하여 守藏·管理되고 있다.

調查本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의 版式의 邊欄은 四周單邊이며 半郭의 크기는 세로 19.5cm 가로 13.8cm 內外이고 冊의 크기는 세로 27.2cm 가로 17.3cm 內外이다. 紙質은 楷紙이며, 裝訂은 後代에 原表紙 밖으로 새로운 表紙를 뒷면에 五針眼訂의 線裝으로 改裝한 듯하다.

調查本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는 末張이 褙接되어 있고 部分的으로 漏濕의 痕迹이 있으며, 前後의 原表紙 밖으로 表紙를 뒷면 형태로 改裝되어 있다. 保存狀態는 比較的 良好하나 部分적으로 紙類文化財 專門機關이나 褙貼匠에 의한 補修 및 保存處理가 要望된다.

## ○ 내용 및 특징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는 普照國師 知訥(1158-1210)이 入寂 1년 전인 52세 때인 고려 희종 5(1209)년에 唐朝 宗密(780-841)이 저술한 「法集別行錄」에서 要點만을 抄錄한 <法集別行錄節要>에 자신의 私見인 <私記>를 붙여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라 제명한 佛書로 ‘節要’라 略稱하기도 한다.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는 禪思想이 결집된 수행의 指針書로 韓國佛教 講院教材 중의 하나이며, 일찍이 講院教材로 채택된 탓에 우리나라 高僧의 著述로는 드물게도 많이 刊行되었다. 現在까지 公開된 版本으로는 성종 17(1486)년의 無等山 圭峯庵과 順天 松廣寺 開刊本을 비롯하여, 선조 3(1570)년의 大青山 解脫寺와

海州 神光寺 開刊本, 선조 7(1574)년의 開板處 不明本, 선조 11(1578)년의 五臺山 月精寺 開刊本, 선조 12(1579)년의 智異山 神興寺 開刊本, 선조 21(1588)년의 虎踞山 雲門寺 開刊本, 선조 37(1604)년의 智異山 能仁庵 開刊本, 선조 41(1608)년의 曹溪山 松廣寺 重刊本, 인조 6(1628)년의 朔州 龍服寺 開刊本, 인조 11(1633)년의 雪峰山 釋王寺 開刊本, 인조 13(1635)년의 雲住山 龍藏寺 開刊本, 인조 18(1640)년의 重刊本, 인조 25(1647)년의 慶尙道 普賢山 普賢寺 覆刊本, 숙종 6(1680)년의 妙香山 普賢寺 開刊本, 숙종 7(1681)년의 圓寂山 雲興寺 開刊本, 숙종 12(1686)년의 金華山 澄光寺 開刊本, 숙종 27(1701)년의 曜陽山 凤巖寺 開刊本 등 무려 24종의 版本이 전래되고 있으며 合綴本과 註釋本도 數種이나 전해지고 있다.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의 우리나라 高僧의 연구 註釋書로는 淨源(1627-1709)의 「節要私記分要科」를 비롯하여 定慧(1685-1741)의 「法集別行錄節要私記解」, 有一(1720-1799)의 「法集別行錄節要科目并入私記」 등이 전해지고 있으며, 秋鵬(1651-1706)이 지은 <私記>도 있었음이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唐朝 宗密(780-841)이 著述한 「法集別行錄」의 原著는 전해지지 않는다.

調査本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는 卷末에 나타나는 “成化二十二年丙午(성종 17, 1486)夏全羅道光州無等山圭峯/菴開板”이라는 刊記와 “… 成化二十二年丙午(성종 17, 1486)夏孟日大傑謹跋”이라는 序文로 보아 成宗 17(1486)년에 全羅道 光州 無等山의 圭峯菴에서 刊行된 木版本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 公開된 朝鮮時代 刊本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刊本이다.

調査本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는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序>,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跋>, <刊記>, <施主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印刷狀態가 비교적 鮮明한 것으로 보아 刻板된 直後에 印出된 版본이 아닌가 한다. 특히 蘿月堂 孤翁(?-?)이 지은 序文 2張과 성종 17(1486)년 4월 大傑(?-?)이 지은 跋文 1張 등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大傑의 跋文에 “永大伏願/ 主上萬歲 世子千秋 文武和平 / 聖日與佛日常明 金輪與法輪雙運風調雨順歲稔/ 時康萬國歡欣四邊寧靜十方抱識同爲極樂之化/ 生法界含靈共作此因之成佛云”이라 나타나듯, 主上과 王世子가 康寧하고 朝廷이 安定되어 온 나라가 和平하기를 祝願하는 마음에서 開板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卷末의 施主秩에는 開板에 관련된 “書大施主李順基兩主/ 乃圭 信敬 正了 鄭童 成衆伊丞伊 長智/ 實相 石牛 性澹 安心 尹明兩主 金淡/ 杉戒 處良 信默 金得兩主 莫德/ 信牛 學乳 性沈 學道 趙哲山兩主 金守/ 祖衍 惠中 浩月 蔡仁守 妙德/ 惠成 智牛 海澄 添思閭 朴得万 張亡達/ 默修 戒義 性悟” 등의 施主者名을 비롯하여 “善牛 鄭玉江 丹之/ 上瓊 智紹 智正 斗明 尹玉同 翁伊/ 惠正 空印 玄雄 信悟 鄭守安 文个/ 達空 玄惠 學裕” 등의 作板者名 그리고 “義敬 周同彥 仏德 水山” 등의 刻手名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卷頭에는 ‘○/○○(三寶紋印)', '金永/源印', '石

海' 등의 印文이 踏印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된 인물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調查本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는 印刷狀態가 비교적 鮮明한 것으로 보아 刻板된 直後에 印出된 版本이 아닌가 한다. 현재 調查本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과 同一한 版本으로 明知大學校博物館 所藏의 寶物 第1148號와 한솔종이博物館 所藏의 寶物 第1222號 등 2種이 國家文化財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明知大學校博物館 所藏의 寶物 第1148號는 序文과 跋文이 모두 缺落되어 있고, 한솔종이박물관 博物館 所藏의 寶物 第1222號는 跋文은 있으나 序文은 缺落되어 있다.

調查本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는 현재까지 공개된 全羅道 光州 無等山 圭峯菴의 刊本 중에서 이미 國家文化財(寶物)로 지정된 版本들에 비하여 無缺點의 版本이다. 따라서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評價된다.

## ○ 기 타

調查本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는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滄川洞 116-5의 大韓佛教天台宗 星龍寺의 所有로 保存狀態는 比較的 良好하며, 현재 소유자가 忠淸北道 丹陽郡 永春面 栢子里 132-1의 大韓佛教 天台宗 救仁寺에 寄託하여 전문적인 保存施設이 갖추어진 救仁寺 聖寶博物館에 의하여 守藏·管理되고 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紙類文化財 專門機關이나 褙貼匠에 의한 補修 및 保存處理가 要望된다.

## ○ 關聯 人物 事項

知訥(1158-1210): 고려의 승려로 定慧結社를 조직해 불교의 개혁을 추진했으며, 頤悟漸修와 定慧雙修를 주장하며 禪教一致를 추구하였다. 俗性은 鄭氏이고 號는 牧牛子이며 謐號는 佛日普照國師이다. 고려 의종 12(1158)년에 洞州(黃海道 瑞興)에서 출생하였으며, 부친은 國學의 學正을 역임한 鄭光遇이고 모친은 開興郡(黃海道 延白) 출신의 趙氏이다.

의종 19(1165)년에 8세의 나이로 九山禪門 閣嶺山派의 宗暉를 스승으로 삼아 출가하고 명종 3(1173)년에 具足戒를 받아 승려가 되었다. 어려서 큰 병을 앓아 목숨이 위태롭게 되자 그의 부모가 병만 나으면 출가를 시키겠다고 誓願을 하였으며, 그 뒤 병이 깨끗이 낫자 약속대로 出家를 시켰다고 전해진다.

출가한 뒤에는 25세 무렵까지 특별한 스승을 따르지 않고 經論을 자유롭게 읽으며 禪院을 찾았으며 독자적인 禪의 사상체계를 세웠다. 명종 12(1182)년에 僧科에 합격하고 개성 普濟寺에서 열린 談禪法會에 참여해 10여명의 동료들과 뒷날 结社하기로 약속하였다. 지눌의 <勸修定慧結社文>에는 “이 모임이 과거거든 名利를 버리고 산 속에 들어가 定慧를 균등히 닦는 것으로 업을 삼는다. 禮佛과 경전

읽기, 노동으로 울력을 하는 데까지 각자 맡은 일을 성실히 하여, 인연을 따라 심성을 수양하면서 평생을 구속 없이 지내 達士와 眞人の 높은 수행을 따를다면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라 기록되어 있다. 이는 당시에 이미 ‘定慧雙修’의 수행관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기술이다.

그 뒤 昌平(전남 담양)의 清源寺에서 중국 南宗禪의 창시자인 曹溪大師 慧能(638-713)의 「六祖壇經」을 보면서 心性의 본바탕을 발견하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修道에 더욱 정진하여 28세 때인 1185년 下柯山(慶北 醍泉의 鶴駕山) 普門寺에서 3년 동안 「大藏經」을 공부하였다. 이때 「華嚴經」의 <如來出現品>과 李通玄(635-730)의 「新華嚴經論」의 영향을 받아 禪과 敎의 일치를 깨달았다고 전해진다.

명종 18(1188)년에는 公山(慶北 永川 八公山)의 居祖寺로 거처를 옮겨 得才, 夢船 등과 함께 定慧結社를 조직하고, 명종 20(1190)년에 <勸修定慧結社文>을 발표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았다. 그러나 명종 27(1197)년에 “미진한 나에게 이토록 많은 이들이 모이니 본래의 내 뜻을 잊을 정도”라며 智異山의 上無住庵으로 거처를 옮기고 수행에 정진했다. 이 무렵 중국 南宋 臨濟宗 楊岐派의 禪僧으로 看話禪을 提唱한 大慧禪師 宗果(1089-1163)의 「大慧語錄」을 통해 3번째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신종 3(1200)년에 신라시대에 세워진 松廣山 吉祥寺(全南 順天 松廣寺)를 重建하고 그곳으로 定慧結社를 옮겨 수행과 敎化에 주력하였다. 당시 고려에는 義天(1055-1101)이 개창한 天台宗에 합류하기를 거부하고 曹溪大師 慧能(638-713) 이래의 南宗禪을 고수하던 승려들을 曹溪宗이라고 불렀는데, 知訥의 定慧結社는 그 중심으로 떠올랐다. 1205년 崔忠獻(1149-1219)의 武臣政權에 의해 새로 즉위한 熙宗(재위 1204-1211)은 松廣山 吉祥寺의 이름을 曹溪山 修禪社로 바꾸고, 知訥에게 滿繡袈裟를 하사하며 120일 동안 落成法會를 열게 하였다. 이는 고려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敎宗과 天台宗 승려들이 대체로 武臣政權에 敵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대립하던 曹溪宗을 지원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知訥은 修禪社에 머무르며, 「金剛經」과 慧能의 「六祖壇經」, 宗果의 「大慧語錄」, 李通玄(635-730)의 「新華嚴經論」을 중심으로 가르침을 펼쳤다. 그리고 「圓頓成佛論」(1202), 「誠初心學入門」(1205), 「華嚴論節要」(1207), 「法集別行錄節要竝入私記」(1209) 등을 저술하며 자신의 사상을 體系化하였다.

知訥은 희종 6(1210)년 3월 27일 53세의 나이로 入寂하였다. 희종은 그에게 ‘佛日普照國師’라는 시호와 함께 그의 묘탑에도 ‘甘露’라는 이름을 내렸다. 저술로는 「勸修定慧結社文」, 「修心訣」, 「圓頓成佛論」, 「看話決疑論」, 「眞心直說」, 「誠初心學入門」, 「法集別行錄節要竝入私記」, 「華嚴論節要」, 「念佛要門」, 「六祖慧能大師法寶

壇經跋」 등이 있으며, 그밖에 「法語歌頌」, 「上堂錄」, 「禪覺銘」 등은 오늘날에는 전해지지 않는다. 제자로는 ‘儒佛一致說’을 주장한 慧謙(1178~1234) 등이 있다.

知訥은 고려 후기 혜능의 南宗禪 전통을 계승한 曹溪宗을 中興시켜 이른바 ‘曹溪宗의 開祖’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宗派로서의 曹溪宗의 名稱은 知訥 이전부터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知訥에게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불교의 최대 종파인 ‘大韓佛教 曹溪宗’은 8세기 신라에 禪宗을 들여와 迦智山派를 개창한 道義를 개조로 하고 있으며, 지눌은 中闡祖, 고려 말기의 臨濟宗 승려인 普愚(1301~1382)를 中興祖로 받들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知訥>

### <문헌자료>

知訥 著,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木版本. [全羅道 光州] : [無等山 圭峯菴], [成宗 17(1486)板刻]. 星龍寺 所藏本.

知訥 著,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木版本. [全羅道 光州] : [無等山 圭峯菴], [成宗 17(1486)板刻]. 明智大學校博物館 所藏本. 보물 제1148호.

知訥 著,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木版本. [全羅道 光州] : [無等山 圭峯菴], [成宗 17(1486)板刻]. 한솔종이博物館 所藏本. 보물 제1222호.

서울市 文化財委員會 編, <星龍寺 所藏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國家文化財(寶物) 指定 申請書>. 서울 : 서울市 文化財委員會, 2010.

## □ 문화재전문위원

### ○ 현상

原表紙 위에 새 표지를 덧댄 改裝 형태로 되어 있고, 마지막 장은 緝接되어 있다. 부분적으로 漏濕의 痕迹이 있으나 판면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함.

### ○ 서지사항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知訥(1158~1210)撰述

木板本. 全羅道 光州, 無等山 圭峯菴, 조선 성종 17(1486)板刻,  
不分卷1冊(61張), 四周單邊, 半郭 19.5×13.8cm, 無界, 半葉 10行20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7.2×17.3cm. 楠紙. 線裝.

卷頭題: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卷末題: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板心題: 私記

序文 :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序 八溪比丘蘿月堂 孤翁述

卷末 : 大安元年己巳(고려 희종 5, 1209)夏月日 海東曹溪山牧牛子知訥私記

刊記 : 成化二十二年丙午(성종 17, 1486)夏 全羅道 光州 無等山 圭峯菴開板.

跋文 : 成化二十二年丙午(성종 17, 1486)夏孟日 大傑謹跋.

卷末施主秩: 書大施主李順基兩主 乃圭 信敬 正了..... 漆 思問 朴得万.....作 板  
善牛 鄭玉江.... 刻 義敬 周同彥 仏德 水山

## ○ 내용 및 특징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는 普照國師 知訥(1158~1210)이 불문에서 수행하는 후학들에게 觀行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당나라 宗密(780~841)의 『法集別行錄』에서 중요한 것을 간추려 ‘節要’라 하고 이에 자신의 견해인 ‘私記’를 삽입하여 엮어낸 불서이다. 줄여서 『節要』라고도 한다. 권말에 “大安元年己巳夏月日海東曹溪山牧牛子知訥私記”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고려 희종 5년(1209) 여름에 찬술되었다.

이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는 조선 성종 17년(1486) 여름 전라도 광주 무등산의 규봉암에서 간행된 목판본이다. 권말의 大傑 발문에 의하면 보조국사의 제자인 惠謙(1178~1234) · 正宣 등이 刻工을 모집하여 간행하였다고 한다. 그 뒤 오랜 세월이 경과되자 새긴 글자에 刑缺이 생겨 읽기에 어려움을 겪었음으로 대결이 그 傳來本에 의거 성종 17년(1486) 여름 전라도 광주 무등산의 규봉암에서 개간한 것이 바로 이 판본이다. 판각에 있어서 上梓用筆書本은 대시주인 李順基兩主의 시재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밖의 간역은 乃圭등 50여명의 승려와 단월로 부터 지원받은 시주로 판의 옷칠을 思問 등이 하고, 作板은 善牛 · 斗明 · 信悟 등이 하였으며, 刻手는 義敬 등이 맡아 하였다.

권두 하단에는 ‘石海’, ‘金永源印’과 판독이 안 되는 인장 등이 날인되어 있고, 蘿月堂 孤翁이 지은 서문과 성종 17년(1486)에 대결이 쓴 발문 등이 완전하게 갖추어진 판본이다. 인쇄상태가 선명하니 새기자 바로 찍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 『節要』는 지눌의 禪思想을 바탕으로 참다운 수행인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 불교전문강원에서 四集科의 필수교재의 하나로 채택 이용되었기 때문에 빈번히 간행되어 20여종이 넘는 다양한 판종이 유통되었다. 그중 조선조에서 간행된 精刻本으로는 간행기록이 명시된 판본으로는 이것이 앞선 善本이며, 같은 판본이 보물 제 1148호(명지대학교 1993. 1)와 보물 제1222호(한솔제지 1995. 7)로 각각 지정되었다.

<문헌자료>

서울시文化財委員會편,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 서울, 서울시文化財委員會, 2011.  
문화재관리국, 『동산문화재 지정보고서(92~93 지정편)』, 서울, 1994.  
문화재관리국, 『동산문화재 지정보고서(94~95 지정편)』, 서울, 1996.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 관계전문가

### ○ 書誌記述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 宗密(780~841) 原著 ; 知訥(1158~1210) 抄錄·私記.  
-- 木版本. -- [全羅道 光州] : [無等山 圭峯菴], [成宗 17(1486)板刻].  
1冊(61張) : 四周單邊, 半郭 19.5×13.8cm, 無界, 10行21字, 註雙行, 白口, 混上下內向黑魚尾·上下內向1·2葉花紋魚尾 ; 27.2×17.3cm. 楠紙. 線裝(改裝).

<주기 사항>

序題: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卷頭題: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卷末題: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版心題: 私記

內容目次: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序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跋

    刊記

    施主秩.

卷頭序: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序

卷末刊記: 成化二十二年丙午(성종 17, 1486)夏全羅道光州無等山圭峯/ 菴開板

卷末跋文

卷末施主秩

出處: 佛腹藏의 흔적이 있음.

印文: ‘○○○(三寶紋印)’, ‘金永/源印’, ‘石海’

### ○ 現狀

마지막 장을 배접하였고 부분적으로 漏濕의 흔적이 있으며 앞뒤의 原表紙가 있고 겉으로 表紙를 덧대 개장하였으며 보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나 보존복원 처

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 ○ 동일판본

寶物 第1148號 (명지대학교박물관 소장)

寶物 第1222號 (한솔종이박물관 소장)

## ○ 내용 및 특징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는 普照國師 知訥(1158-1210)이 고려 熙宗 5(1209)년에 唐 宗密(780-841)의 『法集別行錄』에서 요점을 간추려 정리한 <法集別行錄節要>에 자신의 견해인 <私記>를 붙여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로撰成하였다.

이 불서는 성종 17(1486)년에 全羅道 光州 無等山의 圭峯菴에서 刊行된 木版本이다.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는 禪思想 수행의 지침서로 여러 차례 刊行되었다. 現在까지 알려진 版本으로는 성종 17(1486)년의 無等山 圭峯菴과 順天 松廣寺의 開刊本을 비롯하여 무려 24종의 版本이 전래되고 있으며 合綴本과 註釋本도 몇종 전해지고 있다.

조사대상인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는 卷末에 “成化二十二年丙午(성종 17, 1486)夏全羅道光州無等山圭峯/菴開板”라고 刊記와 서문의 “… 成化二十二年丙午(성종 17, 1486)夏孟日大傑謹跋” 기록으로 보아 成宗 17(1486)년에 全羅道 光州 無等山의 圭峯菴에서 刊行된 木版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발견된 朝鮮時代 刊本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刊本이다.

調査本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는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序>,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跋>, <刊記>, <施主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印刷狀態가 비교적 鮮明한 것으로 보아 刻板된 直後에 印出된 版本으로 보인다. 특히 蘿月堂 孤翁(생몰년 미상)이 지은 序文 2張과 성종 17(1486)년 4월 大傑(생몰년 미상)이 지은 跋文 1張 등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卷末의 施主秩에는 開板에 관련된 施主者名을 비롯하여 作板者名 그리고 “義敬 周同彥 佛德 水山” 등의 刻手名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卷頭에는 ‘○/○○(三寶紋印)’, ‘金永/源印’, ‘石海’ 등의 印文이 새겨진 所藏印 있다.

조사본의 編成體裁는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序>,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跋>, <刊記>, <施主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쇄상태가 비교적 선명한 것으로 보아 刻板된 直後에 印出된 版本으로 보인다.

이 版本은 佛教學 뿐 아니라 조선 초기의 木板印刷文化 연구에도 가치가 있

는 것으로 전래본이 매우 적은 貴重本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同一한 版本의 傳來本으로는 명지대학교박물관 소장의 <寶物 第1148號>와 한솔종이박물관 소장의 <寶物 第1222號> 등의 2종이 있으며 모두 國家文化財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명지대학교박물관 소장의 <寶物 第1148號>는 序文과 跋文이 모두 缺落되어 있고, 한솔종이박물관 소장의 <寶物 第1222號>는 跋文은 있으나 序文은 缺落되어 있다.

이미 國家文化財(寶物)로 지정된 版本들과 비교해 볼 때, 조사본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는 보다 더 우수한 版本이다. 따라서 國家文化財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관리·보존할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 <문헌자료>

知訥 著,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木版本. [全羅道 光州] : [無等山 圭峯菴], [成宗 17(1486)板刻]. 星龍寺 所藏本.

知訥 著,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木版本. [全羅道 光州] : [無等山 圭峯菴], [成宗 17(1486)板刻]. 明智大學校博物館 所藏本. 보물 제1148호.

知訥 著,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木版本. [全羅道 光州] : [無等山 圭峯菴], [成宗 17(1486)板刻]. 한솔종이博物館 所藏本. 보물 제1222호.

서울市 文化財委員會 編, <星龍寺 所藏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國家文化財(寶物) 指定 申請書>. 서울 : 서울市 文化財委員會, 2010.

## 6. 병자일록(丙子日錄)

### 가. 검토사항

‘병자일록’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병자일록’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 ('12.3.6)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3.7.3)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병자일록(丙子日錄)
- 소유자(관리자) :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40 민속자연사박물관
- 수 량 : 1책(43장)
- 규 격 : 세로 23.4×가로 21.3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필사본
- 형 식 : 선장
- 조성연대 : 17세기 중후반기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문화재위원회 (시도유형문화재 권고)

조사본 「亂離日記」는 丙子胡亂이 일어난 丙子(1636)年 12月 11日부터 翌(丁丑,

1637)年 2月 28日까지의 胡亂關聯 日記와 將士들의 事蹟을 수록한 淨書·加筆本의 實記類 書籍이다. 그 傳本이 희귀한 筆寫本으로 조선시대 後期의 丙子胡亂과 관련된 歷史와 戰爭史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政治史와 民俗學 등의 연구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學術的 價值가 높은 자료이다.

그러나 조사본 「亂離日記」는 草稿가 아닌 淨書·加筆本이라는 점과 특히 淨書者를 조사본의 편저자인 南磯(1592-1671)이라 確證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점이다. 나아가 조사본 「亂離日記」의 제1장 前面의 ‘仁祖大王十四年丙子’와 제40장 후면의 添行加筆된 ‘李惇五及弟惇叙兄弟具江都死(原:無錄)’ 및 제41장前面의 ‘李惇五妻金氏(原:李敦五妻金氏)’와 ‘與其姑夫人李氏及惇實妻李氏(原:與其姑李氏及姨李氏)’ 및 ‘其姑及娣氏血流滿衣賊弃之而去(原:其姑及娣血流滿衣賊弃之而去)’ 등의 添行加筆과 一部加筆, 그리고 제1장 前面의 “余以重試枝同官赴闕與南溟翼李恒福尹夏三友同宿(原:余以重試枝同官赴闕與南溟翼李性恒尹夏三友同宿)”에 나타나는 誤記 혹은 偽寫는 조사본 「亂離日記」의 文化財의 가치를 크게 歪曲시키고 있다.

따라서 조사본 「亂離日記」는 學術的 價值는 매우 높으나, 國家文化財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관리·보존할 만한 文化財의 價值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본 「亂離日記」는 地方文化財로 지정하여 연구·관리·보존할 만한 학술적·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므로 제주특별자치도 有形文化財로 指定하여 연구·관리·보존할 것을 적극 권고하는 바이다.

### ○ 문화재전문위원 (시도유형문화재 권고)

이 책에는 병자호란 당시의 전반적인 사실과 정세가 기록되어 있다. 더욱이 난리 중에서도 외적들의 만행과 우리 측의 대응사실이 비교적 자세히 수록되어 있어서 정사를 보충할 야사로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다만 개인적인 일기가 대개 그러하듯이 사실을 검증하기가 쉽지 않고,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본(異本)들이 몇 종이나 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난리일기』라는 서명으로 지방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 문화재전문위원 (시도유형문화재 권고)

이 『丙子日錄』은 병자호란이 일어난 丙子年(1636) 12월 11일부터 이듬해 丁丑年(1637) 2월 28일까지의 일기와 전난과 관련된 인물들의 事蹟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 필사본이다. 병자호란을 직접 목격하고 쓴 개인일기로서 전란 당시의 상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역사서 및 관찬사서를 보완할 야사로서 가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본문은 동일한 필체의 정서본으로 필사자 및 필사년에 관한 근거 기

록도 없고 加筆과 誤記 등이 나타나고 있어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서명을 『亂離日記』로 하여 제주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부결 : 시도유형문화재 지정 권고

조사보고서

#### □ 문화재위원

- 書誌記述

調査本 「亂離日記」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亂離日記 / 南磯(1592-1671) 著 ; [筆寫者不明]. -- 淨書加筆本. -- [筆寫地不明] : [筆寫者不明], [仁祖 14(1636) 以後 淨書·加筆 推定].  
不分卷1冊(43張) : 半葉 無界, 12行20字, 無魚尾 ; 23.4.0×21.3cm. 楷紙. 線裝.

表題: 丙子日錄

裏題: 丙子日記

卷頭題: 亂離日記

內容: 丙子(1636)年 12月 11일부터 翌(丁丑, 1637)年 2月 28일까지의 日記와 將士들의 事蹟

收錄日字: 丙子(1636)年 12月 11-30日, 丁丑(1637)年 正月 1-30日, 2月 1-18日, 21-28日.

跋(日記部分): 右記至各司文書皆用崇德之日始爲絕筆而中/ 草爲士友傳覽失其所在更取亂藁修正則二十/ 九日以下無所攷一時將士以下在別紙仍以附焉

序(將士部分): 一時將士自言其功者類皆虛誇傳聞之語亦多不實/ 余欲得其實狀每遇被虜逃還人及身經戰陣者必窮問/ 其始終故其聞事蹟頗詳今錄其略于後

印文: 完熙

## ○ 現狀

조사본 「亂離日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40의 濟州特別自治道民俗自然史博物館에 소장되어 있으며, 동 박물관에 의하여 保管·維持·管理되고 있다.

조사본 「亂離日記」는 濟州特別自治道民俗自然史博物館이 2011년 11월에 소장자 李完熙로부터 濟州特別自治道民俗自然史博物館 자료수집 규정에 의거하여 유상 수집한 문화재 중의 1책이다.

조사본 「亂離日記」의 保存狀態는 表紙의 改裝은 물론 본문의 面紙에 심한 毀損과 汚損이 있어 매우 불량한 편이며, 현재 專門的 保存施設이 구비된 濟州特別自治道民俗自然史博物館에 의해 守藏·管理되고 있다.

조사본 「亂離日記」는 毀損과 汚損의 정도가 심하므로 紙類文化財 保存修理 專門家나 褙貼匠 등에 의한 保存處理가 절실히 요구된다.

## ○ 내용 및 특징

조사본 「亂離日記」는 南燦(1592-1671)의 저술로 내용은 丙子胡亂이 일어난 丙子(1636)年 12月 11日부터 翌(丁丑, 1637)年 2月 28일까지의 胡亂關聯 日記와 將士들의 事蹟을 수록한 淨書·加筆本의 實記類 書籍이다.

조사본 「亂離日記」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實記類로서 현재 전해지는 版본은 필사본 3종과 목판본 1종의 다음의 4종으로 알려져 있다.

- (1) 南燦 著, 亂離日記. 淨書加筆本. [筆寫地不明] : [筆寫者不明], [仁祖 14(1636) 以後 淨寫加筆 推定]. (濟州特別自治道民俗自然史博物館所藏本).
- (2) 南燦 著, 丙子日記. 筆寫本. [筆寫地不明] : [筆寫者不明], [仁祖 14(1636) 以後 筆寫 推定].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 한고朝56-나189).
- (3) 鄭道應·鄭錫僑 共編, 昭代粹言. 筆寫本. [筆寫地不明] : [筆寫者不明], [仁祖 14(1636) 以後 筆寫 推定]. 卷10. '亂離日記'條. (藏書閣所藏本).
- (4) 南基榮 編, 新安世稿續. 木版本. [刊寫地不明] : [刊寫者不明], 純祖 9(1809). 卷3-4. 由由軒(南燦)遺稿. 雜錄. '丙子日記'條.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 古朝43-가56).

조사본 「亂離日記」의 表題는 '丙子日錄'이고 裏題는 '丙子日記'이며 卷頭題는 '亂離日記'이다. 表題와 裏題는 원래 없었던 表紙를 補裝한 후에 補筆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國家文化財 指定申請書에서 서명으로 기록하고 있는 '丙子日錄'은 卷頭題인 '亂離日記'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본 「亂離日記」의 수록기간은 丙子(1636)年 12月 11日부터 翌(丁丑, 1637)年 2月 28일까지 도합 78일간이나, 실제의 收錄日字는 丙子(1636)年 12月 11-30日의 20일, 丁丑(1637)年 正月 1-30日의 30일 그리고 丁丑年 2月 1-18일의 18일 및

21-28日의 8일 등 도합 76일간이며, 그 중 丁丑年 2月 19일의 “十九日晴瀋陽謝恩使李聖求懷恩君鄭太和等除授”와 20일의 “二十日晴宰臣及侍從落後者削奪官爵其餘落後者皆罷職不敘”의 일기는 누락되어 있다.

조사본 「亂離日記」의 내용에는 淨書된 부분과 加筆된 부분이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은 淨書이나 간혹 加筆된 부분도 있다. 表題의 ‘丙子日錄’과 裏題의 ‘丙子日記’를 비롯하여 제1장 前面의 ‘仁祖大王十四年丙子’는同一人の 가필인 듯하며, 제40장 후면에 添行加筆된 ‘李淳五及弟淳叙兄弟具江都死(原:無錄)’와 제41장 前面의 ‘李淳五妻金氏(原:李敦五妻金氏)’와 ‘與其姑夫人李氏及淳實妻李氏(原:與其姑李氏及姨李氏)’ 및 ‘其姑及娣氏血流滿衣賊弃之而去(原:其姑及姨血流滿衣賊弃之而去)’ 등도 또 다른同一人の 加筆인 듯하다. 또한 제1장 前面의 “余以重試枝同官赴闕與南溟翼李恒福尹夏三友同宿(原:余以重試枝同官赴闕與南溟翼李性恒尹夏三友同宿)”에 誤記 혹은 偽寫가 나타나고 있다.

조사본 「亂離日記」의 編著者は 先學者들의 연구에 의하여 南磯(1592-1671)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조사본 「亂離日記」가 편저자 南磯의 親筆淨書本이라 確證될 만한 근거는 없다. 따라서 조사본 「亂離日記」의 淨書者가 누구인지는 不明하며, 淨書된 時期는 仁祖 14(1636) 以後로 추정된다. 또한 加筆者가 누구인지도 불명하나 아마도 李淳五(1585-1637)의 후손에 의하여 가필된 듯하며, 加筆된 시기는 紙質과 墨色으로 미루어 近代의 어느 시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본 「亂離日記」는 그 傳本이 희귀한 筆寫本으로 조선시대 후기의 丙子胡亂과 관련된 歷史와 戰爭史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政治史와 民俗學 등의 연구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이다.

그러나 조사본 「亂離日記」는 草稿가 아닌 淨書·加筆本이라는 점과 특히 淨書者를 편저자인 南磯이라 確證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점이다. 또한 제1장 前面의 ‘仁祖大王十四年丙子’와 제40장 후면의 添行加筆된 ‘李淳五及弟淳叙兄弟具江都死(原:無錄)’ 및 제41장 前面의 ‘李淳五妻金氏(原:李敦五妻金氏)’와 ‘與其姑夫人李氏及淳實妻李氏(原:與其姑李氏及姨李氏)’ 및 ‘其姑及娣氏血流滿衣賊弃之而去(原:其姑及姨血流滿衣賊弃之而去)’ 등의 添行加筆과 一部加筆, 그리고 제1장 前面의 “余以重試枝同官赴闕與南溟翼李恒福尹夏三友同宿(原:余以重試枝同官赴闕與南溟翼李性恒尹夏三友同宿)”에 나타나는 誤記 혹은 偽寫는 조사본 「亂離日記」의 文化財의 가치를 크게 歪曲시키고 있다.

따라서 조사본 「亂離日記」는 學術的 價值는 매우 높으나,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관리·보존할 만한 文化財의 가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본 「亂離日記」는 지방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관리·보존할 만한 學術的·文化財의 가치가 충분하므로 제주특별자치도 有形文化財로指定하여 연구·관리·보

존할 것을 적극 권고하는 바이다.

## ○ 기 타

조사본 「亂離日記」는 專門的 保存施設이 구비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40의 濟州特別自治道民俗自然史博物館에 의하여 保管·維持·管理되고 있다.

조사본 「亂離日記」는 毀損과 汚損의 정도가 심하므로 紙類文化財 保存修理 專門家나 褙貼匠 등에 의한 保存處理가 절실히 요구된다.

## <문헌자료>

濟州特別自治道民俗自然史博物館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 「丙子日錄」. 濟州, 濟州特別自治道民俗自然史博物館, 2011.

張庚男, 南磯의 「丙子日錄」研究. □□國際語文□□ 第31輯(2004.8.). pp.139-170.

南磯 著, 亂離日記. 淨寫加筆本. [筆寫地不明] : [筆寫者不明], [仁祖 14(1636) 以後 淨寫加筆 推定]. (濟州特別自治道民俗自然史博物館所藏本).

南磯 著, 丙子日記. 筆寫本. [筆寫地不明] : [筆寫者不明], [仁祖 14(1636) 以後 筆寫 推定].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 한古朝56-나189).

鄭道應·鄭錫僑 共編, 昭代粹言. 筆寫本. [筆寫地不明] : [筆寫者不明], [仁祖 14(1636) 以後 筆寫 推定]. 卷10. '亂離日記'條. (藏書閣所藏本).

南基榮 編, 新安世稿續. 木版本. [刊寫地不明]: [刊寫者不明], 純祖 9(1809). 卷3-4. 由由軒(南磯)遺稿. 雜錄. '丙子日記'條.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 古朝 43-가56).

## □ 문화재전문위원

## ○ 내용 및 특징

병자호란 당시 호종관이었던 남급(南磯, 1592~1671)이 남한산성에서 청나라 군사와 항전하던 시말(始末)을 기록한 일기(1636. 12. 11~1637.2.28)와 전란에 관련된 사적들을 함께 엮어놓은 책이다. 이후 남급은 봉사(1637.2.29), 예빈시의 별제(1638.2.18)로 임용된 사실이 『승정원일기』에 전한다. 이 책의 내용과 가치 등에 대해서는 장경남 교수가 “남급의 「병자일록」 연구”에서 밝힌 바 있다.

이 책은 17세기 중후기에 해서체로 쓴 사본이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동일한 필체로 계속 서사된 점을 보아 매일 쓴 기록이 아니고, 후대에 깨끗이 베껴놓은 정서본이다. 베낀 책이라는 사실은 첫날 일기에서도 알 수 있다. 곧 병자년 12

월 11일의 첫날 일기는 “나는 중시(重試)의 종사관으로 대궐에 가서 남명익(南溟翼), 이항복(李恒福), 윤하(尹夏) 등 세 벗과 함께 잤다.”고 시작한다. 그런데 세 벗 중의 이항복(백사 이항복의 생몰년은 1556~1618년임)은 이성항(李性恒, 1603~1660)의 오기임을 타본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오기도 이 책이 후대의 전사본임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이 책과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책은 『난리일기(亂離日記)』, 『병자일기』, 『병정일기』, 『남한일기』 등의 서명으로도 전하고 있다. 이 책의 서명을 『병자일록』이라고 한 이유는 장경남 교수의 논문에서 찾을 수 있다. 곧 장 교수는 이 책이 일기와 사적을 모은 것이므로 권수제인 『난리일기』는 적합하지 않으며, 또 이 책이 동종의 여러 책 중에서 가장 앞선 시기의 것이므로 표제(表題)를 따라 『병자일록』이라는 서명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아마도 장 교수는 동종의 책 중에서 이 책이 원저자의 고본(稿本)을 충실히 따른 가장 앞선 시기의 필사본으로 본 것 같다. 그러나 이 책의 표지는 원래의 표지가 아니며, 『병자일록』이라는 표제 역시 후대에 표지를 개장한 뒤에 쓴 것이다. 그러므로 『병자일록』이라는 서명은 원저자가 붙인 서명이 아니며, 앞표지 다음 장의 『병자일기』라는 서명도 역시 후대에 쓴 것이다. 그리고 일기 중에서 병자년(1636)의 것은 12월 12일부터 동월 30일까지 19일간이며, 분량도 7장 남짓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듬해인 정축년(1637)의 것은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58일간(2월 19~20일은 없음)이며, 분량도 25장이나 된다. 그래서인지 저자의 집안인 영양 남씨의 문집에 수록된 『유유헌유고(由由軒遺稿)』(『신안세고(新安世稿)』 권3)에서는 병자와 정축을 따서 『병정일기(丙丁日記)』라는 서명을 붙여 놓았다.

한편 이궁익(1736~1806)이 42세 때부터 저술하기 시작하여 태계할 때까지 약 30년에 걸쳐 완성한 『연려실기술』 별집(제14권 「문예전고」 야사류)에는 “亂離雜記 南碟”과 같이 『난리잡기』라는 서명으로 소개되어 있다. 아마 일기와 사적이 함께 수록되어 있으므로 일기 대신에 잡기라고 한 것 같으나 서명을 “난리”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또 국립중앙도서관에는 권수제와 표제(表題)가 『난이일기』라는 동종의 책(모두 78장으로 권수에 “亂離日記 縣監南碟記”로 되어 있음)이 단행본으로 전하고 있다. 난리란 “전쟁이나 병란”을 의미하므로 책의 내용과 일치되는 용어이다. 그러므로 저자가 원래 붙인 것으로 추정되는 『난리일기』로 이 책의 서명을 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책은 이완희의 옛 소장본이었다. 1997년에 국역할 때 저자를 당시 소장자의 선조인 이돈형(1602~1691)으로 추정하였으나 이후 동종의 책에 저자가 남급으로

기재되어 있고, 남급의 당시 활동도 이 책의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제 저자에 대한 이론은 없을 것 같다. 다만 이완희의 집안에서 이 책을 소장하게 된 이유는 찾을 수 있겠다. 그것은 사적 중에서 강화도에서 자결한 인물들에 대한 후대의 추가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가 기록은 원래의 글 위에 붙인 경우, 주석과 같이 아래쪽에 병기한 경우, 아예 고쳐놓은 경우 등 다양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 추가된 내용은 “이돈오와 아우 돈서 형제 모두가 강화도에서 죽었다.”(李惇五, 及弟惇叙兄弟, 具江都死)는 내용의 소제목을 별지에 적어 따로 붙여 놓은 것(영인본 80쪽 좌측), “李媒氏妻金氏”를 “李惇五妻金氏”로 인명을 밝혀 놓은 것과 목을 찔러 자결한 부인 “李氏”를 “惇實妻”로 인명을 밝혀 놓은 것(영인본 81쪽 좌측) 등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곧 추가한 이유는 이돈오, 이돈서, 이돈실 등의 인명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연안이씨연봉공세보(延安李氏蓮峯公世譜)』에 따르면, 이 세 사람은 모두 연안이씨의 중시조이자 연봉공파의 시조인 이기설(李基高, 1558~1622)의 아들이다. 이 중 돈오(1585~1637, 시호는 忠顯)는 양천 허씨(1560~1591)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이고, 돈서(1599~1636, 시호는 忠愍)와 돈실(1606~1661)은 후처인 전주 이씨(1572~1654)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들이다. 장남 이돈오의 처인 광주 김씨(1585~1637)는 김태국의 딸이며, 셋째 돈실의 처(1606~1637)는 전주 이씨로 세보에 “효절부(孝節婦)”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병자일록』의 내용(추가된 사실까지 포함)과 『세보』의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다만 의질사한 시기는 차남 돈서가 1636년 1월 24일로 제일 빠르고, 나머지 세 사람은 이듬해로 차이가 있다. 곧 장남 돈오의 처가 1637년 1월 25일, 장남 돈오는 다음날인 1월 26일, 삼남 돈실의 처는 다음 달 2월 24일이었다.

이러한 기록들을 미루어 추정한다면, 이 책은 강화도에서 조상이 의사(義死)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연안이씨의 후손 중의 누군가가 직접 입수하거나 또는 필사 완성하여 집안에 전한 가장본(家藏本)이었을 것이다. 인명 등을 구체적으로 부기한 것은 필체와 먹의 농도로 보아 그 후대의 일이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조상의 충절과 의사내용이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인명까지 부기하여 충절의 가문임을 밝히고, 또 후손들의 교육을 위해 연안 이씨 집안에 보전하던 책으로 판단된다.

### <문헌자료>

- 장경남, 「남급의 ‘병자일록’연구」, 『국제어문』 제31집, 2004. 8.  
김익수 역, 『병자일록』, 제주문화원, 1997.

연안이씨연봉공세보편찬위원회, 『연안이씨연봉공세보』, 2003.

## □ 문화재전문위원

### ○ 현상

表紙는 오래전에 개장되었고, 제1장과 42장, 마지막 43장의 12행 결락부분은 가필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 ○ 서지사항

丙子日錄/ [南磈(1592-1671)]著 ; [筆寫者不明].

筆寫本. [17세기 중후기]

不分卷1冊(43張) : 無界, 半葉 12行20字, 註雙行, 無魚尾, 23.4×21.3cm. 楷紙.  
線裝.

表題: 丙子日錄

裏題: 丙子日記

卷頭題: 亂離日記

### ○ 문화재의 명칭

『丙子日錄』은 병자호란이 일어난 丙子年(1636) 12월 11일부터 이듬해 丁丑年(1637) 2월 28일까지의 일기와 전난과 관련된 인물들의 事蹟을 함께 수록하였다.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현재 전해지는 판본(國立中央圖書館 소장)을 보면

『雜錄』: 南磈 著, 필사본, 권두는 ‘丙子日記’ 그 밑에 저자를 나타내는 ‘縣監南磈記’ 라 되어 있다. (한古朝56-나189)

『昭代粹言』乾: 鄭道應·鄭錫僑 共編, 筆寫本, 권두에는 ‘亂離日記’ 그 아래에 ‘縣監南磈記’로 되어 있다. (한古朝56-나 91)

『新安世稿』續: 南基榮 編, 목판본, 권3~4 『由由軒遺』 雜著에는 ‘丙丁日記’라 되어있다. 『新安世稿』는 영양 남씨 문집이며, 『由由軒遺稿』는 南磈의 문집이다.(古朝43-가56)

『練藜室記述』: 李肯翊 編, 別集 권14 「文藝典故」 野史類에는 ‘亂離雜記 南磈’이란 서명과 저자만이 소개되어 있다.

서명은 ‘丙子日記’, ‘亂離日記’, ‘丙丁日記’, ‘亂離雜記’ 등으로 저자는 南磈으로 전하고 있다.

지정신청서에는 『丙子日錄』으로 되어있는데 이 책의 表題인 ‘丙子日錄’을 따른

것 같다. 裏題는 ‘丙子日記’이며 卷頭題는 ‘亂離日記’이다. 表題와 裏題는 表紙를 改裝한 후에 필사한 것으로 추측되며, ‘丙子’ 만으로는 이 책 내용의 전체를 담을 수 없다는 점에서 서명은 卷頭題인 『亂離日記』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 ○ 내용 및 특징

이 책은 병자호란이 일어난 丙子年(1636) 12월 11일부터 이듬해 丁丑年(1637) 2월 28일까지의 일기와 전난과 관련된 인물들의 事蹟을 수록한 필사본이다. 필사자는 알 수 없으며, 매일 쓴 일기가 아니고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동일한 필체로 후대에 베껴 놓은 淨書本이다. 일기 끝 부분에 “中草한 것을 친구들에게 주어 보게 하였다가 잃어버려 다시 亂藁를 거두어서 수정한 즉 29일 이하의 일기는 고증 할 수 없었다.”에서도 초고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저자는 남급(1592~1671)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책에는 밝혀져 있지 않다.

일기는 78일간이나, 그 중 丁丑年 2月 19일과 20일의 일기는 누락되어 실제는 76일간이다. 내용은 12월 11일부터 이듬해 1월 30일까지 저자가 인조를 남한산성으로 호종한 체험을 서술한 것이기에 호종 기간의 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그밖에 전란의 참혹상도 사실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일기가 끝난 뒷 부분에는 인물들의 사적이 있다. 사적을 싣게 된 경위는 한때의 장사들이 스스로 자기 功을 말하는 부류들은 허세와 과장하고, 전해 들리는 말들은 부실하여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직접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그 始終을 캐물어서 기록한 것이라 상세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사건 또는 여러 가지 사건을 바탕으로 하여 그 인물에 대해 기술하였고, 장사들은 전란에 대응한 방식이 어떤가에 따라 대표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내용 중에는 가필된 부분이 있다. 제1장 前面의 ‘[仁祖大王十四年丙子]’ 그리고 제40장 후면 13행에 추가로 ‘[李惇五及弟惇叙兄弟具江都死]’ 썼고 제41장 前面의 10행 ‘[李惇五]妻金氏’와 11행 ‘與其姑[夫人]李氏及[惇實妻]李氏’ 및 12행 ‘其姑及娣[氏]血流滿衣賊弃之而去’ 등에서 ‘李惇五·惇叙·夫人·惇實妻·氏’를 별지에 써서 덧대거나 옆에다 써서 인명을 밝혀 놓았다. 李惇五·李惇叙·李惇實는 형제간이다. 이씨 집안의 후손에 의하여 근대에 가필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1장 前面의 “余以重試枝同官赴闕與南溟翼李恒福[性恒]尹夏三友同宿”에서 李恒福(1556~1618)은 李性恒(1603~1660)의 誤記임을 동일한 내용의 판본에서 알 수 있다.

### <문헌자료>

濟州特別自治道民俗自然史博物館編, 國家指定文化財指定申請『丙子日錄』, 濟州,

濟州特別自治道民俗自然史博物館, 2011.

張庚男, 「南磈의『丙子日錄』研究」. 『國際語文』第31輯(2004.8.). pp.139-170.

김익수 역, 『丙子日錄』, 제주, 제주문화원, 1997

鄭道應·鄭錫僑 共編, 『昭代粹言』. ‘亂離日記’.

南基榮 編, 『新安世稿 繢』卷3~4. 『由由軒(南磈)遺稿』. 雜著. ‘丙丁日記’.

## 7. 대안원년명 반자(大安元年銘 半子)

### 가. 검토사항

‘대안원년명 반자’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대안원년명 반자’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2.8.21)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3.7.8)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00호(2012.09.20 지정)
- 명 칭 : 대안원년명 반자(大安元年銘 半子)
- 소 유 자 : 동아대학교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 박물관
- 수 량 : 1구
- 크 기 : 前面 直徑 32.9cm  
                前面 撞座 直徑 10.7cm  
                前面 中區 徑 21.6cm  
                前面 外區 徑 32.9cm  
                側面 幅 8.3cm  
                後面 外徑 35.6cm  
                後面 內徑 27.5cm  
                後面 口緣 幅 4.1cm  
                後面 口緣 윤곽선 0.96cm  
                고리 幅 3.2cm  
                고리 高 2.6cm  
                고리 구멍 직경 0.9cm

- 재 질 : 청동
- 형식 : 반자형 금고
- 조성연대 : 1085년(고려 선종 2)
- 작자 : 미상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문화재위원회 (지정 가치 있음)

부산 대원원년명 반자는 고려 선종 2년인 1085년에 현 경기도 여주의 고려 초기 지명인 황리현의 호장(戶長)이자 鄉職의 무산계급 중 정9품인 인용부위 閔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황리현과 인접한 원성군 부론면 법천리에서 출토되었다. 법천리는 고려 11세기에 융성했던 法泉寺가 위치한 곳이지만 명문에 施納 사찰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다. 형태는 앞면을 내외구로 구분하여 내구에는 연화문 당좌, 외구에는 운문을 배치한 점, 뒷면에는 넓은 공명구가 뚫려있고 측면에는 현수용 고리와 명문을 음각한 점에서 고려시대 반자의 전형을 갖추고 있다.

이 반자의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에 속하나 앞면 구성의 짜임새나 뒷면의 凹形線, 측면의 명문 등을 고려할 때 공예기술적 가치가 높다는 점, 통일신라시대의 咸通6年銘 金鼓(865년) 이후 고려시대 작인 咸雍9年銘 瓊巖寺 金鼓(1073년), 大康10年銘 法海寺 金鼓(1084년)에 이어 지금까지 알려진 기념명 금고로는 4번째로 오래된 유물이라는 점, 명문의 명확한 조성연대는 물론 고려시대 지방자치제도 등을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 또한 높다고 하겠다. 또한 부식이 진행되고 있어 더 이상의 훼손이 없도록 보존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안원년명 반자는 보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 ○ 문화재위원회 (지정 가치 있음)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면서도 명문이 남아있는 11세기의 몇 점 되지 않은 편년 작품이라는 점에서 고려 금고 연구에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더욱이 최근 이보다 조금 뒤늦게 제작된 대안 7년명 금인사 반자(1091)가 이미 보물로 지정되어 있어 이 작품 역시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 보호 됨이 타당하리라 본다.

###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있음)

전면을 굵은 동심원으로 3부분으로 구획하고, 당좌구와 내구에는 연씨와 연꽃, 외구의 공간에는 비행하는 구름문을 배열한 조화로운 구성력이 돋보인다. 이러한 구획

과 문양의 배치는 함옹(咸雍) 9년(1073) 경암사명(瓊巖寺銘) 반자의 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대강(大康) 9년(1084) 법해사명(法海寺銘) 반자나 양산 내원사 청동북(1091년) 등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금고들과도 유사한 양식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고면을 3등분하여 연씨→연꽃→구름무늬 순으로 문양을 배치한 형식은 고려시대 전반에 걸쳐 크게 유행하였고, 이 금고는 이러한 양식의 초기적 형태를 보여주는 것 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

이 금고는 측면 음각명문을 통해 대안(大安) 원년(元年) 을축(乙丑, 1085년)이라는 정확한 제작시기, 황리현 호장 겸 인용부위인 민(閔)이라는 제작주체, ‘반자(半子)’라는 공예품의 분명한 명칭, 향리에게 무산계 정9품인 인용부위의 관직을 지급한 사실, 그리고 11세기 금고 양식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고려시대 불교공예사는 물론 관계(官階)·관직(官職)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이 반자는 함통(咸通) 6년명(865) 금구(禁口, 국립중앙박물관), 함옹(咸雍) 9년명(1073) 반자(盤子, 국립중앙박물관), 대강(大康) 10년명(1084) 반자(鉢子, 일본소재)에 이어 4번째로 오래된 것이어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 반자가 원주 법천리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하므로, 지정명칭은 이미 지정된 출토 공예품의 예에 따라 출토지명을 따서 ‘전 원주 법천리 청동북(傳 原州 法泉里 青銅金鼓)’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예고
  - 명칭 : 황리현명 청동북(黃利縣銘 青銅金鼓)

조사보고서

## □ 문화재위원회

### 1. 현상 및 소장 경위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금고는 뒷면이 넓게 뚫린 일반적인 형태로 앞면 직경이 32.9cm, 중량 6270g인 비교적 소형이다.(그림1) 앞면은 太線의 좌우를 細線으로 장식한 太條線帶로써 内·外區로 나누었는데, 내구는 다시 태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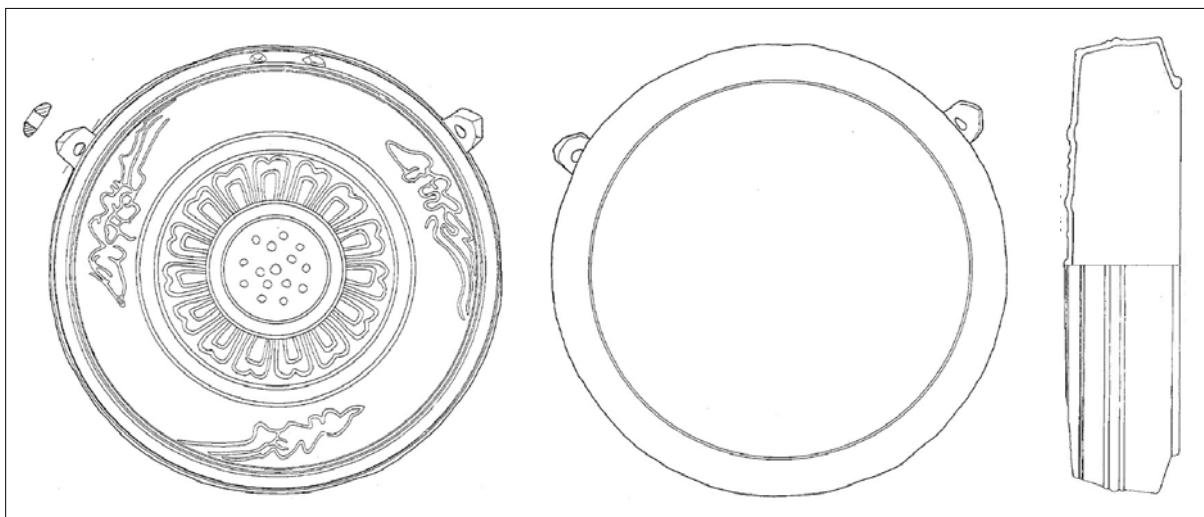
대로써 二分하여 1+5+9의 蓮顆와 15개의 重瓣 연화문을 배치해 당좌로 삼았고 외구에는 3개의 飛雲文을 배치했다.(그림2) 측면에는 懸垂를 위한 2개의 고리와 조성년대를 알려주는 음각명문이 있으며, 뒷면은 짧은 전과 넓은 共鳴口가 형성된 盤子形 금고이다.(그림3)

이 금고는 동아대학교 박물관 유물카드를 참고하면 원래 1966년에 강원도 原成郡(현 원주시) 富論面 法泉里에서 출토된 것을 1970년 4월 22일에 서울(중구 회현동 3가 1번지) 거주 玄基萬으로부터 구입하여 현재까지 소장해온 것이라고 한다. 표면에는 출토 당시의 흙이 붙어있고 자연적인 산화작용으로 인해 푸른 녹이 넓게 퍼져있으며, 붉은 녹과 부분적인 부식도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유물에 대해서는 심봉근 교수가 연구하여 1986년에 2편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sup>3)</sup> 2012년 9월20일에는 보존·관리의 필요성과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00호로 지정되었다.

## 2. 내용 및 특징

전체적으로 푸른 녹이 많이 슨 이 금고는 고려시대 금고로는 세 번째로 오래된 기념명 금고로 국내에서는 瓊巖寺金鼓(1073년)에 이어 두 번째 오래된 유물이다. 형태는 마치 납작한 鉢처럼 앞면은 약간 배가 나왔고 뒷면 전은 斜面지게 들려있어 풍만감이 있다. 이런 풍만감은 가장 이른 紀年銘인 통일신라시대 咸通六年銘金鼓(865년)를 계승한 것으로 생각된다. 내구의 연화문 당좌는 15개의 연파와 15개의 중엽화판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연판의 모양은 통일신라시대 연화문 와당에서 보여지는 연판이 변화된 느낌이다. 외구에는 고리가 벌어진 운문 3개가 左→右 방향으로 날고 있다.(삼도1) 이와 유사한 표면구성을 보여주는 유물로는 충주 안림동 사지에서 출토한 禪義林寺 金鼓(1190년), 안성 봉업사지에서 출토된 奉業寺 金鼓(1217년)를 들 수 있겠는데, 이 두 금고에는 8개의 2중 화형 안에 1+8개의 연파를 배치해 연밥임을 표현한 점과 3개의 운문이 마주 보는 1쌍으로 된 점만 다를 뿐 연판의 표현은 大安七年銘 金鼓가 좀 더 사실적이다.

3) 沈奉謹, 「高麗青銅盤子研究」, 『考古歷史學志』2(東亞大學校博物館, 1986), pp.85~117 ; 沈奉謹, 「고려 佛具의 分析-青銅盤子를 中心으로-」, 『石堂論叢』11(1986), pp.5~42.



삽도1. 대안원년명 반자의 실측도(심봉근, 「高麗 青銅飯子 研究」, p.99에서 발췌)

측면에 있는 2개의 고리는 일반적인 금고 고리 형태인 [U]꼴의 半圓形이 아니라 그 끝이 [^]꼴로 각이진 것 이었으나 향좌측 고리는 약간 부서진 상태이다.(그림4) 이 고리와 고리 사이인 측면 상단에는 2개의 납작한 돌출부분이 있는데, 이는 鑄成할 때 鎔湯이 주입되는 주입구와 공기가 빠져나오는 공기 배출구이다.(그림5) 측면은 굵고 납작한 태조선대로써 二分하여 구연부 쪽에 1행으로 다음과 같은 총 30자의 명문을 음각하여 조성년대와 發願者, 化主, 금고 명칭을 알려주고 있다.

### 〈銘 文〉

「大安元年乙丑七月日 黃利縣戶長仁勇副尉閔 棟梁等同心鑄成半子一口」

이 금고는 현재 표면에 부식이 진행되어 군데군데 조금씩 파인 상태이며 뒷면에도 청녹이 넓게 슬어 있다. 뒷면은 원래 앞면의 태조선대의 돌출부분만큼 무게를 줄이기 위해 똑같은 모양의 凹形線이 있어 면이 고르고 얇게 만든 주조기술은 뛰어났던 것 같다.(그림6, 7) 구연부의 윤곽선도 비교적 두텁고 고르게 마감하였으나 역시 부식이 진행되고 있고 고리부분도 보존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그림8, 9)

내원사 금고(1091년)보다 조형적으로나 보존상태가 다소 떨어지나 명문은 학술적 가치가 높은 편이다. 명문을 분석해보면 “대안 원년 을축년 7월일에 황리현 호장 인용부위 민(閔) 등의 동량이 마음을 같이하여 반자 1구를 만들었다.”는 뜻으로 고려 선종 2년인 1085년에 주조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통일신라시대의 咸通6年銘 金鼓(865년), 고려시대 작인 咸雍9年銘 瓊巖寺 金鼓(1073년), 大康10年銘 法海寺 金鼓(1084년)에 이어 지금까지 알려진 紀年銘 금고로는 4번째로 오래된 유물

이다. 먼저 ‘大安’은 1085년~1094년까지 쓰여졌던 遼道宗때의 연호로 도종이 재위 10년마다 바꾼 清寧, 咸雍, 大康 다음의 4번째 연호이다.<sup>4)</sup> 요대 연호는 고려 11세기 금속물에 자주 등장하는데 文宗 말년인 1072년부터 북송과의 공식외교를 재개했음에도 여전히 요의 연호를 사용하고 있음을 전해준다. 발원자인 ‘閔’은 황리현의 호장이자 인용부위였는데, 그가 관할한 황리현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지금의 경기도 여주군으로 고려 초에 황려현으로 고친 곳이다. 현종 9년(1018)에 내속시켰으며 뒤에 감무를 두었다.<sup>5)</sup> 이후 충렬왕 31년에 여홍군(驪興郡)으로 승격시켰다고 한다. 또한 여주목의 주민 성씨는 이씨와 민씨가 먼저 기록되어 있으므로 발원자 ‘閔’은 성씨로 생각된다. 다음 ‘戶長’이라는 직급은 『高麗史』, 「選舉志」에 인물을 심사하여 적당한 자리를 작정했던 제도인 〈銓注〉 “성종2년(983)에 鄉職을 개정하면서 堂大等을 호장으로 하였으며 목종 원년(998)에는 호장의 나이 70세가 되면 安逸호장으로 정했다.”고 한다.<sup>6)</sup> 이후 현종9년(1018)에 인구 1000丁 이상이면 호장을 8명 두는 등 그 수에 따라 차등한 정원이 있었으나 현종13년(1022)에 崔士威의 건의에 의해 향리의 칭호가 너무 복잡하니 이후 모든 주, 부, 군, 현의 아전은 그대로 호장으로 정하였던 것이다.<sup>7)</sup> ‘仁勇副尉’는 무산계인 虛職으로 향리를 우대하면서 그들로부터役을 징발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부여된 것이었다. 『高麗史』, 「百官志」의 〈武散階〉 항목에 “고려 건국초기에 무관도 역시 대광, 정광, 좌승, 대상이란 품계가 있었고 성종14년(995)에 무관 산계를 제정하였는데 모두 29등급이 있다. 정9품의 상은 인용교위, 하는 인용부위, 종9품의 상은 배용교위, 하는 배용부위라고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戶長 閔은 정9품의 상인 교위에 이은 부위로 27번째 등급에 해당된다.<sup>8)</sup> ‘棟梁’은 佛事を 성사시키는 化主이다. 명문 중에 가장 주목되는 단어가 ‘半子’인데 불교의식 법구인 금고

4) 遼道宗(1055~1101)의 연호는 清寧(1055~1064), 咸雍(1065~1074), 大康(1075~1084), 大安(1085년~1094), 壽昌(1095~1101)의 순으로 사용되었다.

5) 『新增東國輿地勝覽』, 「京畿」, 〈驪州牧〉, “本高句麗骨乃斤縣, 新羅景德王, 改名黃驥, 爲沃川郡領縣. 高麗初, 更今名【一云黃利縣】. 顯宗九年, 來屬. 後置監務.”.

6) 『高麗史』, 「選舉志」3, 〈銓注〉, [鄉職], “成宗二年 改州府郡縣吏職, 以兵部爲司兵, 倉部爲司倉, 堂大等爲戶長, 大等爲副戶長, 郎中爲戶正, 員外郎爲副戶正, 執事爲史, 兵部卿爲兵正, 節上爲副兵正, 維乃爲兵史, 倉部卿爲倉正.”; 同 “穆宗元年三月判諸州縣戶長, 年滿七十, 屬安逸.”.

7) 『高麗史』, 「選舉志」3, 〈銓注〉, [鄉職], “顯宗九年 定凡州府郡縣, 千丁以上戶長八人副戶長四人, 兵正·副兵正各二人, 倉正·副倉正各二人, 史二十人, 兵倉史各十人, 公須食祿史各六人, 客舍藥店司獄史各四人.”; 同 “十三年四月 崔士威奏, ‘鄉吏稱號混雜, 自今, 諸州府郡縣吏, 仍稱戶長, 鄉部曲津驛吏, 只稱長.’ 從之.”.

8) 『高麗史』, 「百官志」2, 〈武散階〉, “國初, 武官亦以大匡·正匡·佐丞·大相爲階, 成宗十四年, 定武散階, 凡二十有九... (중략)... 正九品上曰仁勇校尉, 下曰仁勇副尉, 從九品上曰陪戎校尉, 下曰陪戎副尉.”. 무산계는 모두 6등급으로 나누어 녹봉을 받았는데, 인용부위의 녹봉은 5번째 등급으로 전 20결 이었다. 『高麗史』, 「食貨志」1, 〈田制〉, “武散階. 田三十五結, 柴八結 冠軍大將軍, 雲摩將軍.... (중략).. 田二十結 宣折校尉, 同副尉, 禦侮校尉, 同副尉, 仁勇校尉, 同副尉, 陪戎校尉, 同副尉.”.

는 명문에도 盤子·半子·飯子·鉢子·金口·禁口 등으로 기록되어 있어 그동안 혼용되어 왔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이를 구별해서 사용했음을 感恩寺 飯子(1351년,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의 명문에 “飯子, 小鐘과 禁口 등을 만드는 일은 왜적이 이 물건들을 훔쳐갔기 때문에 다시 만드는 것이다.”라고 명확히 半子와 禁口를 구별하고 있어 그 형태에 따라 명칭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sup>9)</sup> 반자가 가장 일반적 형태이고 금구는 반자보다 공명구가 좁은 것을 말한다. 현재 남아있는 고려시대 紀年銘 포함 干支銘 금고는 대략 55점 정도인데, 그중 반자는 한문 표기는 다르나 약 30여점 이상 남아있다.(표1 참조)

### 3. 조사자 의견

부산 대원원년명 반자는 고려 선종 2년인 1085년에 현 경기도 여주의 고려 초기 지명인 황리현의 호장(戶長)이자 鄉職의 무산계급 중 정9품인 인용부위 閔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황리현과 인접한 원성군 부룬면 법천리에서 출토되었다. 법천리는 고려 11세기에 융성했던 法泉寺가 위치한 곳이지만 명문에 施納 사찰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다. 형태는 앞면을 내외구로 구분하여 내구에는 연화문 당좌, 외구에는 운문을 배치한 점, 뒷면에는 넓은 공명구가 뚫려있고 측면에는 현수용 고리와 명문을 음각한 점에서 고려시대 반자의 전형을 갖추고 있다.

이 반자는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에 속하나 앞면 구성의 짜임새나 뒷면의 凹形線, 측면의 명문 등을 고려할 때 공예기술적 가치가 높다는 점, 통일신라시대의 咸通6年銘 金鼓(865년) 이후 고려시대 작인 咸雍9年銘 瓊巖寺 金鼓(1073년), 大康10年銘 法海寺 金鼓(1084년)에 이어 지금까지 알려진 기년명 금고로는 4번째로 오래된 유물이라는 점, 명문은 명확한 조성년대는 물론 고려시대 지방자치제도 등을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 또한 높다고 하겠다. 또한 부식이 진행되고 있어 더 이상의 훼손이 없도록 보존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안원년명 반자는 보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현재 보물로 지정된 금고는 고려시대 작인 固城 玉泉寺 青銅金鼓(1252년, 보물 제495호), 연세대 소장 奉業寺銘 青銅金鼓(1217년, 보물 제576호), 內院寺 大安七年銘 青銅金鼓(1091년, 보물 제1734호)가 있고, 조선시대 작으로 영천 은해사 順治3年銘 金鼓(1646년, 보물 제1604호)와 부산 國淸寺 青銅金鼓(1666년, 보물 제1733호)까지

9) 감은사반자의 명문은 다음과 같다. “至正十一年辛卯十二月初三日雞林府地感恩寺飯子入重三十三斤住」持大師主印實代飯子小鐘禁口乙造成爲乎事叱段倭賊人亦同年四月初七日右物 之偷取持去爲良在乙造成」; 최응천 교수는 금고의 형식상 다른 유형임을 밝힌 바 있고, 최근에는 禁口에 대해 논하면서 형식과 양식을 규명한바 있다. 최응천, 「高麗時代 青銅金鼓의 研究」, 『佛教美術』 9(1988, 동국대학교박물관), p.69 및 최응천, 「韓國 金口形 金鼓의 造形과 展開」, 『東岳美術史學』 13(2012. 6), pp.7~32.

총 5점으로 이들 보다 가장 앞선 유물이라는 점에서 때늦은 감도 없지 않다.(참고 도판 1)

고성 玉泉寺 青銅金鼓, 1252년 보물 제495호(1968.12.19 지정)	奉業寺銘 青銅金鼓, 1217년, 보물 제576호(1973.12.31 지정) 연세대박물관 소장	內院寺 青銅金鼓, 1091 , 1734 (2011.12.23 ),

참고도판 1. 보물로 지정된 고려시대 금고

## [도판]



그림1. 大安元年銘 半子의 前面



그림 2. 뒷면의 共鳴口



그림3. 측면의 음각명문 ‘大安元年’



그림4. 각이 진 고리



그림5. 鎔湯의 鑄入口 및 공기배출구



그림6. 앞면 태조선대와 부식 상태



그림7. 뒷면의 凹形 태조선대 흔적



그림8. 뒷면 구연부의 윤파선



그림9. 고리부분의 부식상태

### 1. (半子)

			(cm)	/	
1	瓊巖寺 金鼓	1073	60 12	/	咸雍九年癸丑十月日瓊巖寺盤子入重 伍十五斤棟梁僧慶真
2	法海寺 金鼓	1084	41 13	/	太康十年甲子四月日造京北山法海寺 棟梁齊成嵩納鉢子入重二十五斤
3	大安元 年銘 金鼓	1085	36 8	/	大安元年乙丑七月 日黃利縣戶長仁勇 副尉閔棟梁等同心鑄成半子一口
4	內院寺 金鼓	1091	40.5 10.7	/	大安七年辛未五月日棟梁僧貞妙次知 造納金仁寺飯子一口重二十斤印
5	重興寺 金鼓	1103	35.7 8	/	三角山重興寺飯子重十五斤棟梁承銘 乾統三年癸未二月日造大匠盧珍謹記
6	楊等寺 金鼓	1160	36.4 9.1	/	正豐五年庚辰二月 日溟州北山楊等 寺 火香比丘智資劣同州 全廷同心發 願大 匠良且李申等請得爲半子壹入重 八斤四兩乙 鑄成懸排印
7	大定19 年銘 金鼓	1179	42.5 9	/	奉佛 高麗國存岳坊 五里居住 神 同正行隊正 領理國邦衆 聖 亡妻 氏先亡父六親善往性淨 界之願新 京西 納飯子 入 重貳拾五斤大定十九年己亥二月日鑄 成
8	彌勒院 金鼓	1191	52 10.5	/	明昌二年庚戌十一月日公州土車懸仞 仁濟院改號彌勒 院懸排鉢子壹入重肆 拾參斤捌兩印棟梁道人孝安
9	庚申銘 金鼓	1200	33 8.4	/	庚申年七月日清州牧棟梁斤孟郎將順 太 納飯子一入重十斤四兩印
10	蒲溪寺 金鼓	1202	34 8	/	泰和二年壬戌四月 日蒲溪寺新造盤子 重十斤棟梁同寺 住持比丘著觀懸排此 寺京良工韓宗守
11	泰和2 年銘 金鼓	1202	39 5	/	聖壽久長萬民安泰之願以棟梁丹丘前 長不長 泰和貳年壬戌三月日記 寺主 重大師文揷大 匠初問鑄成半子壹坐入 重捌斤貳兩印
12	資福寺 金鼓	1207	31.2 6.8	/	聖壽天長隣兵永息師尊無疾長存先亡 父母及法界衆生往淨界之願陽根奉日 鄉資福寺 鉢子六重十斤造成功德者時 泰和七年丁卯二月日玄化寺大師大公
13	高嶺寺 金鼓	1214	38.5 9.5	/	崇慶二年甲戌三月五日壽寧宮主房侍 衛軍公節亦 聖壽天長國泰民安兩主各 保千秋兼及亡妻聰明女離苦得樂聞聲 悟 道之願 鑄成飯子一隻重三十斤懸 於高嶺寺永充功德者同願(同時住持惠 成 同房侍衛軍 仲叙)

14	貞祐4年銘 金鼓	1216	32 7.5	/	貞祐四年丙子三月 寺造納半子 重六斤棟梁大勿 不仁派 五侍大匠辰亡
15	貞祐6年銘 金鼓	1218	35 7	/	貞祐陸年戊寅七月日聖壽天長隣兵永息法界生死共證菩提兼及身等此生不逢厄難後生西方極樂國土之願 敬鑄成飯子一座懸排大興郡北禪阮寺同心鑄成者住持重大師文奧直長同 正韓大育及亡者黃公偉夫妻隨喜子仁大師孝全大匠元清助役孝文孝貞僧印
16	翠嵒寺 金鼓	1222	51.2 11	/	翠嵒寺餘子貞祐十年丙午十月二十八日造成入重廿六斤棟梁○○仁 時住持元介宗重大師宗麟
17	利義寺 金鼓	1224	33.5 5	/	貞祐十二年甲申正月日利義寺火香大師玄津亦全闕飯子小鍾等亦全闕爲土比戈用良奉任同都監仁守 正巾時用戶長巾俊書檢校長軍巾儒同○焉聖壽天長隣兵永息國土太平願以造成懸排入重十一斤印大匠仁癸丑尖
18	華嚴寺 金鼓	1225	45.5 7	/	乙酉五月祝聖願以全州華嚴寺半子棟梁道人孝章同年 九月廿日造大匠大德重三十斤
19	句陽寺 金鼓	1229 (1289)	39 10		己丑六月 日 句陽寺飯子一重十三斤八兩棟梁道人惠長改造大匠仍及三
20	福泉寺 金鼓	1238	41 9	/	今上寶位天長晉陽公福壽延長天水相國趙廉卿速 離苦海受生淨土留沙寺住持禪師學淵今生無病後 世離三界之願以茂代四月日鑄成橫川縣地福泉寺 飯子重二十斤鑄成者別將同正韓 仲叙
21	修定寺 金鼓	1240	44 10	/	庚子閏十二月日鑄成修定寺飯子 惠均 惠玲 成妙 果之 願以成
22	乙巳銘 金鼓	1245	77.7 19.5	/ 多久 頭魂神社	律源乙巳五月 日晉陽府鑄成○福寺飯子一口
23	思惱寺 金鼓	1249	48.5 10.5	/	己酉年五月廿四日思惱寺半子一口重參拾伍斤棟梁副丞同正郭務大匠金先造
24	玉泉寺 金鼓	1252	55 14		高麗二十三王環甲之年壬子四月十二日在於京師工人家中鑄成智異山安養社之飯子入重六十餘斤同願施主者 樞密院右副承宣孫挺烈尚書皇甫琦檢校尚書兌承錫華嚴業三重勝壽大選景興知識正之故上將軍奇弼宣之嘉偶珍原郡夫人吳氏 郎將金伯龍之嘉偶樂浪郡夫人崔氏同丈院錄事鄭常之嘉偶海陽郡君金氏學錄朱之嘉偶金氏比丘尼清惠等此根幹外鎰銖之單甚多故不具錄工人別將同正韓仲叙 棟梁道人宗一負擔人上座普心使用長存

25	青雲寺 金鼓	1301	38	/	大德五年辛丑四月日青雲寺飯子入重三十斤結願香徒文氏夫人等上棟梁道人正元鑄匠鄭
26	大德9 年銘 金鼓	1305	36 7.5	/	大德九年七月十六日造 皇帝萬萬歲太子諸王各保千秋干戈永息天下大平五穀豐登先亡父母法界 亡魂自他隨喜共證菩提之願造茲判子二座 同願三人崔 次同 金氏 三重法師同願向徒大師元照座子 木上尊緣三石李二尊比丘三尊 台 長苞性人 之 三人 吳 半 吳孝良 眞
27	寂照寺 金鼓	1327	35.2 5.4	/	泰定四年丁卯五月十三日安養山寂照寺般子入重十五近造成延三勸化 道人禪且同願康甫來同願大通天一赴宣
28	兜率山 金鼓	1346	30	/	至正六年丙戌二月 日兜率山鑄成飯子入重十斤皇帝萬歲主上千秋國泰民安北丘宗坦幹善達精同願朴成李天住造成法界王魂成不道
29	感恩寺 金鼓	1351	32.2 7.2	/	至正十一年辛卯十二月初三日雞林府地感恩寺飯子入重三十三斤住 持大師主印寔代飯子小鐘禁口乙造成爲乎事叱段倭賊人亦同年四月初七日右物之偷取持去爲良在乙造成
30	菩提寺 金鼓	1369	37 6.5	/	己酉七月 日大德資崇特爲聖壽天長師僧父 母及法界衆生供證樂界願以造成納菩提寺盤子入重十三斤印
31	寶林寺 金鼓			/	癸亥二月十日寶林寺造納飯子一口入重
32	石寺 羅漢殿 金鼓	1385	32.7 6	/	乙丑石寺羅漢殿飯子作銅匠小斤吾末兩主崔三 兩主崔正安兩主前司正李得祥兩主張方王兩主 兩主 連兩主全 兩全三夏兩主(以上橫書) 卜天兩主 鄭禮兩主 衆伊兩主(以上三行縱書) 隨喜化主木化主覺明化主志能(以上橫書)
33	壬午銘 資福寺 金鼓		30.5 6	/	壬午四月初六日奉來資福寺飯子 公州戶長 義晴 長上戶長二長命原州人馬長命次知大 師虎伏是亦中聖衆金諸人長命
34	龍泉寺 金鼓		41	/	癸亥四月 日任使德達鑄成鉢子一重十四斤 半施納龍泉寺謹記
35	白雲寺 金鼓		27 6	/	兩邊父母及亡妻韓氏王伶哀直至西方往生淨界堂無病 長生福樂自在以庚戌七月十三日造上清州白雲寺飯子 齊主安逸戶長正位韓彊愈

(\*

)

## □ 문화재위원

### 1) 현상 및 특징

金鼓는 출토된 이후 별다른 보존 처리를 하지 않아 부분적으로 흙이 붙어있고 부식된 곳이 여러 곳에 남아있지만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측면에서 확장된 구연이 뒤로 접혀 짧은 구연부를 이루고 뒷면이 넓게 뚫려 공명구가 형성된 고려 시대의 일반적인 반자형(盤子形) 금고이다. 고면은 삼중으로 구성된 2줄의 융기동 심원을 둘러 전체를 3구로 나누었는데 중앙의 당좌구에는 내부에 1+5+9개의 연파를 배치하였다. 이 당좌구 주위로 내부에 방형에 가까운 15엽의 중판 연판문을 꽂 술장식이 없이 장식하였고 간엽은 표현되지 않았다. 그 바깥으로 다시 삼중의 동 심원을 두른 뒤 외구에는 산형에 가까운 폭이 넓은 운문을 간격을 두여 3개소에 배치하였다. 측면으로는 중앙에 굽은 두줄의 융기선을 둘러 구획하였으며 이 융기선 위로 2개의 고리가 부착되었다. 귀는 외형이 방형이면서 상부가 안쪽으로 접혀 규형에 가까우며 가에 걸기 위해 중앙에 원형 구멍이 뚫렸다.

측면의 융기선의 후면 쪽 단을 돌아가며 얇은 음각으로 □□大安元年乙丑七月日黃(?)利懸戶長仁勇副尉閔棟梁等同心鑄成半子一口□□라는 30자의 음각명문이 새겨져 있다. 비교적 명문은 판독이 용이한 편으로서 1085년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으나 제작자와 중량은 기록되지 않았다. 약간 위쪽으로 솟아 안쪽으로 접혀진 후면은 4.1cm 정도의 구연을 형성하였고 그 끝부분이 굽은 띠 모양으로 도드라지게 들려졌다. 특히 후면의 당좌부에 해당되는 부분에 안쪽으로 움푹 파여 있는 점이 확인되며 고면과 측면에 맞닿는 한쪽 면에 주입구와 주출구로 보이는 돌기가 남아있다. 이는 당시 주조에 관련된 흔적을 추측된다. 측면에 고리가 있던 부분과 그 주위에 철제 고리에 의한 부식이 심한 편이며 고면 전체와 측면에도 부식이 진행되고 있어 하루빨리 보존 처리가 요구된다.

### 2) 조사내용 및 의견

#### (1) 명문 및 내용

銘文 : 大安元年乙丑七月日黃利懸戶長仁勇副尉閔棟梁等同心鑄成半子一口

‘대안 원년인 1085년 을축 칠월에 황리현 호장 인각과 부위 민씨가 동량이 되어 한마음으로 반자 1점을 만들다.’

#### (2) 조사내용

쇠북, 즉 金鼓란 글자의 뜻 그대로 청동으로 만든 북으로서 禁口, 또는 飯子(半子) 등으로 불리는 절에서 쓰인 儀式法具의 하나이다. 범종이 주로 아침·저녁의 예불이나 중요한 의식법회 때 사용된 것과 비교해 볼 때 금고는 供養시간을 알린다거나 사람을 모으는 등 그보다 단순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앞면은 납작한 圓盤形이지만 뒷면은 구연 부분이 안쪽으로 접혀져 짧은 전을 형성하고 넓게 뚫려 공간을 이룬 독특한 모습이다. 앞면인 鼓面에는 두세 줄의 同心圓을 도드라지게 배치하고 그 중앙부를 범종의 당좌와 동일한 형식의 연판문으로 장식하였다. 또한 이 撞座區 주위는 구름문이나 당초문, 화문 등으로 시문하기도 하였다. 측면에는 架에 걸 수 있도록 2~3개의 고리를 부착하였으며 이 측면이나 후면 구연부에는 금고를 만든 날짜와 절 이름, 發願文과 제작자, 무게 등 금고의 제작과 관련된 명문을 기록한 경우가 많다. 통일신라의 유일한 금고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咸通六年銘(865년) 禁口<sup>10)</sup>는 고면에 두 줄의 隆起同心圓이 둘러져 있으나 撞座區를 비롯한 고면 전체에는 문양이 전혀 시문되어 있지 않아 간결하면서도 소박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보다 조금 뒤늦은 시기에 해당되는 또 하나의 통일신라의 금고가 軍威 麟角寺에서 발견되었는데, 외형은 유사하지만 뒷면이 좁혀지고 고면에 蓮瓣文이 등장되고 있어 고려시대 금고로의 이행과정을 잘 보여준다.<sup>11)</sup>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금고의 형태는 뒷면이 넓게 뚫린 기본형식과 함께 뒷면의 구연이 확장되어 共鳴口가 좁아지는 형식, 그리고 앞·뒷면이 모두 막혀 측면에 공명구가 뚫리는 소위 일본의 와니구찌식(鰐口式) 금고 등의 다양한 형식이 나타난다. 고려시대의 금고는 통일신라에 비해 우선 고면의 중앙에는 연판문과 연밥을 장식한 撞座區가 완전히 독립된다. 이 당좌구 주위로는 두세 줄의 용기동심원을 두르고 그 구획마다 연화문, 구름문, 또는 화문, 如意頭文, 당초문 등으로 장식하였다. 고려 초기 금고의 경우 이러한 장식문양은 당좌를 중심으로 하여 外區에 한해서만 간략한 구름문, 당초문이 표현되지만 후기로 가면서 점차 고면 전체에 빠짐없이 다양하고 화려한 문양이 첨가된다. 고려후기에 와서는 금고의 크기가 축소되는 한편 당좌구나 외구의 구획이 분명치 않게 되며 연판문, 당초문의 장식은 도식화되어 별모양(星形)이나 물결무늬로 바뀐 주조기술의 급격한 퇴락을 볼 수 있다.

고려시대의 금고 가운데 가장 오래된 紀年銘 작품은 咸雍九年銘(1073년) 瓊巖寺 금고이며, 紀年銘을 지닌 작품은 약 40여점 넘게 확인된다. 그 가운데 13세기 초부터 중엽에 제작된 금고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시기의 작품이

10) 咸通陸歲乙酉二月十二日成內時(?)供寺禁口'

11) 「君威 麟角寺 佛教 金屬工藝品 性格 意義」, 『先史 古代』 32 ( ,2010.6), pp.90~93.

양식적으로나 조형적으로 가장 우수한 점을 볼 수 있다.

東亞大博物館 소장의 大安元年銘(1082년) 半子는 1066년도에 江原道 法泉里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진다.<sup>12)</sup> 뒷면이 넓게 뚫려 좁은 구연부가 형성된 반자형의 金鼓로서 고면은 삼중으로 구성된 두 줄의 용기동심원을 구획하여 전체를 3구로 구획하였다. 당좌구인 내구는 원형의 자방으로 이루어져 뚜렷이 돌기된 1+5+9개의 연과가 표현되었다. 이 당좌구 주위를 15엽의 중판 연판문으로 시문하였는데, 내부는 방형이며 외연의 상부만이 산형으로 굴곡을 이룬 모습으로서 전체적으로 방형에 가깝다. 연판 내부로 꽃술장식이나 간엽은 표현되지 않아 간결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四角에 가까운 重瓣의 연판문은 清州 雲泉洞에서 출토된 통일신라 9세기 중엽의 梵鐘의 撞座에서 유사한 형태를 찾을 수 있어 통일신라 후기의 당좌문 양식을 계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후에 제작된 일련의 金鼓에서도 이러한 연판문이 계승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外區의 세 곳에는 넓게 퍼진 山形태의 구름문이 시문되었는데, 일견 도안화된 듯하지만 유려한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측면의 중앙부에는 3중의 용기선을 둘러 위, 아랫단으로 나누었고 그 동심원 상에 두 개의 귀를 부착하였다. 이 귀는 方形이면서도 상부가 안쪽으로 접혀져 규형에 가까운 모습이다. 이 측면 중앙 용기선의 후면 쪽에 해당되는 하단부에 ‘大安元年乙丑七月日黃利懸戶長仁勇副尉閔棟梁等同心鑄成半子一口’라는 30자를 얹은 선각 명문을 새겼다. 그 내용은 만들어진 일시와 발원자<sup>13)</sup> 등의 동량만이 기록되었는데, 고려 금고에서 흔히 보이는 중량이나 제작자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금고의 명칭을 처음으로 ‘半子’라고 사용하고 있는 첫 예로서 주목된다. 이 大安元年銘 半子는 11세기에 제작된 가장 연대가 앞서는 국립박물관 소장의 瓊巖寺 盤子(1073)보다 크기가 축소되었고 문양 역시 그다지 화려하지 못한 편이다. 이는 명문에서 확인되듯 ‘黃利懸戶長’의 명칭 등으로 보아 지역 호족의 발원으로 만든 작품으로 추정된다. 또한 바로 뒤에 만들어진 金仁寺 鏡子(1091)에 비해서도 문양이 도안화된 느낌이 든다. 그러나 고면의 구획이 아직까지 2구로 간략히 세분되었고 경암사 반자의 운문 형식을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정리된 듯한 문양이 잘 표현된 고려 금고 가운데 수작으로 평가된다.

후면의 안쪽으로 접혀 좁은 전을 형성한 구연은 안쪽으로 가면서 약간 솟아오른 모습으로서 이는 앞서의 금고들과 다른 양상이다. 그 끝단은 한단 높게 돌기를 이루었다. 특히 후면에는 앞면의 당좌구에 해당되는 크기만큼 안으로 움푹 들어가 있으며 고면의 용기동심원이 둘러지는 부분에 해당되는 곳도 굽게 안으로 파여 들어가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모습은 이미 통일신라 합통6년명 금고(865)의 후

12) 沈奉謹, 「高麗青銅半子研究」, 『考古歷史學志』 2(東亞大學校博物館, 1986.5), pp.86~87.

13) 黃利懸 『新增東國輿地勝覽』 卷7 驪州牧條  
銘文 仁勇副尉閔氏 가 人物條  
閔氏가

면에서도 볼 수 있어 당시 주조 기술의 단면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대부분의 금고가 고면부에 주입구와 주출구의 자국이 남아있으며 이 부분을 정리한 반면에 이 대안원년명 반자는 측면에 붙어 주입과 주출구가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어 흥미롭다.

전체의 크기는 약 40cm가 조금 넘어 경암사 반자에 비해 작지만 후에 만들어진 금인사 반자와 거의 유사한 크기이다. 명문에 보이듯 반자는 표기가 瓊巖寺銘 반자(1073)의 소반 반(盤)자에서 반(半)자로 바뀐 점을 볼 수 있고 이는 다시 쇠금 변에 반(鉢)자를 사용한 대안7년명 金仁寺 鉢子(1091)로 바뀌어 가는 고려시대 금고의 명칭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sup>14)</sup>

## □ 문화재전문위원

이 반자는 1966년 강원도 원성군(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지며, 동아대학교가 소장자 현기만(玄基萬)씨로부터 1970년 4월에 구입한 것이다. 출토지로 전해지는 원주시 법천리에는 고려시대 법상종 사찰로 크게 번성한 법천사지가 자리하고 있으나, 이 반자의 출토지가 법천사의 경내지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 이 반자의 표면에는 견푸르게 산화된 흔적과 발견 당시의 부식토가 고착되어 있어 출토품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고면과 뒷면 입술의 가장자리를 따라 크고 작은 박락이 관찰 되는 바 보존처리가 시급하다.

반자의 형태는 고면을 당좌구(撞座區), 중구(中區), 외구(外區)로 3등분하였고 뒷면은 짧은 입술과 넓은 공명구(共鳴口)가 뚫려 있는 이른바 반자형 금고이다. 정·측면에 사용된 구획선은 3줄의 동심원대(同心圓帶)를 사용하였는데, 가운데 선은 굵은 선으로 좌우에는 가는 보조선을 붙여 돌린 형태이다. 당좌구에는 중앙의 동그랗게 돌출한 연씨를 5개의 연씨가 둘러쌌고, 다시 이를 9개의 연씨가 둑글게 에워싼 모양이다. 내구에는 끝을 안으로 오므린 복판 15엽의 연꽃을 얇게 새겨 장엄하였다. 외구의 넓은 공간에는 허공을 훌러가는 율동적인 구름을 3곳에 두어 장엄하였다. 이러한 문양 배치는 현세의 중생들이 법음(法音)을 듣고 천상세계(天上世界)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염원을 상징적으로 담아 낸 것으로 보인다.

측면의 중앙에는 3줄의 용기선대로 양분하고 앞쪽 부분에 제작과 관련된 명문을 얇게 음각하였고, 오각형의 고리가 귀 모양처럼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며 2개 부착되어 있다. 두 고리 사이에는 주물구의 흔적이 남아 있다. 고면(鼓面)은 거의 수평을 이루고 있으며, 측면의 각도는 입면 사다리꼴 형태로 약간 밖으로 벌어져 있으며, 짧은 입술도 역사다리 꼴로 안으로 오므라들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입술의 끝

14) 崔應天, 「韓國 禁口形 金鼓 造形 展開」, □□東岳美術史學□□13 ( , 2012), pp.7~32.

은 굵은 선을 돌려 마감하였다.

금고의 측면에는 제작과 관련된 짧고 간결한 음각의 명문이 남아 있다.

大安元年乙丑七月日 黃利縣戶長仁勇副尉閔 棟梁等同心鑄成半子一口

이를 통해 이 금고는 大安 元年 乙丑(宣宗 2, 1085) 7월에 황리현(黃利縣) 호장(戶長)이자 인용부위(仁勇副尉)를 겸한 민(閔) 등이 한 마음으로 제작한 반자임을 알 수 있다. 황리현(黃利縣)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경기(京畿) 광주목(廣州牧) 여흥도호부조(驪興都護府條)에 “驪興, …高麗改黃驪. 顯宗戊午, 屬原州任內, 後置監務. 一云黃利縣”이라 보이고,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도 같은 기록이 보인다. 즉 이곳에 보이는 황리현은 현재의 경기도 여주군에 속하며, 제작의 주체인 황리현 호장 민은 고려 초 중국에서 사신으로 왔다가 이 지역에 정착하여 여흥 민씨의 시조가 된 민칭도(閔稱道)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다. 인용부위는 고려시대 무산계급 중 정9품으로, 고려시대 무산계는 향리와 탐라의 왕족, 여진의 추장, 노령의 병사, 공장과 악인들에게 주어진 영예적 호칭이다.<sup>15)</sup> 고려시대 문·무산계 직급은 성종 14년(995)에 제정되었는데, 이 반자의 명문은 향리에게 무산계의 관직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

15) , 『 . . ( , 1997), 44~48 .

## II.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번호·명칭변경 예고

안건번호 동산 2013-04-011

### 8. 국보 제249호 ‘동궐도(東闕圖)’ 등 7건 지정번호·명칭 변경

#### 가. 검토사항

국보 제249호 ‘동궐도’ 등 7건의 지정번호 및 지정명칭을 변경하고자 안건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 국보 제249호 ‘동궐도’ 등 총 7건의 문화재는 각각 추가지정이 발생한 대상으로 추가지정시 최초 지정문화재와 소재지가 다를 경우 가지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추가지정시 가지번호의 부여가 일관성이 없이 지정되었기에 본건은 ‘-1호’, 두 번째 지정건은 ‘-2호’로 가지번호를 부여하여 변경하고자 함.
- 가지번호 변경과 관련하여 지정명칭의 혼란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 지정명칭 변경 여부도 함께 부의하는 것임. 이에 지정번호와 명칭 변경이 검토되면 변경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 대상문화재 : 국보 제249호 ‘동궐도’ 등 총 7건(붙임 참조)

#### 라.

- 국보 제249호 동궐도
  - 국보 제249-1호 동궐도(고려대학교)
  - 국보 제249-2호 동궐도(동아대학교)

- 보물 제547호 김정희 종가 유물(김성호, 이건희, 조병순)  
→ 보물 제547-1호 김정희 종가 유물(김성호, 이건희, 조병순)
  
- 보물 제568호 윤봉길의사유품(국유)  
→ 보물 제568-1호 윤봉길의사 유품(국유)  
보물 제568-2호 윤봉길의사 유품-윤봉길의사 이력서 및 유서(윤주웅)  
→ 보물 제568-2호 윤봉길의사 유품(윤주웅)
  
- 보물 제1004호 조정 종가 문적(공유)  
→ 보물 제1004-1호 조정 종가 문적(공유)  
→ 보물 제1004-2호 조정 종가 문적(조성만)
  
- 보물 제1010호 묘법연화경(언해) 권1,3,4,5,6((재)아단문고)  
→ 보물 제1010-1호 묘법연화경(언해) 권1,3,4,5,6((재)아단문고)
  
- 보물 제1088호 언해태산집요(국유)  
→ 보물 제1088-1호 언해태산집요(국유)  
→ 보물 제1088-2호 언해태산집요((주)한독의약박물관)
  
- 보물 제1090호 권근 응제시주(김종규)  
→ 보물 제1090-1호 권근 응제시주(김종규)  
→ 보물 제1090-2호 권근 응제시주(한솔제지(주))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지정명칭, 지정번호 변경 예고

## <붙임. 대상문화재 및 변경 사유>

연번	종별	현 행		변 경		소유자	지정일	변경 사유
		지정번호	문화재명	지정번호	문화재명			
1	국보	249	동궐도	249-1	동	고려대학교	'89.08.05	○ 1989.8.1. 추가지정시 제249로 일괄지정 ○ 제249-1, 249-2호로 변경필요
				249-2	동	동아대학교	'95.06.29	
2	보물	547	김정희 종가 유물	547-1	동	김성호 이건희 조병순	'71.08.30	○ 2006.7.18. 보물 제547-2호 '예산 김정희종 가유물' 추가지정시 제547호 미변경 ○ 2010.8.25. 명칭변경시 제547호로 일괄변경 ○ 제547-1호로 변경필요
3	보물	568	윤봉길의사유 품	568-1	윤봉길의사 유품	국유	'72.08.16	○ 1976.5.21. 추가지정시 제568호로 일괄지정 ○ 2010.8.25. 명칭변경시 제568-2호 '윤봉길의사유품-윤봉길의사이력서및유서'로 변경 ○ 제568-1호 '윤봉길의사 유품'으로 변경필요 ○ 제568-2호 '윤봉길의사 유품'으로 변경필요
		568-2	윤봉길의사 유품-윤봉길의사 이력서 및 유서	동	윤봉길의사 유품	윤주옹	'76.05.21	
4	보물	1004	조정 종가 문적	1004-1	동	공유	'89.05.30	○ 1991.12.16. 추가지정시 제1004호로 일괄 지정 ○ 2010.8.25. 제1004호 '조종 종가 문적'으로 일괄변경 ○ 제1004-1, 1004-2호로 변경필요
				1004-2	동	조성만	'91.12.16	
5	보물	1010	묘법연화경(언 해) 권1,3,4,5,6	1010-1	동	(재) 아단문고	'89.08.05 '95.04.07	○ 2010.8.25. 제1010-2호 '묘법연화경(언해) 권1,4' 추가지정시 제1010호 미변경 ○ 2010.8.25. 명칭변경시 제1010호 '묘법연화경(언해) 권1,3,4,5,6'로 변경 ○ 제1010-1호로 변경필요
6	보물	1088	언해태산집요	1088-1	동	국유	'91.10.04	○ 1991.12.16. 추가지정시 제1088호로 일괄지정 ○ 제1088-1, 1088-2호로 변경필요
				1088-2	동	(주)한독의약 박물관	'91.12.16	
7	보물	1090	권근 응제시주	1090-1	동	김종규	'91.10.04	○ 2005.7.7. 추가지정시 제1090-1호로 지정 ○ 2010.8.25. 명칭변경시 제1090호로 일괄지정함. ○ 제1090-1, 1090-2호로 변경필요
				1090-2	동	한솔제지(주)	'05.07.07	